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2015. 9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대), www.mosf.go.kr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
TEL:044-550-4114(대), www.kdi.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044-414-2114(대), www.kipf.re.kr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2015.9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진 :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환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유한욱 한림대학교 교수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기업의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 간 거래 시 현금성결제방식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임
 - 2000년에 도입되어 2013년 말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됨
- 한편, 일몰 도래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 간 대금 결제 시 어음결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과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자 함
 - 전체 하도급거래 현금성결제 비율은 9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간 결제비율은 여전히 76% 수준으로 낮고, 어음 총회수기일은 평균 118.2일에 달하고 있음(중소기업중앙회, 2014.10.)
 - 또한,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으로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3위로 꼽히고 있어, 어음결제 관행의 개선 필요성 대두
 -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 원인(중앙회, 2013.12): 판매부진(36.2%), 제조원가 상승(18.4%), 판매대금 회수지연(13.2%)
 - 주무부처는 현금성결제비율 90% 달성을 목표로 조세특례 도입을 계획함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음결제 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등을 방지
- 예상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약 317억원, 수혜기업은 약 2,600개로 예상

2.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표 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조세특례명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신규도입유형	신설(재도입)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식: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현금성결제방식: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결제 • 기타 지원조건: 지급기한 60일 이내, 판매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 세액 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 구매대금의 0.2%, 지급기한 16~60일 → 구매대금의 0.1%
정책대상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665개(국세통계연보상 수혜기업 수) - 중소기업 2,639개(일반기업 26개는 제외)
운영기간	2015~2017년 317억 원/년
예상감면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1년: 352억 원 • 시행 2년: 317억 원 • 시행 3년: 281억 원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간 영향)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효과 기능 • (추가적인 경제효과) 현금결제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활력 회복, 건전한 대금 결제방식의 조기 정착으로 경제 선순환 • 계량화된 효과: 측정 어려움

□ 운용경위

- 본 조세특례는 2000년에 도입되어 2013년 12월 말에 일몰됨.
 - (2000년 도입) 지원대상은 거래 양방 중 최소 하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현금성결제수단은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제한, 세액공제율은 환어음, 약속어음결제금액의 0.5%.

- (2002년 개정) 현금성결제수단으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추가하였고, 공제율을 0.3%로 낮춤
- (2005년 개정) 현금성결제수단으로서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추가하는 한편, 지급기한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2015년 개정안)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 제도로 대체하고, 지급기한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표 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운용경위

시행일 기준	지원대상 거래	현금성결제 수단 범위	기타 공제조건	공제율 적용금액	공제율	일몰시점
2000.10.27.	거래 양방 중 최소 하나는 중소기업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외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없음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0.5%	2002.12.31.
2001.08.14.	상동	상동	지급기한 1개월 이내	상동	상동	상동
2001.12.29.	상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추가	•지급기한 1개월 이내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상동	상동	상동
2002.12.11.	상동	기업구매 전용카드: 직불카드 추가	상동	상동	0.3%	2005.12.31.
2004.12.31.	상동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지급기한 60일 이내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상동	• 지급기한 30일 이내: 0.3%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2005.12.31.	중소기업 간 거래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판매자가 중소기업	상동	상동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세금 계산서 작성 이전	상동	상동	2008.12.31.
2007.6.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4% 대기업 0.3%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시행일 기준	지원대상 거래	현금성결제 수단 범위	기타 공제조건	공제율 적용금액	공제율	일몰시점
2007.12.31.	상동	상동 단, 네트워크론 정의 확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08.9.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5% • 대기업 0.4% • 지급기한 31~60일: 0.15% 	2010.12.31.
2008.12.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4% • 대기업 0.3%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2010.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5% • 대기업 0.4%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2010.12.2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3.12.31.
2015년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0.2% • 지급기한 31~60일: 0.1% 	2018.12.3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신·구 조문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제도 부활 및 공제대상 변경

-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것을 2015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일몰 시점은 2017년 12월 31일로 설정

- 공제대상 결제수단 중 네트워크론(network loan)¹⁾을 제외하고 상생결제²⁾ 제도로 대체: 제5호 삭제 및 제6호 신설
- 세액공제율 축소
 - (기존) 30일 이내 0.5%, 31~60일 0.15% → (개정) 15일 이내 0.2%, 16~60일 0.1%

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배경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예상감면규모 300억원/년 이상인 신설 조세특례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됨

□ 조사수행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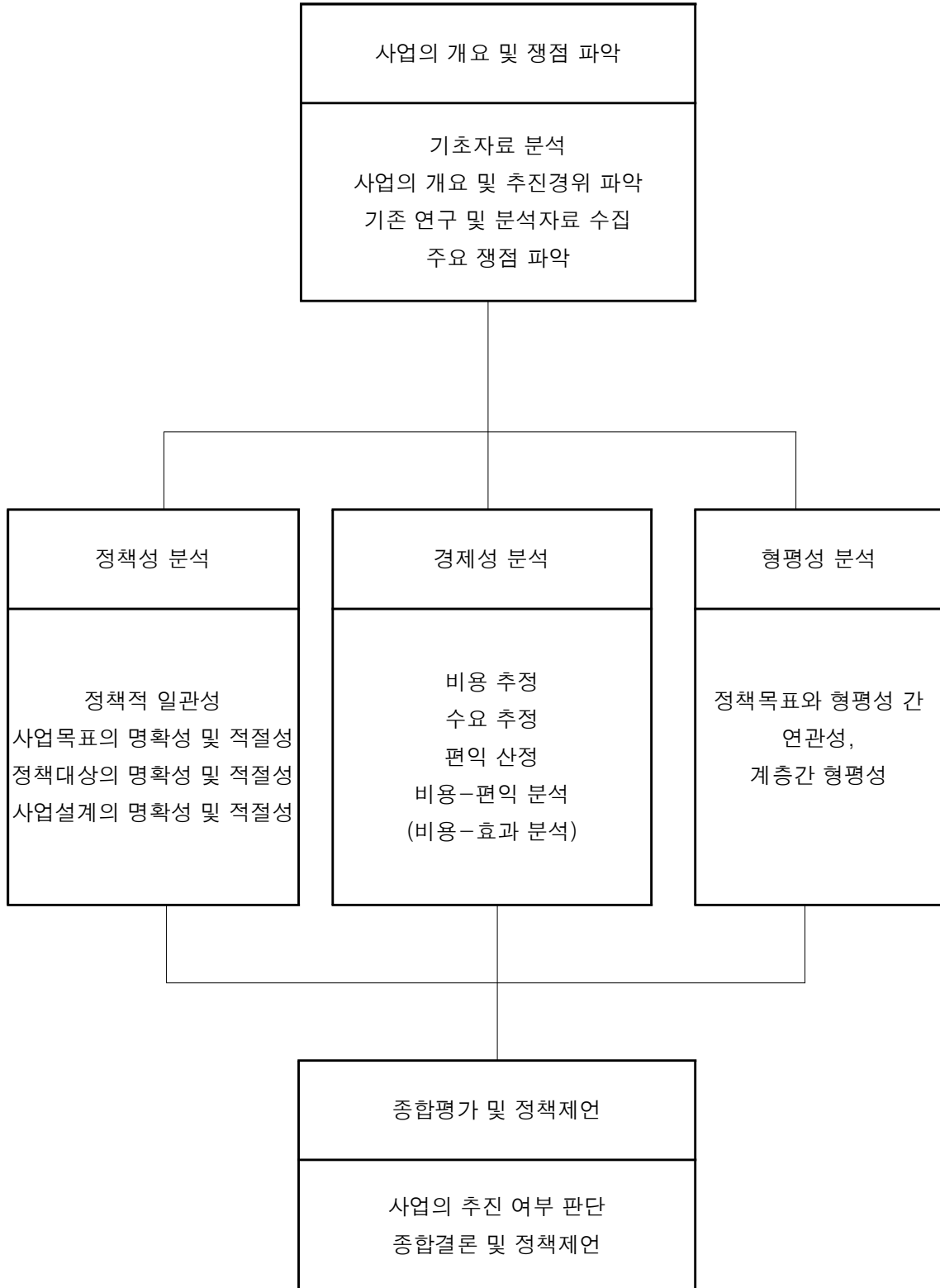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5.3.)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4.1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체계를 구축함

-
- 1) 네트워크론: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 2) 상생결제 제도: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이용하여 하위 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방법으로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할 수 있는 결제방법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중소기업의 구분

□ 중소기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구분됨

〈표 3〉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2015년 기준)

업종	규모 기준 ¹⁾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제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출액 ≤ 400~1,500억원³⁾ - 자산총액 < 5,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 관계기업의 경우보다 높은 매출액 상한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발생연도 + 3년 -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 1) 종전에는 규모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도 포함되었으나 2015년부터 간소화되었음.

2)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등의 소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3) 업종별로 매출액 상한이 차별화되어 있음.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세액공제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운용 현황

- 조세지출예산서상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금액은 연평균 약 400억원 수준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액공제 수혜기업 또한 감소세에 있음

〈표 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총계		중소기업 ¹⁾		일반법인 ²⁾	
	신고법인 수	금액	신고법인 수	금액	신고법인 수	금액
평균	2,633	40,638	2,601	34,819	32	5,819
2013년	2,520	30,569	2,494	29,669	26	900
2012년	2,665	38,716	2,639	36,520	26	2,196
2011년	2,619	42,238	2,589	39,128	30	3,110
2010년	2,463	33,836	2,437	32,229	26	1,607
2009년	2,576	40,728	2,546	36,908	30	3,820

주: 1)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2) 일반법인은 주1)에 정의된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각 년도.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 정부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등의 부문에서 조세지원정책 운영 중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에 제시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사항은 모두 8가지이나 본 조세특례를 포함한 3가지 조항은 이미 일몰이 도래하여 효력을 잃음

〈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조항	조세특례명	주요 내용	일몰 시점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015.12.31.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 내용: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2015.12.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2015.12.31.

조항	조세특례명	주요 내용	일몰 시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대상: 중소기업 • 내용: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2017.12.31.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대상: 내국법인 중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 내용: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2016.12.31.

4. 기업의 어음 및 현금성결제 현황

□ 어음결제 현황

- 기업어음은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³⁾
-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의 어음교환 건수는 약 2.3억건, 어음교환 금액은 32,361,710억원에 이르며 2010년 이후 어음교환 건수와 금액은 감소 추세임

<표 6> 지급결제금액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음교환 ¹⁾	6,015,661	5,554,367	4,416,197	3,837,729	3,236,171
지로 ²⁾	174,858	196,749	228,865	239,817	248,538
전자금융 ³⁾	10,621,510	12,281,762	13,043,029	13,779,815	15,189,780
총계	16,812,029	18,032,878	17,688,091	17,857,361	18,674,489

- 주: 1) 어음교환: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타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과 타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 중 자신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의 정보를 작성하여 서울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임
- 2) 지로: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 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등의 지급수단 대신에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임
- 3) 전자금융: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자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금융 이용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서비스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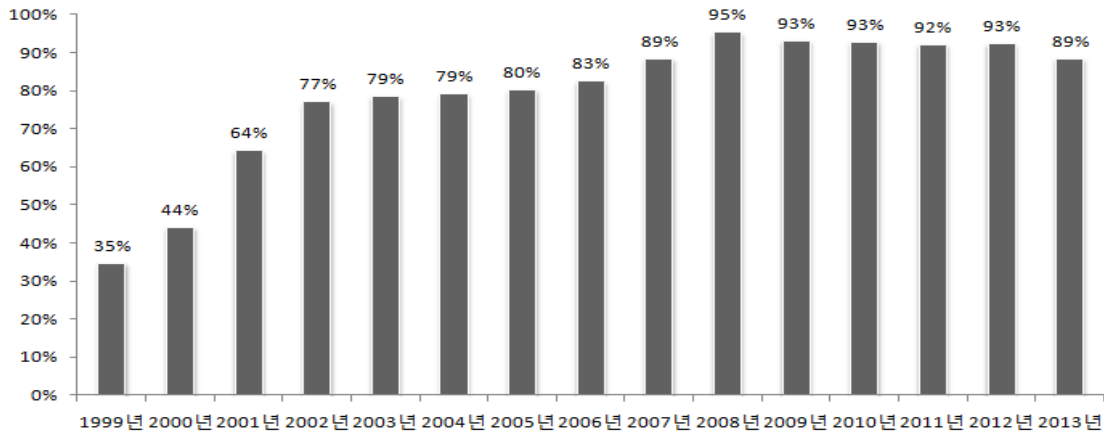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원

3)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과제-단기 지표금리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한국금융연구원, 2013.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현금성결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현금성결제비율은 1999년 35% 수준이었으나, 2008년 95.3%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다시 88.5%로 감소하는 추이임
- 이와 같은 현금성결제의 확대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세금 감면, 별점 감면, 과징금 감면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에서 기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금성 결제 비율은 감소세를 보임

[그림 2] 하도급 거래 간 현금성 결제 비율 추이



- 주: 1. 실태조사 대상업종: 1999~2005년: 건설·제조 분야, 2006~2010년: 제조·건설·용역분야, 2011년: 제조업 분야, 2012~2013년: 제조·건설·용역 분야
2. 현금성 결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또는 현금과 가치가 동일한 수표나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결제수단을 의미하며 어음법에 의해 발행된 어음은 제외함.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3천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조사임. 조사 대상 업체는 1999년 3천개, 2000년 2만개, 2002년 3만개, 2005년 5만개, 2006년 9만개, 2007년~2010년 10만개, 2011년~2012년 6만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건설, 용역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2014.

5. 상생결제제도⁴⁾

□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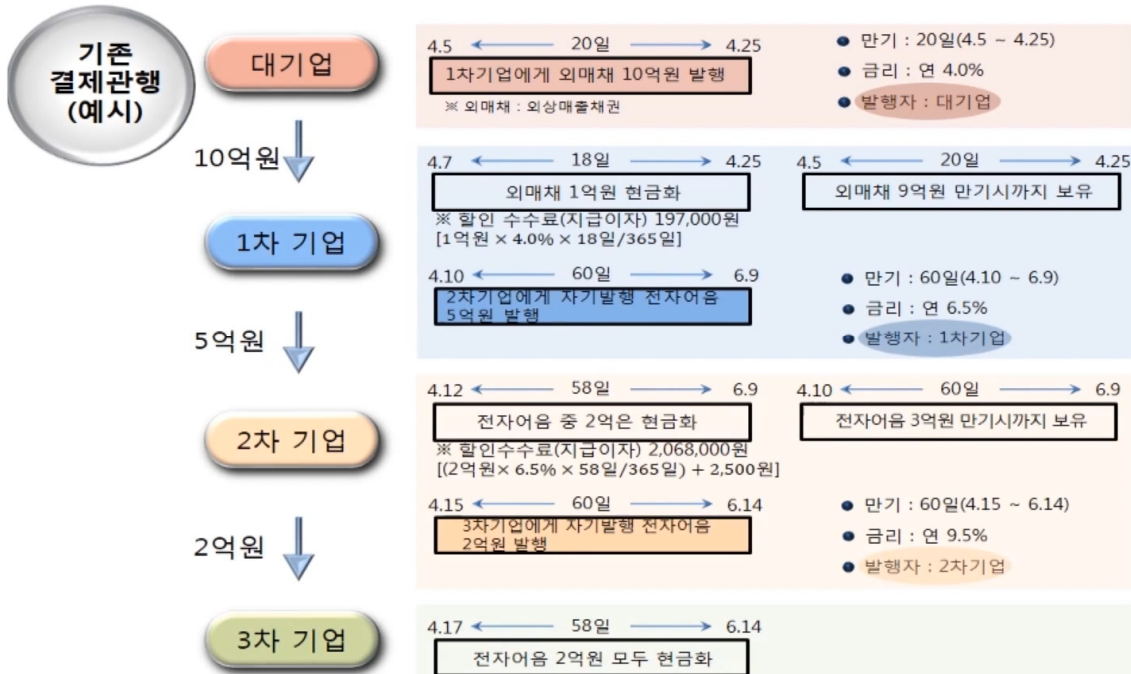
- 현행 자금결제시스템의 경우, 대기업은 거래대금으로 1차 협력사에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하고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현금화하거나 혹은 전자매출채권을 할인(4~5%)하여 자금을 융통함
 - 다만, 이 과정에서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은 상위 협력사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1~2차 협력사의 도산으로 인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성이 따름
- 이에 자금결제와 관련된 잘못된 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1~3차 협력사까지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상생결제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음

□ 제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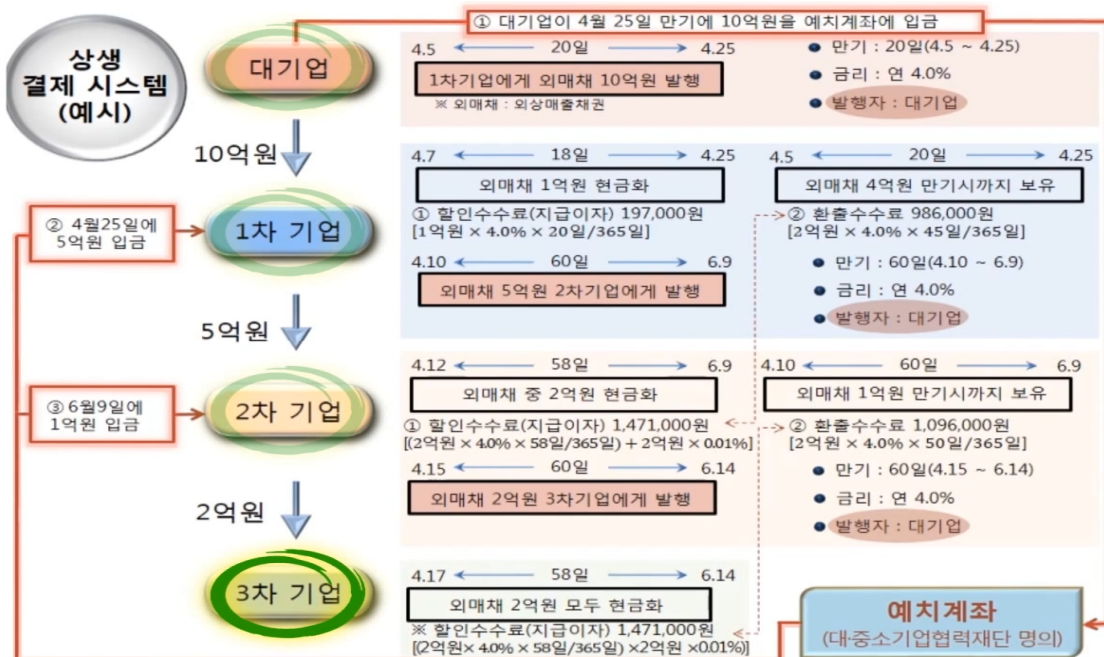
-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 하청업체가 받을 돈)을 은행을 매개로 현금(수표)처럼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적기회수를 지원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결제제도임
- 특징
 -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 하청업체가 받을 돈)을 1~3차 협력사가 현금(수표)처럼 유통하여 자금이 필요한 1~3차 협력사는 대기업 신용도 기준의 저렴한 금리조건으로 채권(납품대금)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
 -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할인받은 대출을 증도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을 올리게 됨에 따라 전자매출채권을 통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상생결제 제도 관련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그림 3] 기존 자금결제시스템 운영 흐름도(예시)



[그림 4] 상생결제제도 운영 흐름도(예시)



자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web/index.do>)

6.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사전평가의 사례검토

□ 조세지출 부문 경제성 평가의 쟁점⁵⁾

- 조세특례 정책적 목적과 정책대상과의 부합성
 - 얼마나 많은 자원이 수혜 대상(개인/기업)에 투입되었는지 혹은 그 결과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 개입의 당위성 검토
 -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있는지 혹은 조세지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원조달 일부를 대체하였는지에 대한 측정 및 평가 필요(input additionality)
- 조세특례의 당위성 검토
 - 조세지출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산출물, 즉, 매출, 이윤, 시장점유율, 특허,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측정과 평가 필요(output additionality)
- 자료구득의 용이성
 - 조세지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세지출을 받는 개인/기업의 세부적인 경제·사회적 특성은 물론, 조세지출에 의한 행태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조세지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편익 분석 시 고려사항

- 첫째, 조세지출 편익 측면에서 추가성(additionality)과 전위성(displacement)⁶⁾에 대한 측정
 - 조세지출이 시행되지 않은 가상적 상황에서의 경제활동과 조세지출이 시행된 실제 경제활동을 비교하고, 후자에서 전자의 효과를 제외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

5) 본문의 평가 이슈는 Caiumi(2011)의 내용을 정리함. Caiumi(2011)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의한 기업 행태와 전략의 변화(behaviour additionality)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제외함

6) 법인세 조세특례에 의하여 특정집단의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중에는 여타 집단의 기업투자가 위치를 전환하여 해당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전위효과라고 부름(Chen(2015)). 이 경우, 거시적으로는 투자의 순증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전위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특례의 효율성이 낮고 세수손실이 큼을 의미함.

- 둘째, 조세지출 비용 측면에서 재원의 기회비용 측정
 - 조세지출로 인한 직접적 비용은 현재 정부가 추계·제공하는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현재의 여건상 고려할 수 있지만, 조세지출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의 기회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분석대상 조세지출과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그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조세지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시 기존의 분석 도구 활용
 - 추가성과 대체성을 측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따른 직접효과에 근거하여, IO 혹은 CGE 모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유발효과(induced effect)를 산출할 수 있음
- 넷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비용/효과성 분석 활용
 - 비용/효과성 분석 역시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함
- 다섯째, 조세지출 수혜집단의 특성과 수혜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 분석
 - 제도 설계 측면, 투명성(transparency), 수혜대상(targeting) 그리고 확실성(certainty)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조세지출 목적에 합당한 제도 설계를 이룬다면, 조세지출의 경제적 평가 기준인 효율성, 형평성 및 행정관리 비용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가구의 조세 관련 행정자료 이용 가능성과 제공되는 정보 수준이 분석의 질(quality)에 영향을 준다는 한계가 존재함
- 여섯째,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자료구득의 중요성
 -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자료에 평가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므로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조세지출 평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변수 선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조사의 주요 쟁점

가. 사업 추진상의 쟁점

- 조세특례제도 도입과는 무관한 상생결제제도 운영
 -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결제제도를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항목에 포함 (2014.10.29.)하고, 대기업 주도의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법 개정 요구
 - 10대 기업, 6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2014.11.17.)
 - 이는 경제성 분석의 순편익 추정과 정책성 분석의 조세특례 필요성 문제로 귀결

- 제도 일몰 후 조세특례제도 재도입의 필요성 유무
 - 기 사업은 2008년 이후 현금성결제비율이 90%를 상회하여 정책 목적 달성을 이유로 2013년 말 폐지

나. 정책성분석 관련 쟁점

- 조세특례 도입의 적절성 검토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이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이유로 2013년 말에 일몰되었던 것을 유사한 형태로 재도입하려는 것임
 - 본 조세특례는 과거 세액공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세액공제율 수준을 낮추고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급기한 상한을 축소하는 한편, 공제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 1개를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4월부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애초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정책수단으로 제기됨
- 따라서 정책성 분석 시,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 처리된 세액공제를 유사한 형태로 1년여 만에 재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제도의 추가적 참여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동 세액공제를 제기한 점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도설계의 적절성 검토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구매기업)과 결제 관행 개선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판매기업)이 상이하다는 특성이 있음.
 - 세액공제의 사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무엇보다도 납세자(구매기업)의 지급기한 단축 및 어음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의 결제행태 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만큼 유인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즉,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해당 세액공제의 성패의 중요한 관건임
- 따라서 지급기한별 세액공제율 구조, 세액공제율 수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 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엄밀한 정책성 분석이 요구됨

□ 정책대상의 적절성 검토

- 정책대상 가운데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정책당국은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결제행태 변화를 추구한 기업에 혹시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수혜율 저하와 함께 사업효과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또한, 반대로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제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즉, 정책대상인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다. 경제성분석 관련 쟁점

□ 편익추정의 쟁점

- 본 조세특례 도입에 의한 효과로는
 - 첫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판매기업 어음할인수수료의 감소,
 - 둘째,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제도 이용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어음할인을 감소,
 - 셋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로 판단되며 기업의 신용도 제고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금융비용의 감소효과가 편익이 될 것임⁷⁾
- 아울러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1차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 증가로부터 4차 하도급업체에까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 비용추정의 쟁점

- 본 조사에서 비용은 제도 도입 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으로 정의함
- 세수감소분⁸⁾은 본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세수감소분 추정을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정책대상인 중소기업들 중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수와 이들의 현금성결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7) 구체적인 편익의 개요 및 추정방법은 편익추정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8) 본 절에서는 조세지출로 인한 효율성 손실 비용 및 행정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 경제성 분석의 쟁점

- 조세특례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경제성 분석의 전제(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기간 등)설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일반지침(KDI) 상의 내용을 준용하여 검토를 수행함

라. 형평성분석 관련 쟁점

□ 형평성 분석의 필요성

- 조세특례는 정책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불공정성 또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특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음.
- 조세지출의 주요한 목적이 재정적 유인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분배” 자체가 목적인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특정 조세지출정책이 세목의 누진성을 약화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제III장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4, \$5, \$15, \$20-2 등), 구매기업에 대해서 지급기한 상한 및 추가 이자비용·할인비용 보상의무를 부여(\$22),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활용 가능성을 적시(\$27)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원활한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액공제 활용 의지를 천명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의 보조 정책수단으로 세제지원 방안을 제기
- 상생결제 이외의 다른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임.
 -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정책달성을 이유로 2013년에 일몰된 바 있음.

□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 애초 취지대로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효율적인 추가 정책수단이 되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유형을 대폭 축소해야 함.
- 상생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 노력으로 작동: 협력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여타 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 중복성

- 중소기업에 대한 60여 개의 조세지원 및 90여 개의 재정사업을 살펴본 결과,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같이 기업 간 결제 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2.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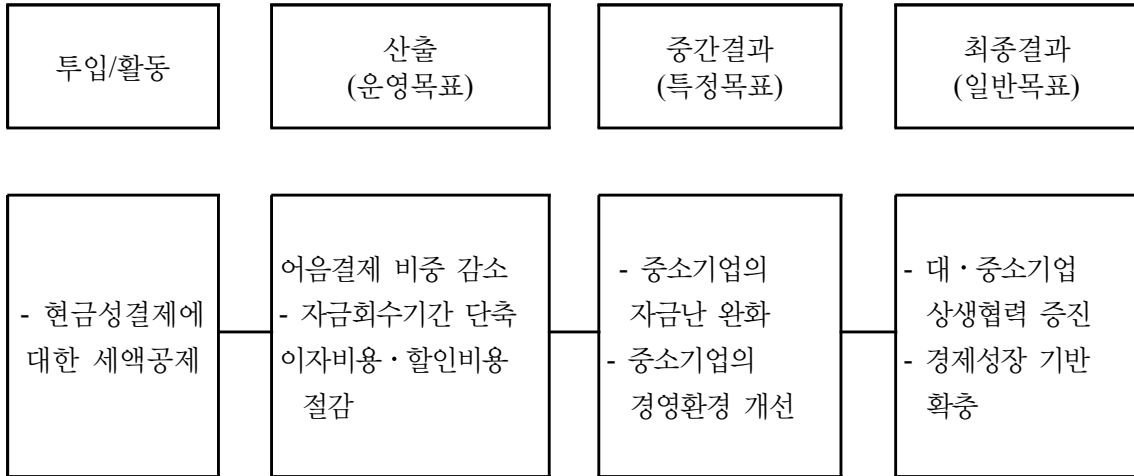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어음결제 관행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현금 유동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도입목적·배경으로 제시
- 본 연구: 사업목표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경영환경 개선’으로 전제

□ 산출-중간결과-최종결과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은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나 논리모형의 첫 번째 연결고리인 투입/활동-산출(운영목표)은 불명확

- 현금성결제 증가가 어음결제 감소보다는 현금결제 감소에 주로 기인
- 과거 세액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신규 세액공제 도입 시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증가 의향이 낮음.

[그림 4]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논리모형



3.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 세액공제 고유 특성에 의해 자동으로 충족
- 정책대상의 적절성
 -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대상 선정은 적절
 - 상생결제에 한하여 중견기업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 상생결제제도의 파급효과 발생 여부는 1차 협력사의 결제행태 변화에 상당 부분 좌우됨.
- 수혜율: 정책대상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 비납세 기업: 조세특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 ‘현금성결제 < 어음결제’ 기업: 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
-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
 - 조세특례 고유 특성에 의해 부정수급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 사업효과와 무관한 결제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제공 → 예산 낭비: 현금결제 감소를 통한 현금성결제 증가(어음결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

4.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세액공제 고유 특성에 의해 자동으로 충족
 - 공제대상 현금성결제 유형, 공제요건, 공제율 수준, 공제율 적용금액 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현금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어음결제 비중 감소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한 설정
 - 지급기한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 현금성결제 비중 증가뿐만 아니라 지급기한 단축 또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긴요

-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 세액공제율 구조: 지급기한 단축 및 현금성결제 증가를 위한 유인제공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설계된 상태
 - 지급기한 상한 차이(45일)가 지나치게 길고, 공제율 차이(0.1%p)는 지나치게 작음 →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유인제공이 매우 부족
 - 세액공제율의 절대적 수준이 낮음 →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를 위한 유인제공이 불충분
 - 공제율 적용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제공이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사업효과 및 형평성 모두 저하될 가능성
 -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는 2배의 유인이 제공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유인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자금난 혹은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액공제 총액상한: 거래규모에 비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자금난 혹은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표 7>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

납세자의 행태변화	과거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의 특징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 ¹⁾	$r_b \leq 2.74\%$	$r_b \leq 1.83\%$	공제율 수준이 낮음
지급기한 단축 ²⁾	$r_b \leq 4.26\%$	$r_b \leq 0.81\%$	지급기한 상한 차이가 크고, 공제율 차이는 적음

주: 1) $\frac{(80-60)r_b}{365} = t_2$, r_b : 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율,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 상한이 2배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이 0으로 감소.

2) $\frac{(d_2-d_1)r_b}{365} \leq t_1-t_2$, r_b : 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율, 과거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30일, 신규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15일.

- 세액공제 총액상한: 거래규모에 비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

□ 조세 왜곡 가능성

- 사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태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 기업 → 예산 낭비 초래
- 사업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사업효과가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도 존재: 비납세 기업

<표 8> 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세액공제 혜택여부	기업의 행태변화	사업효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
○	어음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	사업효과 구현
	현금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	사업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	× (현금성결제 비중 < 어음결제 비중)	사업효과 상실 (제도적 요인)
	× (비납세 기업: 세액공제 혜택 없음)	사업효과 상실 (태생적 한계)

5. 소결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정책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표 9>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정책성 분석 결과

분 야	세부 기준	평가 내용
정책적 일관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상생결제 시 이외의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조세특례의 필요성	
	조세특례의 적시성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 유사한 조세특례 혹은 재정사업 없음.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
	사업목표의 적절성	- 투입/활동-산출(운용 목표) 전개흐름의 논리적 연결성이 약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단, 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의 차등화 필요).
	정책대상의 공제혜택 비수혜 가능성	- 조세지원 고유의 한계, 과거 사업효과 및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비정책대상의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 현금결제를 현금성결제로 대체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구성요소의 명확성	- 공제대상 결제유형, 공제율·지급기한,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등,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성과지표의 적절성	- 현금성결제(현금 포함) 비중: 적절 - 지급기한 관련 성과지표 추가 필요
	유인제공의 적절성	- 공제율·지급기한,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및 공제총액 상한: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 제공이 매우 약하게 설계된 상태
	조세 왜곡 가능성	- 현금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어음결제 비중 감소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태생적 한계: 사각지대(비납세 기업) 존재

제Ⅳ장 경제성 분석

1. 개요

- 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국세청자료 미비에 따라 300개 중소기업을 임의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 하도급단계별로 1차, 2차, 3차 기업을 각각 150개, 75개, 75개로 임의선택
- 특히, 설문기업 중 2013년 회계자료가 존재하며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편익과 비용을 추정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회계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유한 설문기업으로 분석대상 한정
 - 2013년 회계자료를 가진 설문대상기업 193개 중 16개 기업(8.2%)이 과거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그러나, 193개 중 66개 기업(34.2%)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신청을 한다고 가정함
 - 또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1차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 증가로부터 4차 하도급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함

2. 주요 설문결과

- 기업경영 현황
 - 응답자의 약 56%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판매부진,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순
- 결제수단 이용현황
 - (결제현황) 대부분 현금위주의 결제

- (수취어음의 활용) 대부분 은행할인을 통해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만기까지 소진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수단으로 활용
- (현금성결제수단 선호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가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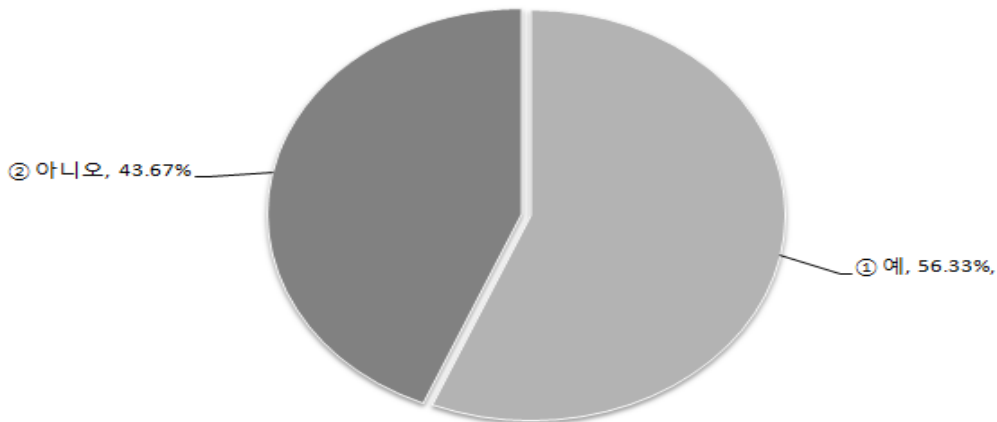
□ 기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 현황

- 조세특례 조항(「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인식도
 - 약 22%의 응답자만 과거 조세특례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의 기업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조세특례 조항 일몰 후 현금성결제비중의 변화
 - 구매기업으로서 판매기업에 결제한 자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과 일몰이후의 현금성결제비중의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현금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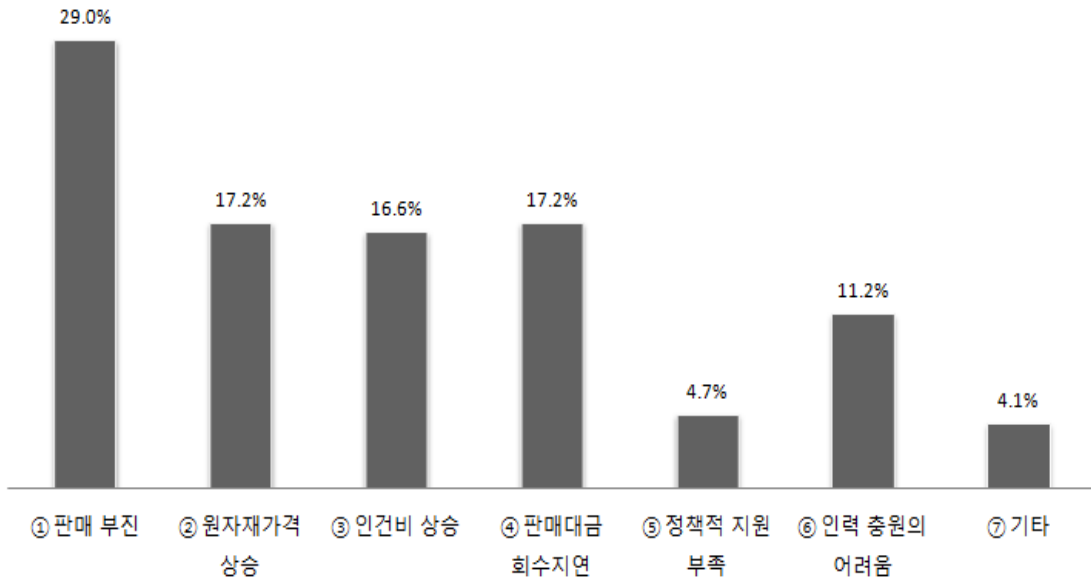
□ 새로운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

-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 응답자의 약 24%가 인지
- (조세특례 도입 시에만 확대) 응답자의 18%
- (조세특례 도입과 무관하게 확대) 응답자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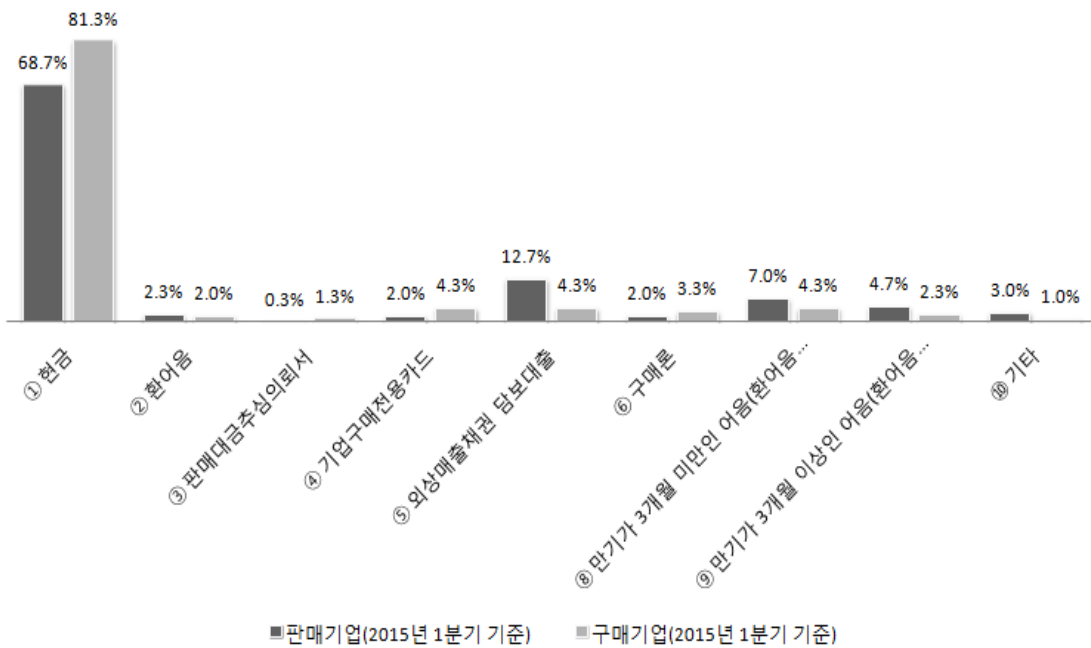
[그림 5] 경영상의 어려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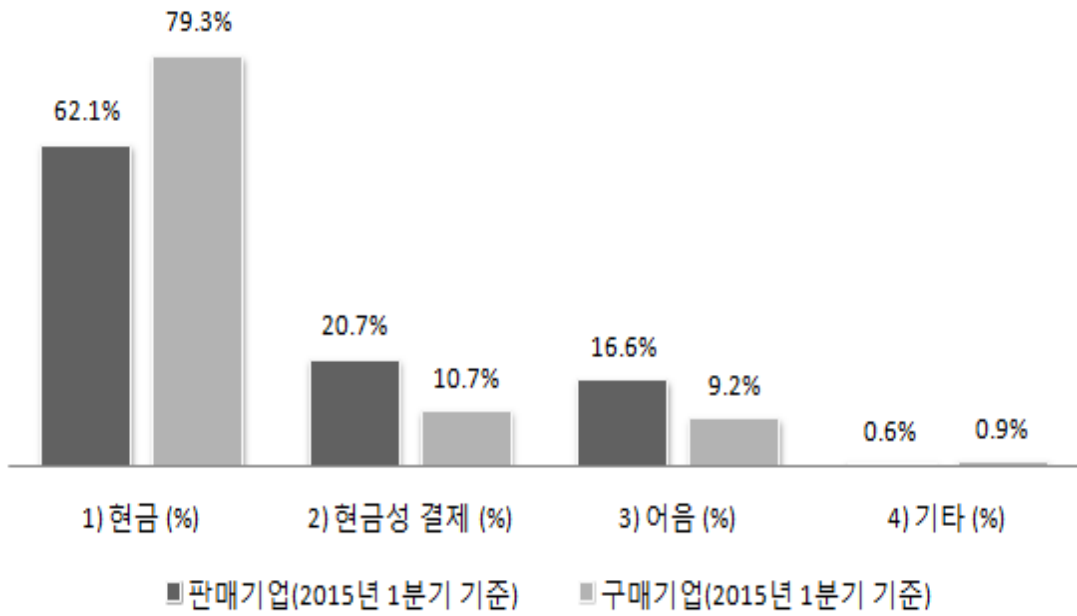
[그림 6]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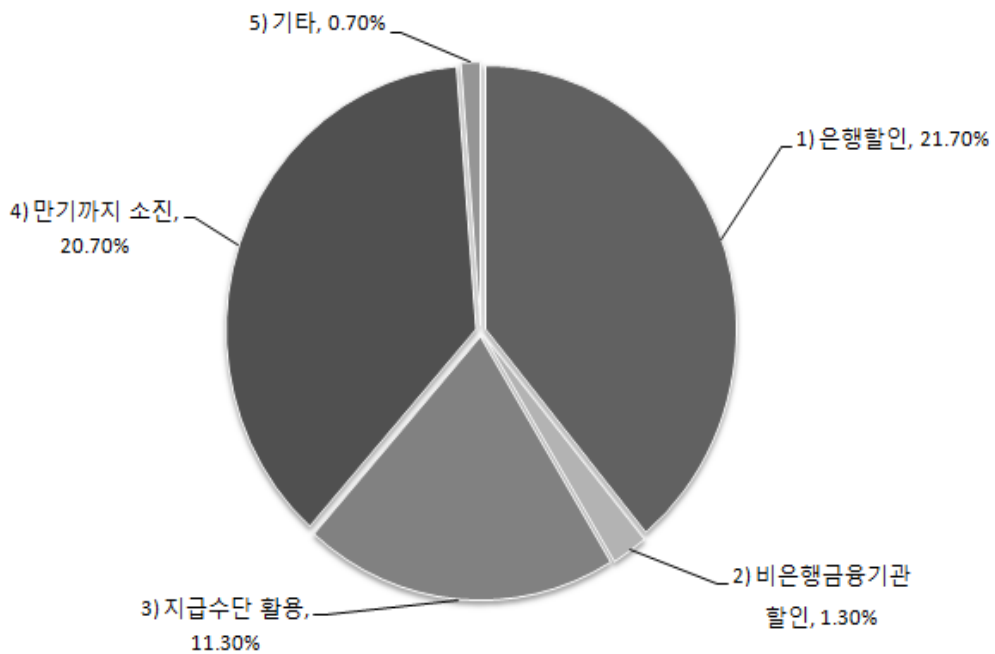
[그림 7] 수단별 지급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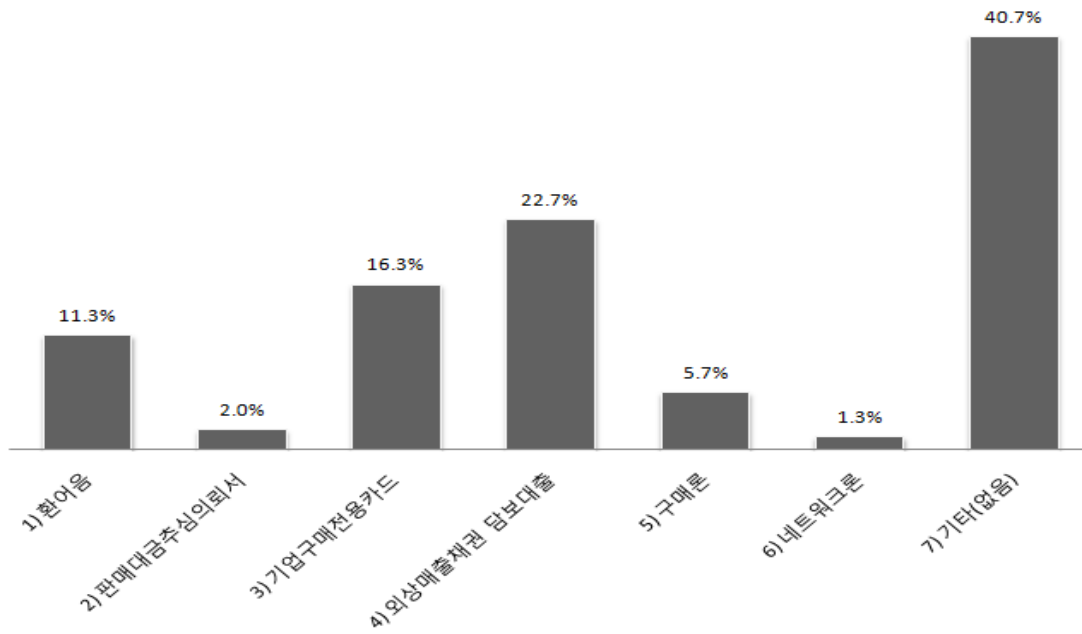
[그림 8] 결제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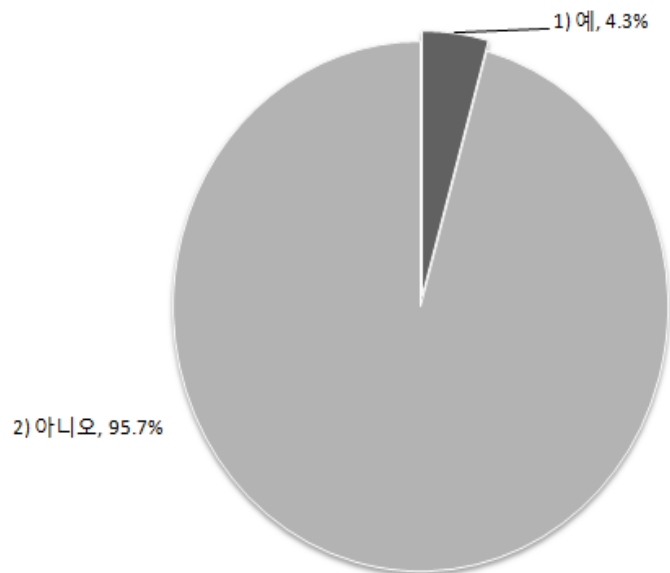
[그림 9] 수취어음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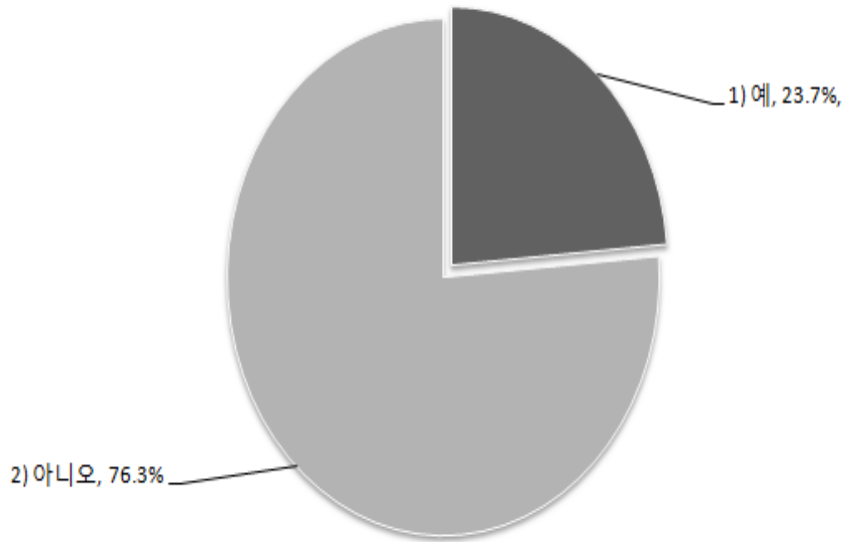
[그림 10] 구매기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현금성결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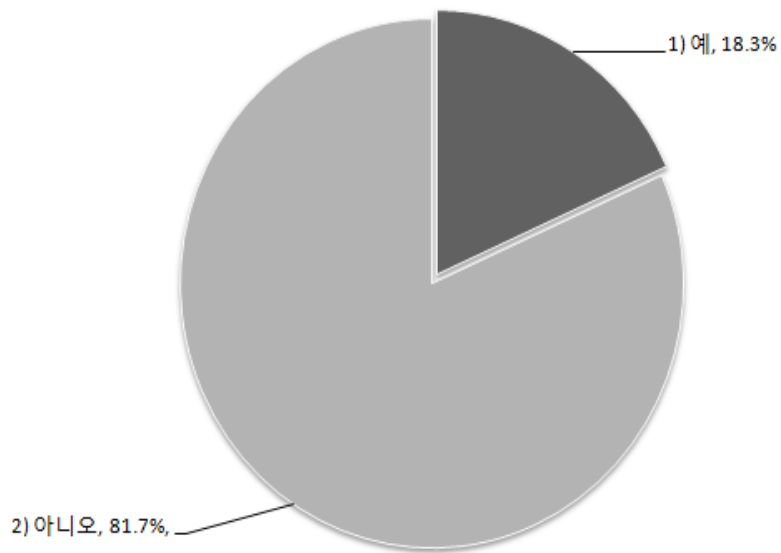
[그림 11] 조세특례에 따른 현금성결제비중 확대 여부



[그림 12]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



[그림 13] 조세특례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비중 확대



3. 비용추정

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계획서상 평균 예상 감면규모는 317억원

- 주무부처는 과거 시행된 제도의 감면규모를 활용하여 본 세액공제제도의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판단

<표 1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구분	총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예상	평균	2,639	31,700	2,639	31,700	0	0
	시행3년차	2,639	28,100	2,639	28,100	0	0
	시행2년차	2,639	31,700	2,639	31,700	0	0
	시행1년차	2,639	35,200	2,639	35,200	0	0
실적	평균	2,601	40,530	2,574	35,105	27	2,068
	2013년	2,520	30,569	2,494	29,669	26	900
	2012년	2,665	38,716	2,639	36,520	26	2,196
	2011년	2,619	42,238	2,589	39,128	30	3,110

나. 비용추정을 위한 전제

□ 본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은 제도 도입 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으로 정의하고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상생결제 제도 이용의사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

- 2013년 회계자료가 존재하는 193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상생결제 제도 이용의사를 밝힘.

다. 비용추정방법

□ 66개 기업의 세수감소분을 이용하여 산업전체의 세수감소분 추정

<표 11>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추정 단계	추정 값
1단계	기존 세액공제제도 혜택 비율: 6%=(18/300)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42,900(\text{개}) = \frac{2574}{6\%} \times 100$
2단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한 기업 수): $10,167(\text{개}) = 42,900 \times 23.7\%$
3단계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3,192(\text{개}) = 10,167 \times 31.4\% \left(= \frac{16}{51} \right)$

□ 66개 기업의 비용을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개별기업의 세액공제율 = 0.2% × (15일 이내 현금성결제비중/현금성결제비중) + 0.1% × (15일 초과 현금성결제비중/현금성결제비중)
- 세액공제대상 현금성결제금액 = 개별기업의 (현금성결제비중 - 어음결제 비중) × 2014년 구매대금
- 개별기업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대상 현금성결제금액 × 세액공제율

라. 비용추정결과

□ 평균 세액공제율은 하위 하도급단계로 내려갈수록 감소하는 모습이고, 평균적인 세액공제대상 결제금액을 보면 1차 하도급업체의 금액이 약 101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하도급 단계(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평균 세액공제율(%)	0.117	0.116	0.115
평균 세액공제대상금액(억원)	101.10	40.77	68.86

주: 표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항목별 단순평균으로 두 항목을 곱하여 세액공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

〈표 13〉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비용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합계
66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백만원)	538.27	69.90	103.89	712.06
3,192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억원)	260.33	33.81	50.25	344.38

□ 비용분석 결과,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는 총 3,192개로 산출되었으며, 예상되는 세수감소분(비용)은 344억 3,800만원(=712.06백만원 × 3,192/66)으로 추정

4. 편익추정

가. 편익추정의 개요

□ 조세지출 편익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세지출의 순편익을 추정하는 것임

○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기업의 편익을 추정

- 본 설문조사에서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한 기업수는 66개 기업 중 14개 기업에 해당

나. 편익항목의 선정 및 추정방법

1)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은 세액공제에 따른 구매기업의 현금성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기일의 단축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어음수수료 인하효과

① 현금성결제 순증가액 = (2014년 대비 현금성결제비중 증가분 - 현금결제 비중 감소분) × 2014년 구매대금

②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을 이용

- ③ 평균 결제 감소일= 79.8일 (평균 어음결제기일) - 46.7일 (평균 현금성결제 기일)
= 33.1일
- ④ 상위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계산
- 하도급 단계별 매출채권대비 매입채무(매입채무/매출채권)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 ⑤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 현금성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 승수 × 33.1일 /365일

<표 14>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
2차	7.04%
3차	7.04%
4차	8.62%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을 이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15> 하도급 단계별 현금성결제의 승수

하도급 단계	승수
1차	1+0.43+0.43x0.36
2차	1+0.36
3차	1

주: 하도급단계별 평균 매입채무/매출채권을 이용
자료: KIS-DB

2)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은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비중의 증가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음할인율 감소효과

- ① 상생결제 순증가액 = 현금성결제 순증가비중 × (상생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 2014년 구매대금
- ② 대기업에 적용될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대기업 평균대출금

리/ 전체 평균대출금리)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

- 대기업의 평균 어음할인율 = $5.46\% \times (4.18\% / 4.47\%) = 5.10\%$

- ③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을 적용받을 평균 결제기일은 45.4일로 15일 이내 상생 결제비중과 15일 초과 60일 이내 상생결제비중의 가중치로 계산
- ④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는 <표 16>을 준용
- ⑤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 상생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감소분 × 승수 × 45.4일/365일

<표 16>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2차	$7.04\% - 5.10\% = 1.93\%$
3차	$7.04\% - 5.10\% = 1.93\%$
4차	$8.62\% - 5.10\% = 3.51\%$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과 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3) 신용도 제고편익

□ 신용도 제고편익은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로 인한 기업차입금의 금융비용 감소효과

○ 특히, 본 조사에는 매출액 대비 매입채무(어음 및 외상)의 감소에 따른 신용도제고가 금융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①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 어음결제 감소비중(Δ 어음/구매대금) × 구매대금/매출액
- ② Nam(2013)의 계수 0.0003 (t-value: 3.1)을 이용한 부도확률의 감소분 = $0.0003 \times$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 ③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은 Nam(2013)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BBB, BB, B 부도확률을 하도급 1차, 2차 및 3차의 부도확률로 사용
- ④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는 <표 15>를 준용
- ⑤ 신용도 제고편익 = (부도확률 감소분 / 하도급 단계별 평균 부도확률) × 2013년 이자비용⁹⁾ × 승수 × 2014년 명목GDP총성장률(103.89%)

9) KIS-DB에서 비외감 기업회계자료의 경우 자료갱신이 늦어져 자료가 완벽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이자비용을 이용하고, 2014년 명목GDP성장률을 적용함

〈표 17〉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신용등급	S&P 부도확률	경험적 부도확률	하도급 단계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BBB+	0.16	0.16	1	0.27%
BBB	0.27	0.34		
BBB-	0.32	0.32		
BB+	0.66	0.58	2	0.91%
BB	0.89	0.84		
BB-	1.50	1.31		
B+	2.55	2.54	3	6.59%
B	7.37	7.01		
B-	10.23	10.23		
CCC/C	23.61	17.42		

자료: Nam(2013)의 <Table 5>를 인용

다. 편익추정결과

□ 편익 추정결과 세액공제를 신청할 3,192개 기업의 하도급 단계별 편익의 총계는 약 109.75억원/년임

〈표 18〉 전체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단위: 억원/년)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신용도 제고편익	합계
1차	30.96	7.45	13.74	52.16
2차	30.16	1.08	0.36	31.59
3차	16.34	9.38	0.28	26.00
합계	77.46	17.91	14.38	109.75

5. 경제성 분석 결과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분석기준연도: 2014년 말
- 분석기간: 3년
- 사회적 할인율: 5.5%
- B/C ratio: 0.32

<표 19> 경제성 분석결과

구분	결과
총 할인비용(백만원)	98,021
총 할인편익(백만원)	31,239
B/C	0.32
NPV(백만원)	-66,782

<표 20> 비용-편익 흐름표

(단위: 백만원)

차수	연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어음 수수료 감소	어음 할인율 감소	금융 비용 감소	합계		총편익	총비용
1	2015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975	34,438
2	2016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402	32,642
3	2017	7,746	1,791	1,438	10,975	34,438	9,860	30,940
합계		23,238	5,373	4,314	32,925	103,314	31,239	98,021

제V장 형평성 분석

1. 개요

가. 정책목표 평가기준과 형평성

-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조세지출 정책은 특정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업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특정 조세지출정책이 세목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검토

□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형평성 검토 수행

- 첫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봄
 - 본 제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1~0.2%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세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제도임
- 둘째,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이익 규모가 상이한 중소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기존 세액공제의 혜택과 새롭게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 검토

나. 형평성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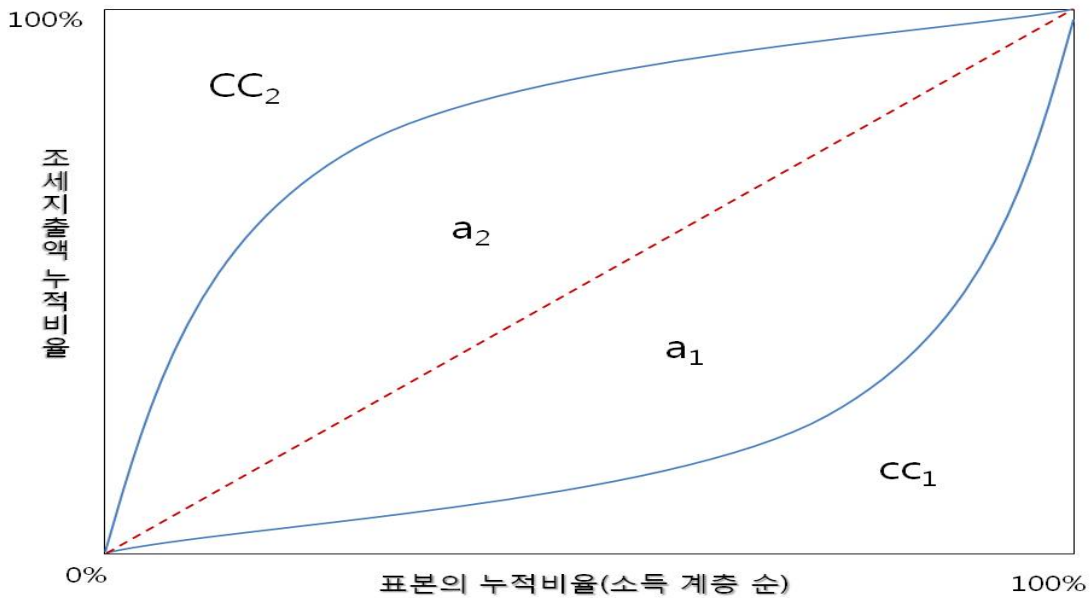
- 형평성의 측정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념을 이용한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 CC)을 활용
 -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는 집중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활용하여 계산된 불평등지수를 의미함

- 집중곡선의 가로축은 기업의 이익 혹은 규모에 따라 서열화하여 누적시키고, 세로축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려는 변수, 즉 세액공제혜택에 해당되는 조세지출규모를 가로축의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나타냄
- 집중지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

$$CI=1-\frac{1}{n}\sum_{i=1}^n(T_i+T_{i-1})$$

- 기업의 이익규모에 따라 세로축에 제시되는 변수값에 차이가 없으면 즉, 기업의 이익규모와 상관없이 조세지출액이 동등하다면 CC 곡선은 대각선 자체가 되고 집중지수는 0의 값을 가지게 됨
- 집중지수는 -1에서 1 사이에서 도출됨 (예를 들면, CC1은 수익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지출 수혜액이 더 많은 경우이며, 집중지수가 0보다 크게 나타남)

[그림 15] 기본 집중곡선



-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CI 추정)을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의 2013년, 2014년 및 2015년 3개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
 - 2013년: 기존 세액공제율을 반영하여 조세지출규모 및 CI 계산
 - 2014년, 2015년: 기존 세액공제율과 개정요구안의 세액공제율을 모두 반영하여

조세지출규모 및 CI 계산

- 각 연도의 세액공제비중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 현금성결제(상생결제와 상생결제 외 모두)의 기한을 15일 이내와 15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본 제도 이용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세액공제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
 - 단, 2013년 경우에는 기존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시기로 결제기한을 15일 이내와 15일 초과에 응답한 경우를 30일 이내와 30일 초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
- 기존 세액공제와 새로운 세액공제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형평성 개선 여부 판단

다. 분석자료

-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2013년 국세청 자료 활용
 - 총 2,344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이상 기업들의 수입(매출액)규모와 세액공제규모 제시
 - 이를 활용하여 집중지수를 계산한 후, 수직적 형평성 분석 수행
-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설문조사 시 응답을 하지 않은 1개 기업을 제외하고 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별(6단계로 구분) 조세지출 규모 계산

2. 중견·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 중견기업을 포함한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지수는 0.5999로 나타남
 - 이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
 - 수입계층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지출 규모가 높고, 수입 증가에 따라 혜택 규모 증가 수준도 높아짐

- 조세지출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10% 수입계층이 전체 세액공제 혜택 중 약 50%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불평등도가 매우 높음
- 따라서 기존의 기업어음결제제도는 중소기업과 그 이상 규모의 기업들 간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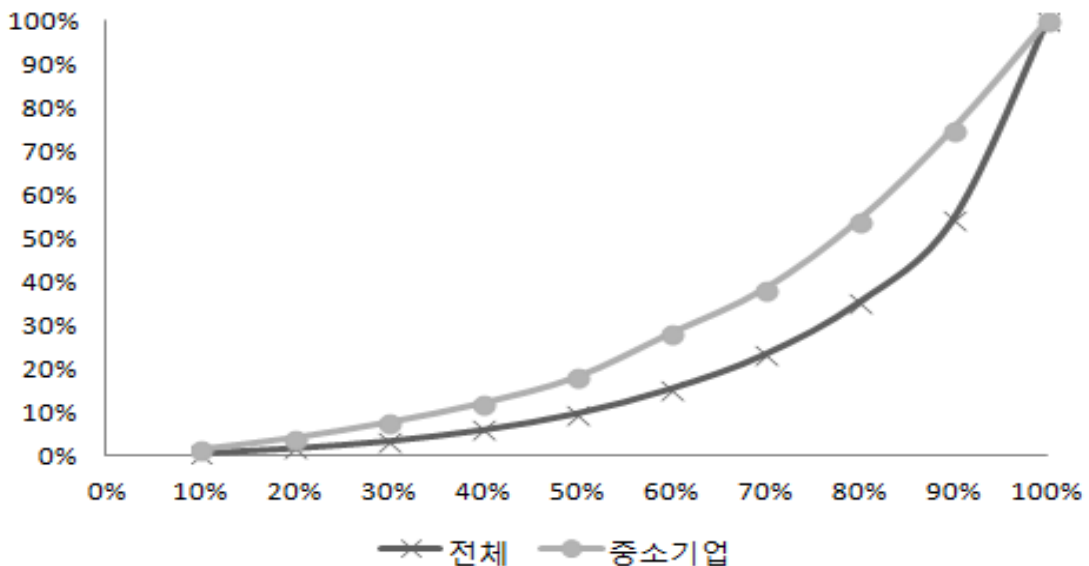
□ 중소기업만을 고려한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지수는 0.4227로 나타남.

- 이는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기업의 경우에 비해 형평성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평등도는 높은 수준([그림 16] 참조)

□ 기존 조세특례제도는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어려움

- 기존의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예를 들어, 중견기업)이 상당한 세제혜택을 가져감
- 기존의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액공제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16]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 비교: 기업 전체 v.s. 중소기업(2013년도)



3.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결과

- 이익규모별로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 검토(설문조사 자료 활용)
 - 특히, 기존 세액공제의 혜택과 신규로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 검토
 - 현금성결제 행동 변화에 따라 두 가지 분석 방법 채택
 - 소극적 추정: 제도 도입 시 현금성결제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 적극적 추정: 소극적 추정 대상과 제도 미도입시 현금성결제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도 포함하여 분석

- 또한, 2013년 설문조사 자료 중 법인세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이익규모별 법인세 누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 수행
 - 세액공제제도 유무에 따른 법인세 비용 규모의 차이는 미미함
 - 세액공제제도 유무에 따라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를 상호 비교한 결과, 해당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조세 부과체계의 누진성을 일부 약화 시킴에도 그 수준은 미미함
 - 세액공제제도 도입 시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는 0.3515로 법인세를 적용하기 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 0.4032에 비해 법인세의 형평성 개선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종류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의 집중지수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
 -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인 0.3515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조세 부과체계의 누진성 개선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소극적 추정) 분석 결과, 새로운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요구안이 과거에 비해 조세지출 혜택에서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음
 -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도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고,

신·구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형평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신규 세액공제 혜택이 형평성을 약간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

- 2014년도의 신규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집중지수는 0.1840으로 기존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집중지수인 0.2061보다 낮아 형평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기존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집중지수 0.2061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약간 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집중지수는 0.2139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경우의 집중지수인 0.2040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며, 또한, 수치 자체가 낮아 불평등도가 높지 않음

<표 21>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구분	소극적 추정		적극적 추정	
	세액공제 혜택_old ¹⁾	세액공제 혜택_new ²⁾	세액공제 혜택_old ¹⁾	세액공제 혜택_new ²⁾
2013	0.1964	-	0.1964	-
2014	0.2061	0.1840	0.1979	0.1714
2015	0.2040	0.2139	0.1947	0.1510

주: 1) 기존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 (적극적 추정) 소극적 추정과 분석 결과 유사

-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이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 추정의 경우보다 보다 명확히 드러남.
 - 2014년도 기존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규모의 집중지수는 0.1979이고, 새로운 어음결제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우 집중지수가 0.1714임
 - 2015년 경우도 기존 및 신규 세액공제 비중 적용 시 집중지수가 각각 0.1947과 0.1510으로 신규 세액공제제도가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추정보다 형평성이 약간 더 개선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본 분석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설문조사에 기반한 결과로 보다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 존재

- 다만, 기존 실행안이 30일 이후 결제한 경우 0.5%에서 0.15%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0일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30%수준으로 크게 삭감된 것과는 달리,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15일 이후 결제한 경우라도 0.2%에서 0.1%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서 50% 수준은 보장을 해 주고 있음
 -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인 경우 결제일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결제일이 늦어지더라도 50% 수준을 보장해 주는 현재의 개정안이 기존의 실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는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제VI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조세특례의 개요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2000년에 도입되어 2013년 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된 제도임
- 그러나, 조세특례 일몰 이후에도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본 조세특례 조항 재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주무부처는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방식 중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 제도로 변경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 본 조세특례는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지급기한 15일 이내의 현금성결제방식에 대해서는 구매대금의 0.2%, 16일~60일 이내의 결제에 대해서는 구매대금의 0.1%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임

□ 부문별 분석결과

- (정책성 분석) 조세특례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 낮음
 - (정책적 일관성) 상생결제 이외의 다른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가 불분명하며 투입/활동-산출(운용목표)간 전개흐름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함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은 명확하나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책 대상의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이 있음
 -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제공력이 매우 낮음 또한 현금결제에 대한 세액지원정책의 부재, 비납세 기업에 의한 조세 왜곡 가능성이 있음
- (경제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0.32)
 - (비용추정)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으로서 ① 정책대상 추정, ② 세액공제율 추정, ③ 세수감소분(비용) 추정을 수행함
 - ① 정책대상 추정: 3,192개 업체

② 세액공제율: 1차 0.117, 2차 0.116, 3차 0.115

③ 비용추정결과: 34,438백만 원/년

- (편익추정) 조세특례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로서 ①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②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③ 신용도 제고편익을 추정함

①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77.46억원/년, 조세특례 도입에 따라 구매기업의 현금성결제 증가로 결제기일이 단축됨에 의한 판매기업의 어음수수료 인하 효과

②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17.91억원/년, 조세특례 도입 시 상생결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어음할인율이 감소되는 효과

③ 신용도 제고편익: 14.38억원/년, 현금성결제 증가에 따라 구매기업의 매출 대비 매입채무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됨에 의한 금융비용 감소효과

○ (형평성 분석)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 개선효과 낮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본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AHP 분석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은 0.250으로 나타나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연구진은 사업 미시행을 더 나은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세특례 도입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주요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 간 대금결제 시 주로 이용하였던 어음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간편성을 지니는 반면, 연쇄 부도로 인한 위험도 상존하기에,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기업 간 결제 관행의 개선은 필요함

- 그러나, 관련자료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간 결제지급수단으로서 현금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규모는 전체 거래의 80% 수준에 달하는 한편 본 조세특례가 운영되었던 2013년과 본 조세특례가 일몰된 이후인

2014년의 현금성결제 및 어음 결제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결제 비중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정책적 한계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만큼 결제관행이 개선되었거나, 조세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즉, 주무부처는 본 제도 도입 시에 기업 간 결제행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음을 의미함
-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의 신용을 이용하여 하위업체들의 자금조달상 원활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로서 각광받고 있음. 이에 주무부처는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현금성결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경제활력 회복의 목적보다는 상생결제제도의 확산을 독려하는데 본 조세특례 도입의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정 없이 단순히 기존의 제도에서 네트워크론을 제외하고 상생결제제도로 세액공제 대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는 현금성결제 수단별 정책효과에 대한 판단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세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에게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지원방식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 구매대금의 0.2%, 지급기한 16~60일 → 구매대금의 0.1%
운영기간		2015~2017년
정책성 분석	정책적일관성	상생결제 제도의 보조 정책수단임을 전제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이 확보되며 타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음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가 불분명하며, 투입/활동-산출(운용목표)간 논리적 연관성 불명확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은 명확하나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책 대상에 대한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존재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현금성결제 전환의 유인제공이 낮고,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 초래 및 비납세 기업에 의한 조세왜곡 가능성 존재
경제성 분석	B/C	0.32
형평성분석		과거 제도에 비해 형평성은 다소 개선되나, 그 효과는 미미함
AHP		0.250

목 차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제1절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3
1. 도입배경	3
2. 목적 및 기대효과	3
제2절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및 경위	3
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2. 운용경위	5
3. 「조세특례제한법」 신·구 조문 대비 변경사항	7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1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배경	11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	12
3. 조사의 추진체계	19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체계	20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2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25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운용 현황	25
2.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26
3. 중소기업의 어음 및 현금성결제 현황	30
4. 상생결제 제도	35
제2절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사전평가 사례검토	40
1. 이론적 배경	40
2. 조세지출 평가 이슈	42
3.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43
4. 조세지출 분석도구	49
5. 조세지출 관리 및 평가: 아일랜드 사례	52

6.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평가 사례	57
7. 소결	62
제3절 외국의 어음제도 사례검토	64
1. 미국	64
2. 일본	65
3. 유럽	65
4. 영국	65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66
1. 사업 추진상의 쟁점	66
2. 정책성 분석 관련쟁점	66
3. 경제성 분석 관련쟁점	67
4. 형평성 분석 관련쟁점	68
제Ⅲ장 정책성 분석	71
제1절 정책적 일관성	75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75
2. 조세특례의 필요성	79
3. 조세특례의 적시성	80
4. 여타 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 중복성	81
제2절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84
제3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88
1. 정책대상의 명확성	88
2. 정책대상의 적절성	89
3. 정책대상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90
4.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	91
제4절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92
1.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92
2. 성과지표의 적절성	92
3.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94
4. 조세왜곡 가능성	99
제5절 소결	100

제Ⅳ장 경제성 분석	103
제1절 개요	105
1. 기본전제	105
2. 설문조사의 개요 및 주요결과	106
제2절 비용추정	116
1. 비용추정의 개요	116
2. 비용추정방법	118
3. 비용추정 결과	122
제3절 편익추정	125
1. 편익추정의 개요	125
2. 편익추정 방법	127
3. 편익추정 결과	132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133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133
2. 경제성 분석 결과	136
제5절 민감도 분석	137
1. 민감도 분석의 개요	137
2. 민감도 분석 결과	138
제Ⅴ장 형평성 분석	139
제1절 개요	141
1. 정책목표 평가기준과 형평성	141
2. 형평성 분석 방법	142
제2절 중견·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146
1. 집중지수(CI)와 형평성	146
2. 중견·중소기업 간 차등적 조세특례의 적절성	148
제3절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150
1. 추정방법	150
2. 소극적 추정	152
3. 적극적 추정	160
제4절 소결	164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AHP분석의 개요	171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73
1. 평가 대안	173
2. 조사 대상 집단	17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174
4. AHP 분석 결과	177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2
 참고문헌	 185
 부록	 187

표 목 차

<표 I-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4
<표 I-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운용경위	5
<표 I-3>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 주요 변경사항	7
<표 I-4> 국세감면현황 및 추이	12
<표 I-5>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13
<표 I-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19
<표 I-7>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20
<표 II-1>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도별 조세지출 금액	25
<표 II-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26
<표 II-3> 중소기업의 구분-법령 검토	27
<표 II-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8
<표 II-5>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내용	29
<표 II-6> 지급결제금액 현황	31
<표 II-7> 지급결제건수 현황	31
<표 II-8> 판매대금 수취수단별 결제비중	33
<표 II-9> 받을어음(수취어음) 활용방법	34
<표 II-10> 어음할인 시 애로사항	34
<표 II-11> 활용하고 있는 현금성결제수단	34
<표 II-12> 현금성결제수단 이용 시 애로사항	35
<표 II-13> 주체별 기대효과	38
<표 II-14> 조세지출 평가 유형과 절차: 아일랜드	52
<표 II-15> 조세지출 사전평가 내용: 아일랜드	53
<표 II-16>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장·단점 비교	54
<표 II-17> 조세지출 사후평가 내용: 아일랜드	55
<표 II-18> 기부금 공제의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비교	60

<표 III-1>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신·구 대비	74
<표 III-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2014년 기준)	82
<표 III-3>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2014년 기준)	83
<표 III-4> 정부사업의 성과창출단계 및 사업목표	84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기준(2015년 기준)	89
<표 III-6>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	98
<표 III-7>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99
<표 III-8> 정책성 분석결과	101
<표 IV-1> 설문조사 개요	107
<표 IV-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117
<표 IV-3>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123
<표 IV-4>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124
<표 IV-5>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비용	124
<표 IV-6>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	128
<표 IV-7> 하도급 단계별 현금성결제의 승수	129
<표 IV-8>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130
<표 IV-9>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132
<표 IV-10> 설문기업 중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132
<표 IV-11> 전체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133
<표 IV-12> 경제성 분석기법별 장단점	135
<표 IV-13> 경제성 분석결과	136
<표 IV-14> 비용-편익 흐름표	136
<표 IV-15> 민감도 분석 결과	138
<표 V-1>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혜택(2013년도): 전체 기업 기준	147
<표 V-2>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혜택(2013년도):중소기업만 고려	149
<표 V-3>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조세지출 혜택: 2013년도 기준	155
<표 V-4>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4년도)	156
<표 V-5>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5년도)	158

<표 V-6>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159
<표 V-7>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4년도): 적극적 추정	161
<표 V-8>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5년도): 적극적 추정	162
<표 V-9> 연도별 집중지수(CI) 비교 : 적극적 추정	163
<표 V-10>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167
<표 VI-1> 「중소기업 어음결제 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사결과 요약	173
<표 VI-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76
<표 VI-3> 가중치 산정범위	177
<표 VI-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78
<표 VI-5> AHP 평가 결과	178
<표 VI-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181

그 립 목 차

[그림 I -1] 조세지출 운영방향	17
[그림 I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21
[그림 II-1] 하도급 거래 간 현금성결제 비율 추이	32
[그림 II-2] 현행 자금결제시스템 흐름도(예시)	36
[그림 II-3] 상생결제 제도 운영 흐름도(예시)	39
[그림 III-1] 사업의 개입논리	85
[그림 III-2]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논리모형	86
[그림 IV-1] 경영상의 어려움 유무	108
[그림 IV-2]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108
[그림 IV-3] 수단별 지급결제 현황	109
[그림 IV-4] 결제 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	110
[그림 IV-5] 수취어음의 활용	110
[그림 IV-6] 구매기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현금성결제수단	111
[그림 IV-7]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 여부	112
[그림 IV-8]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 수혜 여부	112
[그림 IV-9] 조세특례에 따른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여부	113
[그림 IV-10] 상생결제 제도 인지 여부	114
[그림 IV-11]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114
[그림 IV-12] 조세특례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114
[그림 IV-13] 조세특례 도입과 무관하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115
[그림 IV-14] 현금성결제 확대 요인	115
[그림 V -1] 집중곡선	143

[그림 V-2]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3년도)	148
[그림 V-3]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 비교: 기업전체 v.s. 중소기업(2013년도)	149
[그림 V-4]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2014년도)	157
[그림 V-5]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 (2013년도)	157
[그림 V-6]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159
[그림 V-7]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4년도): 적극적 추정	161
[그림 V-8]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163
[그림 VI-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175

I .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1. 도입배경

본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기업 간 거래 시 현금성결제방식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본 조세특례는 이미 2000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된 바 있고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2013년에 일몰되었다. 그러나 일몰도래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 간 대금 결제에 있어 어음결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본 조세특례의 재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조세특례의 목적은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주무부처에서는 현금성결제비율 90%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약 300억 원, 수혜기업은 연평균 약 2,600개로 예상하고 있다.

제2절 조세특례의 주요내용 및 경위

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대금을 구매한 기업에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정 조문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제외)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상생결제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조세특례의 정책지원대상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기업에도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했던 지난 조세특례의 내용과 차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방식은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제도 및 상생결제 제도를 통한 결제이다. 조세특례의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정책대상자는 약 2,600여개이고, 예상 세액감면규모는 연평균 317억원이다.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조세특례명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신규도입유형	신설(재도입)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방식: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 현금성결제방식: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제도 및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결제 • 기타 지원조건: 지급기한 60일 이내, 판매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 세액 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 구매대금의 0.2%, 지급기한 16~60일 → 구매대금의 0.1%
정책대상자 현황	약 2,665개(국세통계연보상 수혜기업 수)중 중소기업 2,639개(일반기업 26개는 제외)
운영기간	2015~2017년
예상감면규모	317억 원/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1년: 352억 원 • 시행 2년: 317억 원 • 시행 3년: 281억 원 • (기업규모 간 영향)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효과 기능 • (추가적인 경제효과) 현금결제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활력 회복, 건전한 대금 결제방식의 조기 정착으로 경제선순환 • 계량화된 효과: 측정 어려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에비타당성평가 조사요구서」, 2014.12

2. 운용경위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2000년에 도입되어 2013년 12월 말에 일몰된 제도로서 그간의 운용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도입 시 지원대상은 거래양방 중 최소 하나는 중소기업으로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을 제한하였다. 또한 세액 공제율은 환어음 및 약속어음결제금액의 0.5%로 설정하였다. 2001년부터는 지급기한을 1개월 이내로 공제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2002년부터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추가하였고 공제율은 0.3%로 낮췄다. 2005년부터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서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추가하는 한편, 지급기한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 간 거래로 제한하였다. 세부적인 운용경위는 아래의 <표 1-2> 와 같다.

<표 1-2>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운용경위

시행일 기준	지원대상 거래	현금성결제 수단 범위	기타 공제조건	공제율 적용금액	공제율	일몰
2000.10.27.	거래양방 중 최소 하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없음	환어음 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0.5%	2002.12.31
2001.8.14.	상동	상동	지급기한 1개월 이내	상동	상동	상동
2001.12.29.	상동	외생매출채권 담보대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한 1개월 이내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상동	상동	상동
2002.12.11.	상동	기업구매전용카드: 직불카드 추가	상동	상동	0.3%	2005.12.31
2004.12.31.	상동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한 60일 이내 상환청구권 행사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한 30일 이내: 0.3% 지급기한 	상동

시행일 기준	지원대상 거래	현금성결제 수단 범위	기타 공제조건	공제율 적용금액	공제율	일몰
			불가		31~60일: 0.15%	
2005.12.31.	중소기업 간 거래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판매자가 중소기업	상동	상동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이전	상동	상동	2008.12.31
2007.06.0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4%, 대기업 0.3%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2007.12.31.	상동	상동 단, 네트워크론 정의 확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08.09.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5%, 대기업 0.4% • 지급기한 31~60일: 0.15% 	2010.12.31
2008.12.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4%, 대기업 0.3% • 지급기한 31~60일: 0.15% 	상동
2010.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5%, 대기업 0.4% 	상동

시행일 기준	지원대상 거래	현금성결제 수단 범위	기타 공제조건	공제율 적용금액	공제율	일몰
					• 지급기한 31~60일: 0.15%	
2010.12.2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3.12.31
2015.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네트워크론을 상생결제로 대체	상동	• 지급기한 30일 이내: 0.2% • 지급기한 31~60일: 0.1%	2018.12.3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3. 「조세특례제한법」 신·구 조문 대비 변경사항

본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2010년에 도입되어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세액공제대상 결제수단이 네트워크론에서 상생결제제도로 대체되었으며 제5호가 삭제되는 한편, 제6호가 신설되었고 세액공제율이 축소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신·구조문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의 <표 I-3>과 같다.

<표 I-3>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 주요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회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p> <p>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p> <p>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4.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삭 제></p>
<p><신 설></p>	<p>6. 판매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 기한·상환 기한 또는 대금 결제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p>	<p>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 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 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 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③ -----.</p>
<p>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p>	<p>1. ~ 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삭 제>
<신 설>	<p>9.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하위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방법으로써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말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 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예비타당성평가 조사요구서」, 2014.12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배경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이후 약 30조원 규모로 그 수준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재정여력은 재정지출 억제나 세입증대를 통해서만 확충이 가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출 억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입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국세감면규모 증가에 있어 제한¹⁰⁾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신규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 1-4> 국세감면현황 및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2000	13.3	92.9	12.5
2001	13.7	95.8	12.5
2002	14.7	104.0	12.4
2003	17.5	114.7	13.2
2004	18.3	117.8	13.4
2005	20.0	127.5	13.6
2006	21.3	138.0	13.4
2007	23.0	161.5	12.5
2008	28.8	167.3	14.7
2009	31.1	164.5	15.8
2010	30.0	177.7	14.4
2011	29.6	192.4	13.3
2012	30.1	203.0	12.9
2013	33.8	201.9	14.3
2014(잠정)	33.0	216.5	13.2
2015(전망)	33.0	221.5	13.0

주: 1.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00~2013년 수치는 실적기준, 2014년은 잠정치, 2015년은 전망치

3. 2012년 이후로는 신규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를 위하여 2011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근거

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

조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평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하며,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대상사업은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¹¹⁾로서 기존 조세특례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개별 세법의 과세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p>

11)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조항	내용
	<p>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p> <p>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전문개정 2010.1.1.]</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조항	내용
	<p>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p> <p>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p> <p>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p>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p>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p>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p> <p>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p>

조항	내용
	<p>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p> <p>[제목개정 2013.2.15.]</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p>	<p>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p>[본조신설 2014.9.11.]</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기획재정부, 2015.3)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외여건은 일본과 중국 등의 경기 부진과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국내 여건 또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입여건의 경우에도 경제활력 제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낮은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지출원칙 확립과 조세지출의 선제적 관리, 조세지출 협업 강화 측면에서의 조세지출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을 지원하고 조세지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조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연 300억원 이상의 신규 도입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기존 항목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운영중점사항에 해당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1] 조세지출 운영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5. 3

1) 조세지출 운영과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을 지원
 - 임대시장 안정, 고용 촉진, M&A 활성화 및 서비스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세제지원 방안 마련
 - 기업·가계 소득 간 원활한 환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차질 없이 시행
- 세입 확충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 '13~'17년간 누적하여 18조원의 세입확충 목표에 따라 '12~'14년 세법개정으로 약 15조원('13~'17년) 조달 예정
 - '15~'16년 세법개정으로 잔여목표 달성을 지속적 추진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성공적 정착 유도
 -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심층평가 14건, 예비타당성조사 3건)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 작업 진행
 - 전문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재설계 등 추진

2)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 (정비원칙) 조세지출은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
 -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
 - 금년부터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이 일몰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 (신설원칙) 조세지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설
 - 금년부터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운영원칙) 주기적 성과평가,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 신설 또는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 설정
-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

3. 조사의 추진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월에 시작되고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6~7월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 수정이 이루어지며 8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서는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9월에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기재부에서는 예타 신청서 검토를 통해 다음연도 예타 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10월초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표 1-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기타
1~5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조사수행기간: 5개월
6월 7월	평가결과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타신청	
9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신청서 검토 및 다음연도 예타 대상 후보 선정	
10월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 개최, 다음연도 심층평가·예타 대상 확정	
11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	
12월	- 기관선정, TF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및 분석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은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각 항목별 분석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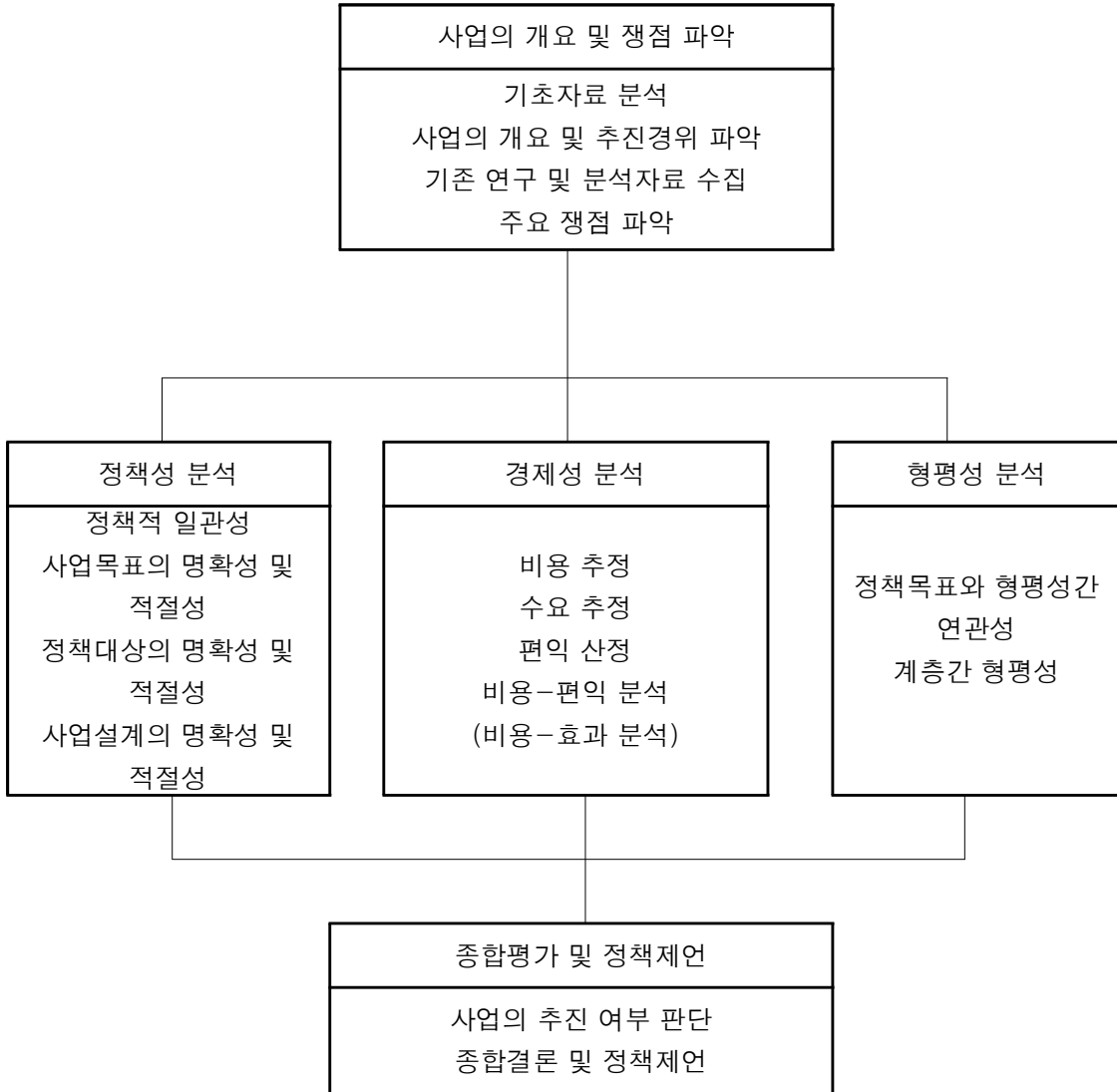
먼저 정책성 분석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경제성 분석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형평성 분석은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부문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이에 정책제언의 내용으로는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표 1-7>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분석 유형	경제성 항목	정책성 항목	형평성 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14.11

[그림 1-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1) 조세특례의 개요 및 조사의 주요 쟁점 파악

우선 대상 조세특례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사업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다양한 조사 쟁점을 도출하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 및 관련분야의 환경적 요인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조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도출에 기여한다.

2)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차원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3)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조사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4) 형평성 분석

형평성 분석에서는 정책목표와 형평성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검토한다.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해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한다. AHP 기법은 정량적·정성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의 전문적 판단을 적절히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HP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본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본 사업의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제언한다.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운용 현황

조세지출예산서상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금액은 연평균 300억원 수준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혜기업 또한 감소세에 있다.

<표 II -1>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도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억원)

연 도	실 적	잠 정	전 망
2015년	계: 316 소득세: 10 법인세: 306	계: 305 소득세: 12 법인세: 293	종료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	계: 398 소득세: 11 법인세: 387	계: 313 소득세: 10 법인세: 303	계: 309 소득세: 11 법인세: 298
	(2012년)	(2013년)	(2014년)
2013년	계: 430 소득세: 8 법인세: 422	계: 394 소득세: 11 법인세: 383	계: 393 소득세: 12 법인세: 381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계: 345 소득세: 7 법인세: 338	계: 427 소득세: 8 법인세: 419	계: 443 소득세: 8 법인세: 435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	계: 414 소득세: 7 법인세: 407	계: 345 소득세: 7 법인세: 338	계: 415 소득세: 8 법인세: 407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표 II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총계		중소기업 ¹⁾		일반법인 ²⁾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신고법인수	금액
2013년	2,520	30,569	2,494	29,669	26	900
2012년	2,665	38,716	2,639	36,520	26	2,196
2011년	2,619	42,238	2,589	39,128	30	3,110
2010년	2,463	33,836	2,437	32,229	26	1,607
2009년	2,576	40,728	2,546	36,908	30	3,820
평균	2,633	40,638	2,601	34,819	32	5,819

주: 1)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2) 일반법인은 주1)에 정의된 외의 법인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각 연도

2.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

본 조세특례의 정책수혜 대상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제 지원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중소기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총액과 연간매출액, 독립성 측면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소기업에 대한 구분과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두 법령 간 다소 차이를 가진다. 법령별 상세 사항은 아래의 <표 II-3>과 같다.

〈표 II -3〉 중소기업의 구분-법령 검토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업종 (개정 2015.02.03)	·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음.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시된 41개 업종
규모 (개정 2015.02.03)	·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음.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연간매출액 ¹⁾ ≤ 400억원~1,500억원
독립성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다만, 법에 정한 창업투자회사 등은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
소기업범위	· 제조: 100인 미만 · 작물재배, 어업, 축산, 광업, 건설, 출판,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그외 업종: 10인 미만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일정한 서비스업: 50명 미만 · 그외 업종: 10명 미만
유예기간 (개정 2015.02.03)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까지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을 제외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 1)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상한이 차별화되어 있음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정부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4>와 같다.

〈표 II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부문	지원제도명
<p>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배당소득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자금 사전상속 -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p>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p>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특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p>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 납부특례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부문	지원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중소기업 기업상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 공제 - 기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4.03

상기 조세지원정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에 제시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사항은 모두 8가지이며 대부분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원된다. 한편, 본 조세특례를 포함한 3가지 조항은 이미 일몰이 도래하여 효력을 잃었으며 현재 까지 효력이 존재하는 조세특례 조항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II-5>와 같다.

<표 II -5>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주요내용

조항	조세특례명	주요 내용	일몰 시점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015.12.31.

조항	조세특례명	주요 내용	일몰 시점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 내용: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2015.12.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015.12.3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 내용: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2017.12.31.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내국법인 중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 내용: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2016.12.3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3. 중소기업의 어음 및 현금성결제 현황

가. 어음결제 현황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무관하게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유통어음이다. 기업어음은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중소기업금융 또는 기업 간 신용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 남발에 따른 연쇄부도나 고의부도, 교섭력 격차에 따른 금융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12)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과제-단기지표금리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한국금융연구원, 2013.0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음대체수단의 이용을 장려해 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의 어음교환 건수는 약 2.3억건, 어음교환 금액은 32,361,710억원에 이르며 2010년 이후 어음교환 건수와 금액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표 II -6 > 지급결제금액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음교환 ¹⁾	6,015,661	5,554,367	4,416,197	3,837,729	3,236,171
지료 ²⁾	174,858	196,749	228,865	239,817	248,538
전자금융 ³⁾	10,621,510	12,281,762	13,043,029	13,779,815	15,189,780
총계	16,812,029	18,032,878	17,688,091	17,857,361	18,674,489

주: 1) 어음교환: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타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과 타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 중 자신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의 정보를 작성하여 서울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임.

2) 지료: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 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등의 지급수단 대신에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임.

3) 전자금융: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자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금융이용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서비스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자료: 금융결제원

<표 II -7 > 지급결제건수 현황

(단위: 천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음교환 ¹⁾	520,986	419,317	327,509	258,385	232,798
지료 ²⁾	1,165,603	1,070,398	1,368,085	1,389,533	1,364,301
전자금융 ³⁾	2,446,407	2,705,854	2,994,066	3,325,459	3,597,389
총계	4,132,996	4,195,569	4,689,660	4,973,377	5,194,488

주: 1) 어음교환: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타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과 타 금융기관이 수납한 어음 중 자신을 지급자로 하는 어음의 정보를 작성하여 서울어음교환소에서 특정한 시각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

2) 지료: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 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등의 지급수단 대신에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

3) 전자금융: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자시스템을 상호연결하여 금융이용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서비스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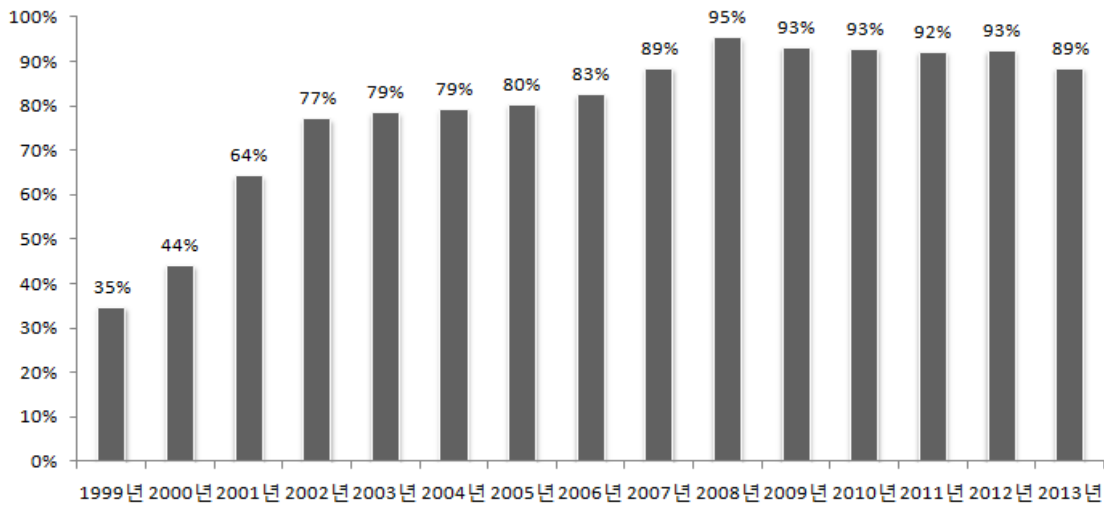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원

나. 현금성결제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성결제 수단으로는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만기 3개월 내외의 어음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를 확산시키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금성결제비율은 1999년 35% 수준이었으나, 2008년 95.3%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다시 88.5%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 -1] 하도급 거래 간 현금성결제 비율 추이



- 주: 1. 실태조사 대상업종: 1999~2005년: 건설·제조분야, 2006~2010년: 제조, 건설, 용역분야, 2011년: 제조업 분야, 2012~2013년: 제조, 건설, 용역 분야
2. 현금성결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또는 현금과 가치가 동일한 수표나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결제수단을 의미하며 어음법에 의해 발행된 어음은 제외함.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자들에게 대하여 법 준수의를 확산시키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3천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조사임. 조사대상업체는 1999년 3천개, 2000년 2만개, 2002년 3만개, 2005년 5만개, 2006년 9만개, 2007년~2010년 10만개, 2011년~2012년 6만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건설, 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2014.

이와 같은 현금성결제 확대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세금 감면, 별점 감면, 과징금 감면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금성결제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2014.12)¹³⁾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판매대금을 ‘현금·수표’로 받은 업체는 67.2%,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네트워크 론 등의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업체는 10.2%, ‘어음’은 22.6%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현금(수표포함)과 현금성결제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8〉 판매대금 수취수단별 결제비중

(단위: %)

구분	현금(수표포함)	현금성결제	어음
2014년	67.2	10.2	22.6
2013년	49.5	27.5	23.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한편, 받을어음 활용에 있어서 어음발행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만기 시까지 소지하며 다음으로 은행할인 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어음 할인 시의 어려움은 없으나 일부 경우에 있어 어음할인료 과다, 할인한도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실태와 자금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 활화를 위한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로서 2003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 제외권고에 따라 차제조사로 전환하여 수행되고 있음.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조사대상기간: 2014. 1. 1 ~ 10. 31
- 분석대상: 종업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개
- 조사내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전망,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용현황 등
- 결과공표주기: 매년

<표 II -9> 받을어음(수취어음) 활용방법

(단위: %)

구분	은행할인	비은행금융 기관할인	사채업자 할인	지급수단으로 활용	만기까지 소지
대기업 발행어음	24.9	0.0	0.0	5.8	69.3
중소기업 발행어음	23.8	0.0	0.0	8.9	67.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표 II -10> 어음할인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애로없음	할인한도부족	어음할인료과다	어음취급기피	담보, 보증서 요구
2014년	75.0	1.6	23.4	0.0	0.0
2013년	66.2	16.6	13.1	2.8	1.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활용하고 있는 현금성결제수단은 대부분 기업구매자금대출이며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수단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결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만기일이 지나서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11> 활용하고 있는 현금성결제수단

(단위: %)

구분	기업구매전용카드 ¹⁾	기업구매자금대출 ²⁾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³⁾	기타
비중	21.6	64.9	10.8	2.7

주: 1.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 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2. 기업구매자금대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일명 B2B대출로 불리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표 II -12〉 현금성결제수단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결제까지 장시간 소요	만기일 지나서 대금지급	높은 금리, 수수료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	기타
비중	24.1	10.3	3.4	58.6	3.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4. 상생결제 제도¹⁴⁾

가. 도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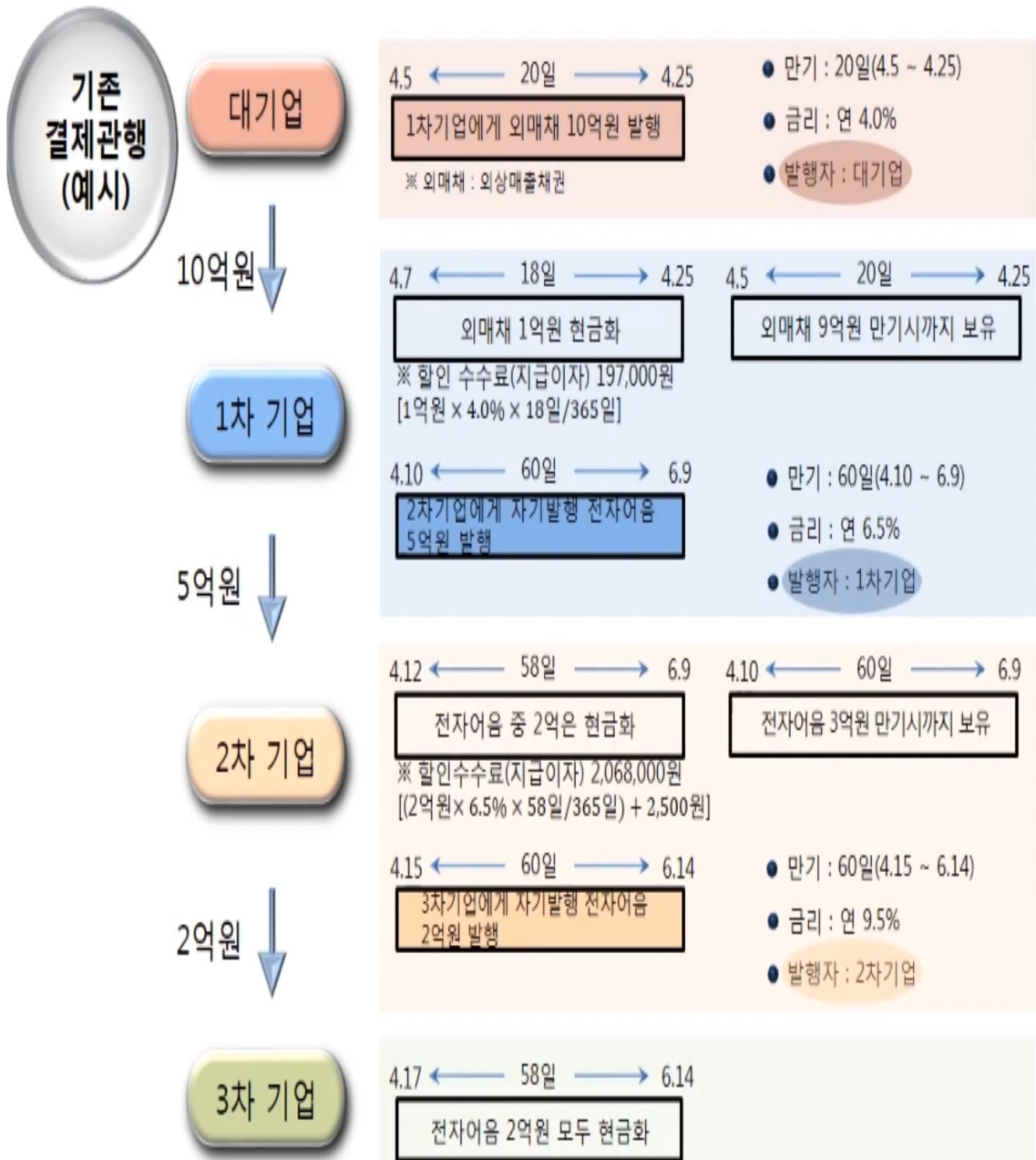
현행 자금결제시스템의 경우, 대기업은 거래대금으로 1차 협력사에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하고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현금화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 전자매출채권을 할인(4~5%)하여 자금을 융통한다. 한편,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자신의 전자매출채권 또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며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로부터 받은 채권이나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은행에서 높은 이율로 할인(6~7%)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3차 협력사 또한 이와 같은 행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높은 할인율(8~15%)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2~3차 협력사는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하여 현금화하거나 어음할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 또한 신용도가 높은 우수 협력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2~3차 협력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문제를 가진다.

또한, 대기업보다 부도율이 더 높은 1~2차 협력사의 도산으로 인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의 자금결제와 관련된 잘못된 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1~3 차 협력사까지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상생결제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

14)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료(산업연구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그림 II -2] 현행 자금결제시스템 흐름도(예시)



자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web/index.do>)

나. 제도의 주요 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 하청업체가 받을 돈)을 은행을 매개로 현금(수표)처럼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의 적기회수를 지

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 하청업체가 받을 돈)을 1~3차 협력사가 현금(수표)처럼 유통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 1~3차 협력사는 대기업 신용도 기준의 저렴한 금리조건으로 채권(납품대금)을 할인받아 자금을 유통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바로 상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채권을 할인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2~3차 협력사의 금융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를 가진다.

둘째, 현재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은 액면금액을 분할해 유통시킬 수 없다. 따라서 채권 소유자는 채권 만기까지 어음을 갖고 있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생결제 제도는 필요한 만큼 자금을 할인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새로운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셋째, 전자매출채권의 잔액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자매출채권의 액면 금액을 잔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만기일자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기업 간 결제기간(계약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만기일을 재지정하여 다시 새로운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해 유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넷째,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을 그대로 유통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3차 협력사들은 대기업 발행 채권에 적용되는 할인금리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섯째,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데 있어 현금결제가 반드시 기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전자매출채권과 같은 현금성결제도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매출채권을 그대로 유통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현금 유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3차 협력사도 전자매출채권에 대해 대기업의 신용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이익이 된다.

여섯째,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할인받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에 따라 1차 협력사는 전자매출채권을 통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생결제 제도는 1~3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확장해서 전자매출채권을 유통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지원을 전제로 영세기업은 물론 소기업까지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주체별 기대효과는 아래의 <표 II-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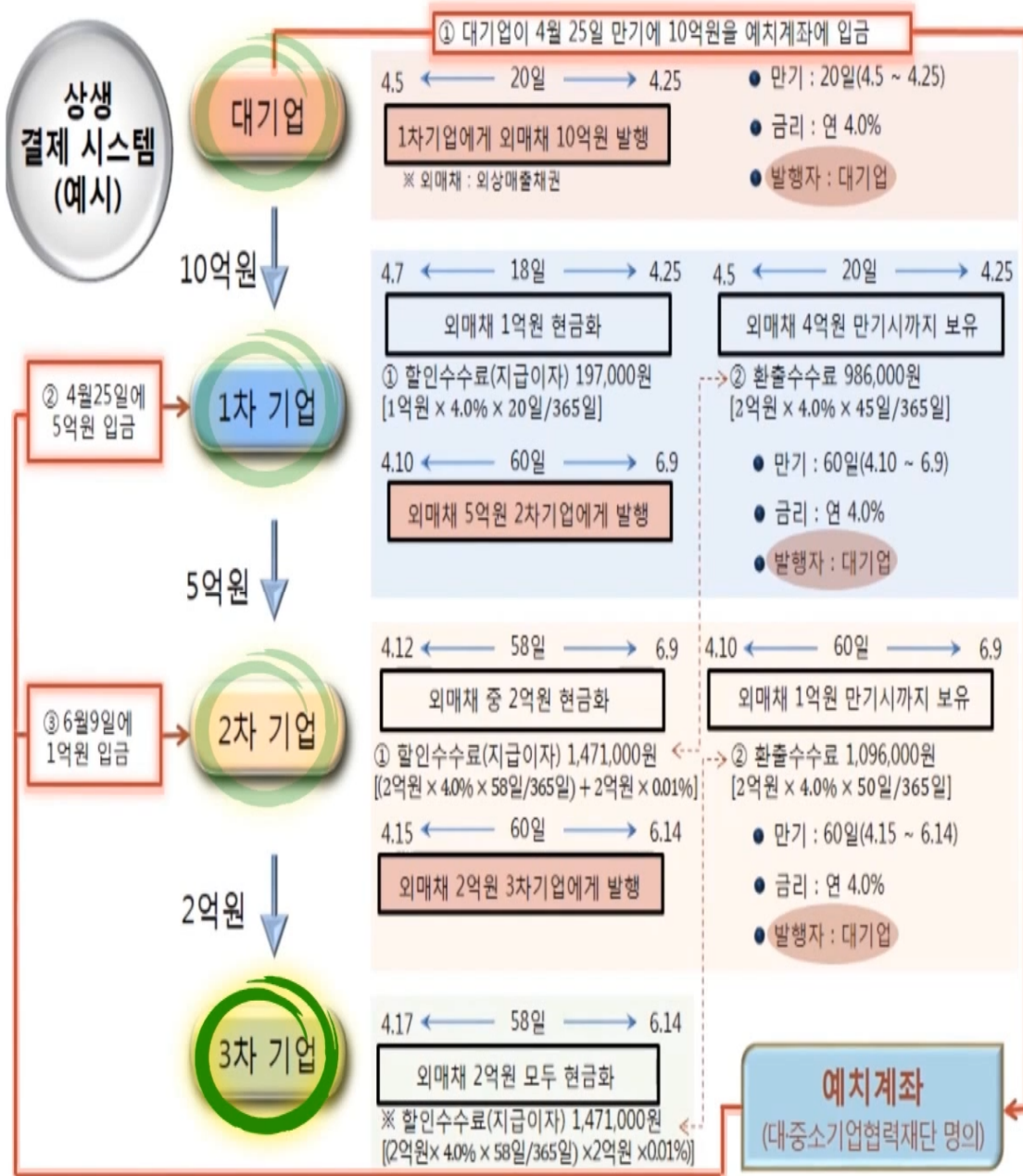
<표 II-13> 주체별 기대효과

대기업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부담 없이 전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대 가능(정부의 평가실적 개선) · 협력사의 대금결제 흐름 파악·관리 · 협력사의 경영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차 협력사의 근본적 애로 해소 · 정부의 자금부담 없이 동반성장 실현 · 사채시장을 통한 어음할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증대
1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차 협력사 경영안정으로 안정적인 자재/부품 수급 가능 · 미사용 만기채권의 활용 · 하위기업의 중도상환시 수수료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대금의 조기회수 · 대기업 신용도로 저리 대출 · 1차 협력사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불식 · 원자재, 부품의 안정적 수급 가능

다. 상생결제 제도 결제 예시

- 대기업이 납품대금 10억원을 전자매출채권으로 1차 협력사에 지급
- 1차 협력사는 10억원 중 납품대금 1억원을 할인하고, 5억원은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 2차 협력사에 발행하며 4억원은 만기까지 소지
- 2차 협력사는 외상매출채권 5억원 중 2억원을 대기업 신용도의 저리로 할인한 후 1억원은 만기까지 소지하며 2억원을 상생매출채권으로 3차 협력사에 발행
- 3차 협력사는 상생매출채권 2억원을 대기업 신용도의 저리로 할인하여 현금화

[그림 II -3] 상생결제 제도 운영 흐름도(예시)



자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web/index.do>)

제2절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사전평가 사례검토

1.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해당 정책이 궁극적으로 사회후생¹⁵⁾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해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행정관리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수행된다. 즉, 경제성 평가는 제한된 자원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관리가 용이한 정책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최적 과세이론은 조세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주목한다. 첫째, 조세에 의한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왜곡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급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조세제도의 단순화(simplicity)를 통해 행정관리비용과 순응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원칙들은 조세정책 평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특법 제142조의 2)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의미한다. 이것은 조세지출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경제활동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특정 집단의 조세지급능력이 아닌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집단의 세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대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수직적 형평성 침해), 수혜자를 제한함으로써 동등 집단에 속한 개인/기업들의 유효세율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수평적 형평성 침해). 나아가 이러한 형평성 침해가 시장신호기능을 왜곡시킬

15) 사회후생의 대리변수로 부, 소득, 혹은 소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수 있고 그 결과 효율성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조세지출은 조세구조의 복잡성이 증가됨으로써 관리비용과 순응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의 단순성 원칙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조세지출이 여러 이유들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후생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에 의한 효율성 침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형평성 증진을 통해 사회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둘째, 외부성을 갖는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혹은 집단 지원을 통해 집적(agglomeration) 혹은 집중(concentration)에 의한 외부효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경제활동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은 시장 실패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자본과 고정적인(immobile)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혹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조세경쟁이라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조세지출은 정책적 필요성 혹은 정책 결정자의 선의(good-will)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자의 의무감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예외적 조세감축을 통해 국가 혹은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의 상대적 장점이 존재한다. 직접지출 제도에 비해 조세지출은 정부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접지출을 통한 지원에 비해 대상자 선별의 복잡성과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관리 비

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직접지출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수단(cost-efficient) 일 수 있다.

2. 조세지출 평가 이슈

조세지출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있어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얼마나 많은 자원이 개인/기업에 투입되었는지 혹은 그 결과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 개입은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순응비용과 관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편익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납세자들이 제출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나아가 이러한 복잡성과 비용은 조세지출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집단이 오히려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다른 집단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혹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 획득비용이 낮음으로써 그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세지출 평가에서 수혜집단(개인/기업)의 세부적 특성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얼마나 많은 투입이 정부 개입을 통해 촉진되었는지 혹은 조세지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재원조달 일부를 대체하였는지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은 민간의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이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지출로 인해 민간의 추가적 투입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제약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조세지출 혜택을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세지출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산출물, 즉, 매출, 이윤, 시장점유율, 특허, 생산성 증가 등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필요하다(output additionality). 조세지출

16) 본문의 평가 이슈는 Caiumi(2011)의 내용을 정리함.. Caiumi(2011)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조세지출에 의한 기업 행태와 전략의 변화(behavioural additionality)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문에서 제외함.

역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혜택을 받은 기업/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출물의 변화(output additionality)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며, 또한 그 결과(outcome)가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난다는 점에서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자료 부족에 기인한다.¹⁷⁾ 조세지출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조세지출을 받는 개인/기업의 세부적인 경제·사회적 특성은 물론, 조세지출에 의한 행태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더욱이 조세지출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납세신고서 등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납세자들의 순응비용과 관리비용은 증가한다는 점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 이루어지는 조세지출 평가는 이용 가능 자료에 따라 질적 혹은 양적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효과성(output) 혹은 효율성(outcome) 평가일 수도 있다. Thöne(2012)은 독일의 경우 자료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 평가에 비해 효과성 평가가 주로 수행됨을 보고하였다.

3.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¹⁸⁾

조세지출은 직접적으로 세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조세지출이 세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용에 비해 조세지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이는 적절한 분석 방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의 비용은 직접적 세수손실, 효율성 손실 및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의 증가로 구성된다. 편익은 조세지출 목적에 맞게 개인 혹은 기업이 받는

17) Department of Finance(2014)에서 재인용됨. “Tax expenditure programme evaluations are very hard to do”(US Legislative Analyst's Office, 2012), “Though evaluation of tax expenditures may be difficult, a more serious problem may be the failure to try”(OECD, 2010b).

18) 본 장의 내용은 Chen(2015)와 Department of Finance(2014)를 정리함

혜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용/편익에 대한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지출에 의한 투입물의 추가성(input additionality)과 산출물의 추가성(output additionality)에 대한 측정이다. 조세지출에 의한 추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조세지출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비용/편익 분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형평성과 제도 설계와 관련된 부분 역시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효율성 손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조세지출을 통한 형평성 증진은 그 자체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형평성 개념의 근거인 ‘납부능력’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소득은 동일하지만 자녀가 1명인 근로자와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납부능력을 비교할 때, 전자의 납부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녀 1명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두 근로자의 납부능력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 증진 자체에 따른 사회적 가치 증가 혹은 형평성 증가로 인한 효율성 증가를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둘째, 조세지출제도 설계 측면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수혜대상(targeting) 그리고 확실성(certainty)은 조세지출의 효율성, 형평성 및 행정관리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¹⁹⁾ 먼저, 조세지출에서 투명성은 정부의 감독, 납세자의 순응 및 조세지출의 용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련 비용을 축소시킨다. 또한 수혜대상 범위가 명확하고 좁을수록 조세지출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왜곡과 그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조세지출의 확실성(certainty)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지속기간과 실질적인 혜택과 관련된 것으로써, 지속기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조세지출 항목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혜택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비용 증대는 물론, 정책목표 달성마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9) 자세한 내용은 Joint Committee on Taxation(2008)의 pp.62-67를 참고하기 바람.

가. 조세지출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²⁰⁾

1) 조세지출의 편익측정

조세지출의 편익 측정에서 추가성(additionality)과 대체성(displacement)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두 개념은 경제학의 사회후생손실(deadweight loss) 개념에서 파생된다. 사회후생손실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경제활동과 정부 개입 이후의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후생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즉, 조세지출로 인한 편익은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을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후생손실이 클수록 조세지출로 인한 편익은 감소할 것이다. 만일 사회후생손실이 100%라면 조세지출의 편익은 없으며, 그 반대 경우도 역시 성립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회후생손실은 부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측정과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성(additionality)의 의미와 관련 측정 방법을 살펴본다. 추가성의 의미는 조세지출이 시행된 이후의 투자(A) 중에서 조세지출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투자(B)를 제외한 투자의 순변화(A-B)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hen(2015)은 중복률(redundancy ratio) 측정을 제안하고 있다. 중복률은 특정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전체 투자 중에서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투자의 비중(B/A)으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지출로 인한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지출로 인한 편익은 적고, 세수손실은 더 커지게 된다.

전위성(displacement)은 조세지출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세지출 대상이 아닌 투자를 줄이고 조세지출 대상이 되는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R&D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고정장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R&D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A지역의 투자 공제를 받기 위해 B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A지역으로 이동하

20) 이하의 내용에서 조세지출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이라고 전제하여 설명함 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주로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조세지출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들 역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례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분석방법론을 설명하는 몇몇 연구들에서도 말하듯이, 투자가 아닌 다른 목적의 조세지출 평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여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지출로 인한 이러한 투자의 대체성이 존재하거나 크다면 조세지출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세수 측면에서도 손실을 의미한다.

이에 Chen(2015)은 전위성에 의한 투자의 크기를 조세지출로 인해 늘어난 순투자 대비 비중(displacement share)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당연히 동 비중이 클수록 효율성과 세수 측면에서 조세지출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한편, Department of Finance(2014)에서는 전위성을 조세지출에 의한 편익 일부가 비수혜집단의 비용을 대가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혜 기업은 경쟁기업의 비용을 대가로 시장점유의 이득을 얻거나,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은 다른 집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수혜집단의 비용을 조세지출 편익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Chen(2015)은 조세지출의 구축효과(crowding out)까지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체성에 의한 투자가 없고 조세지출에 의한 순변화가 존재할지라도, 조세지출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투자가 조세지출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조세지출 대상이 되지 않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세지출의 도입으로 구축됨으로써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축효과는 관측 자체가 어렵고 수량화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들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는 크게 설문조사, 계량기법, 그리고 처리(treatment)효과 분석 등이 있다.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한 방법이지만, 응답자의 거짓응답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전통적인 계량기법은 정교하기는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자료가 필요하다. 한

21) Chen(2015)은 redundancy와 displacement 비중이 0%이라면 조세지출의 비용은 0, redundancy 혹은 displacement 비중 중에 하나라도 100%라면 조세지출의 편익은 0인 극단값을 두고, 현실적으로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날 것임을 지적함. 이러한 지표의 유용성은 투자에 대한 어떤 조세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한 평가 사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편, 처리효과 분석은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control group)과 수혜집단(treatment group)의 행태 혹은 성과의 시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분석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 방법론 역시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²²⁾ 이에 조세지출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세지출의 비용측정

조세지출의 직접적인 비용은 조세지출로 인해 축소되는(혹은 축소가 예상되는) 세수의 기회비용이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이 없었다면 그 세수는 더 효과적인 혹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비용은 일차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측정 및 평가되어야 한다.

Department of Finance(2014)에서는 조세지출의 기회비용을 노동과 공공재원의 기회비용으로 판단하여 각각 측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 이유와 측정 시 주의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기회비용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조세지출로 인해 늘어난 고용이 전적으로 실업이 일대일로 감소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세지출에 의한 고용증가의 일부는 실업의 축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취업자의 이직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선, 조세지출 평가에서 적용하는 노동의 시장가격(임금)은 노동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잠재가격(shadow wage)이어야 한다.²³⁾

둘째, 조세지출의 실질적 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히 감소된 세수 자체

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지출 평가에서 자료 부족은 현재 상황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됨.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은 조세지출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의 평가 작업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제안함.

23) 아일랜드의 경우 노동의 잠재가격에 대한 파라미터값을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in the Public Spending Code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만 고려하여 평가될 수 없다. 조세지출은 그로 인한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경제행위자들에 대한 유인과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²⁴⁾ 조세지출의 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노동과 공공재원의 기회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additional cost). 예를 들어, 조세지출 대상이 되는 투자를 위해 기간시설과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출을 조세지출의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나. 비용/편익 분석의 범위와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조세지출의 직접적 혹은 1차적인 편익과 비용 외에도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하는 것과 같이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차 혹은 간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 역시 전통적인 의미에 따라 한계 소비성향을 이용하거나 혹은 IO를 이용한 승수효과를 통해서 2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다만, Chen(2015)은 조세지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의 승수효과에 특히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손실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정부지출을 축소시켜야한다거나 혹은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조세가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음의 승수효과).²⁵⁾

조세지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범위는 경제적 측면(GDP, 고용, 소비 등)을 중심으로 한다. 직접효과로는 조세지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난 순효과만을 측정해야 한다. 즉,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투자이지만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투자 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손실을 측정한다. 다음은 간접효과로서 직접효과가 산업간 연계관계를 통해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의 변화를 측정한다.

24) 아일랜드에서는 공공재원의 기회비용 측정을 위한 그 잠재가격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값을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in the Public Spending Code에서 제공함.

25) Chen(2015)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연구는 음(-)의 승수효과를 측정함.

4. 조세지출 분석도구

Chen(2015)은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원형적 모형(primitive model)과 포괄적 모형(comprehensive model)으로 분류하였다. 원형적 모형은 직접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 분석모형으로서, 직접적인 세수손실(비용)과 투자의 순변화(편익)를 측정할 수 있다. 포괄적 모형은 CGE 혹은 IO 분석 모형을 지칭한다. 다만, CGE 혹은 IO 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조세자료와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만 근거한 미시 모의실험(micro simulation) 모형을 통한 분석을 제안한다. 특히, Chen(2015)은 조세지출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IO에 근거한 CGE 모형이라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IO는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한 조세지출의 승수효과 추정에 적합하고, CGE는 조세지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변화에 대한 행태적 반응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Chen(2015)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IO와 CGE 모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세지출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활용방법과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자료, 조세자료(국세청)와 소비성향에 근거한 승수효과 산출을 목적으로 한 국민계정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이에 Chen(2015)에서 제안하는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한 3단계 분석 절차와 내용을 소개한다.

Step 1: Estimating the Direct Impact

1. Estimate the total capital investments as reported by the targeted firms that are entitled to the tax incentives.
2. Estimate the total of the “redundant” investments within the target of tax incentives. This estimate can be based on an open-ended survey. (A sample question in such a survey may include: “what’s the main motivation for your investment in our country?”) The “redundant” investments are those that would occur even without tax incentives and hence are “redundant” in relation to the target of tax incentives being assessed.
3. Estimate the “genuine”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size that solely results from the tax incentives. This genuine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siz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and the redundant investments within the target of tax incentives.
4. Estimate the increased jobs and corresponding labour income and taxable profits (i.e., pre-tax profits) associated with the genuine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This estimate

can be made according to firm-based accounting/reporting, and with a reference to the industry-specific capital-labour ratio by international standards if foreign investors are involved. (Note: the “international” reference is particular important if the targeted industry is new to the country.)

5. Estimate the revenue loss corresponding to tax incentives granted to those investors whose investments are accounted as “redundant.” For example,
 - If the tax incentive is an income tax exemption (or reduction), then the revenue loss can b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taxable income arising from the redundant capital investment by the statutory income tax rate (or the gap between the standard and the reduced income tax rates).
 - If the tax incentive is an investment tax credit in proportion to the investment size, then the revenue loss is the product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in percentage) and the size of the redundant investment.

For this step, the sensitivity parameters may include the redundancy ratio, displacement share, and crowding-out probability. A higher level of any of these three parameters will lead to a lower level of direct, indirect and induced impacts as well as a higher level of revenue loss. And vice versa.

Step 2: Estimating the Indirect Impact

1. Estimate the total purchase of capital goods, including both building materials and machinery and equipment) associated with genuine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resulting from Step 1.
2. Estimate the split of the total purchase of capital goods into domestically purchased and imported. Only the domestically purchased capital goods can be counted as the first round of indirect impacts. (This estimate can be made based on firm-based accounting and customs itemized records by importer.)
3.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domestically purchased capital goods in terms of the increased investment and labour inputs required for producing such additional capital goods and the resulting pre-tax profit and labour income. This is also a genuine addition to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and it can be based on accounting and tax filing by existing firms involving the production of these specific capital goods.
4. Estimate the total purchase of material inputs for production, including both raw and processed materials) associated with the genuine additional capital investment resulting from Step 1.
5. Estimate the split of total purchase of material inputs into domestically purchased and imported. Only the domestically purchased materials can be counted as the first round of indirect impact. (This estimate can be made based on firm-based accounting and customs itemized records by importer.)
6.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domestically purchased materials in terms of the increased capital investment and labour inputs required for producing such additional

materials and the resulting profit and labour income. This is also a genuine addition to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and it can be based on accounting and tax filing by existing firms involving the production of these specific types of materials

7. Estimate revenue gains by applying the company and personal income tax rates, respectively, to investment profits and labour income generated by the above additional capital-goods- and material-producing activities.
8. Repeat Steps 1-7 as many times as the industrial linkage indicates and existing data allows, in order to account as thoroughly as possible for the indirect economic and revenue impact of the tax incentives.

For this step of estimation, the sensitivity parameters may include the split of any physical/material inputs between those imported and those domestically purchased. The higher share for the imported inputs will lead to lower indirect and induced impacts. And vice versa.

Step 3: Estimating the Induced Impact

1. Estimate the national economic multiplier based on the national accounts. That is, in the national accounts, the national income (Y) based on the expenditure approach provides a clear share of consumption (C), including both consumers' expenditure and public current spending, within the total income, based on which, the multiplier ($= 1/(1-C/Y)$) can be derived. The ratio of consumption to income is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n economics jargon.
2. Estimate the sum of labour incomes resulting from Steps 1 and 2 above, and subtract from this sum the government revenue loss associated with the redundant capital investment estimated in Step 1. The result is additional disposable income attributable to the tax incentive program before the multiplier effect.
3. Estimate the induced impact by multiplying with the national multiplier and additional disposable income obtained above.

For this step of estimation, the sensitivity parameters may include the propensity to consume, which can change in either direction as the national income changes and the social safety net improves. What is relevant here is that, the higher the propensity to consume, the greater the multiplier and hence the greater the induced impact.)

5. 조세지출 관리 및 평가: 아일랜드 사례²⁶⁾

많은 국가들이 조세지출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조세지출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조세지출 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아일랜드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또한 조세지출의 비용 규모에 따라 분석 수준과 평가시기를 정하고 있다(<표 II-14> 참조).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II -14> 조세지출 평가 유형과 절차: 아일랜드

연간 추정 비용	수준	사전평가	사후평가	분석 시점
100만유로 ~1,000만유로	수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 • 사후평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평가 기준에 의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1,000만유로 ~5,000만유로	수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별 세부 평가 •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방법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 단, 연간비용이 2,5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3년
5,000만유로 초과	수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 비용-편익 분석 •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방법론 제시 • 가능한 경우, 예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 비용-편익 분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가. 사전평가 항목과 내용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평가 이슈는 <표 II-15>와 같고, 각 이슈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6) Department of Finance(2014)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 평가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동 보고서의 reference를 추적·검토했지만 조세지출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 혹은 사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함

<표 II -15> 조세지출 사전평가 내용: 아일랜드

1. 조세지출의 목적이 무엇인가?
2. 시장실패가 존재하는가?
3. 조세지출이 최선의 수단인가?
4. 조세지출 유형별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5. 조세지출 비용은 얼마인가?

첫째, 조세지출의 목적이 명확한지를 평가한다. 정책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조세지출을 도입해야 하는 근거가 현실에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세지출, 직접지출, 혹은 규제와 같은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 나아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시장실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부 개입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 개입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사실,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개입수단은 조세지출 이외에도 직접지출 혹은 규제가 있다. 따라서 다른 수단에 비해 조세지출이 더욱 적절한 개입 수단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새로운 개입수단과 기존의 정책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지출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조세지출이 다른 수단에 비해 우월한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조세지출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조세지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사전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조세지출의 경제적 영향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를 사전평가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27)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장·단점 비교는 <표 II-16> 에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조세지출 비용 규모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사전평가에서도 조세지출의 비용 추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 혹은 추론을 통해 조세지출의 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세수손실법을 통한 비용추정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제도 시행 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전평가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재원의 기회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전평가에서 제도 도입 이후 사후평가를 위한 필요 자료와 평가 방법을 미리 선정함으로써 사후평가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II -16>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장·단점 비교

	Tax Expenditures	Direct Subsidies
Accessibility for beneficiaries	Simple, due to their automatic nature. Can facilitate a greater range of taxpayer choice.	More complex, requiring selection/targeting.
Administrative costs	Low for exemption (can use existing tax data), but can be high for the tax system as a whole due to increased complexity.	Medium level, due to necessity of a selection and allocation system.
Possible abuses	Reduced risk of fraud as already tax compliant though still room for evasion, avoidance & for rent seeking.	Room for arbitrariness and capture of the allocating body.
Flexibility	Works with permanent laws, thereby generating stability but also inertia.	Works with budgets, evaluations and regular reallocation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ir automatic nature is not conducive to control mechanisms or accountability.	Must be approved by legislature as with all governmental expenditures.
Expenditure control	Expenditure usually determined ex post, uncertain & unlimited, which can cause fiscal imbalances. Difficult to calculate.	Spending usually programmed and controlled and limited by budget laws.
Effectiveness	Make use of market allocative knowledge. Additionality/ Incrementality in the targeted action cannot be guaranteed. May finance activity which would have occurred in absence of tax expenditure. (Deadweight)	Risk of displacement of private sector and difficulties in ensuring additionality/ incrementality.
Equity	Regressive by nature. Only those who pay taxes qualify, and those with greatest income benefit the most	Discretionality can provide more equitable access, enhancing targeting on beneficiaries.

자료: Department of Finance(2014)의 <표 3>

나. 사후평가 항목별 특징

조세지출의 사후평가는 정책의 유효성과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주요 평가 이슈는 <표 II-17>과 같으며, 각 이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 -17> 조세지출 사후평가 내용: 아일랜드

1. 조세지출이 여전히 적절한 수단인가?
2. 조세지출의 비용은 얼마인가?
3. 조세지출의 영향은 무엇인가?
4. 조세지출이 효율적인가?

첫째, 제도 도입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지출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만일 다른 정책수단을 도입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조세지출의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이용한 비용추정 방법이다. 만일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 혹은 직접지출등가법(outlay equivalence method)을 통한 비용 추정이 가능하다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의 비용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경우의 비용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세지출로 인해 경제적 행위자의 행태가 변화했는지, 성과가 향상됐는지, 혹은 관련 경제활동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기존에는 해당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새로운 참여자가 있는지, 기존의 활동을 증가시켰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 조세지출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거나 계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짓 응답 혹은 자료 부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조세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에 얼마나 많은 개인/기업이 참여했는지(take-up or participation rate)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가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수혜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후생손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효율성 평가는 조세지출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때 다른 정책수단과의 비용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목적을 갖는 다른 조세수단 혹은 직접지출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 조세지출 비용 규모별 평가 방법

1) 규모 1: 100만~1,000만유로

상대적으로 그 비용 규모가 적은 조세지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전평가에서는 정책의 영향과 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 기준 확립과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정의한다. 또한 ‘규모 1’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규모 2: 1,000만~5,000만유로

‘규모 2’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에서는 포괄적인 비용/편익 분석(full CBA)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사회후생손실 혹은 기회비용 등)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분석 자료와 방법들이 사전평가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사후평가에서는 포괄적인 비용/편익 분석(full CBA)이 수행되어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모든 경제적 비용(사회후생손실, displacement, 기회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적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후생손실을 추정하거나 혹은 특정한 가정을 통한 제한적 상황에서라도 측정될 필요가 있다. 기회비용에 대한 파라미터값은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in the Public Spending Cod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평가 시기는 제도 도입 이후 5년이지만, 연간 비용이 2,500만 유로가 넘는 프로그램은 3년 이후에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규모 3: 5,000만유로 초과

‘규모 3’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은 포괄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사전·사후 평가 단계 모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사전평가에서는 가능하다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과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사후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시행한다.

6.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 평가 사례

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유인 평가

“A Report on the Massachusetts Film Industry Tax Incentives,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Amy, 2013)는 조세지출 평가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Chen(2015)에서 조세지출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적극적으로 추천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Chen(2015)이 제시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개념에 따른 필수 변수들을 충실히 측정/보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효율성 손실 측면에서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생산량 추정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출의 직접효과를 측정한다. 그리고 조세지출의 2차 효과에 대해 일반적인 승수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지출과 세수손실 사이의 음(-)의 승수효과까지 추정하고 있다. 직접효과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고용의 간접효과와 유발효과 및 다른 경제활동들에 미친 영향은 REMI(Regional Economic Models Incorporated)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²⁸⁾

나.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효과성 분석

Caiumi(2011)에서는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 자료, 일반 기업자료, 서베이 자료 등 다양한 기업 자료를 수집하여, 성

28) REMI는 매사추세츠 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해 1975년에 처음 개발된 structural long-term dynamic macroeconomic model이며, IO와 CGE 모형의 요소가 혼합된 모형임. 자세한 모형 설명은 Charney and Vest(2003)를 참고함. 동 문헌은 이외에도 미국 주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4개의 모형들(IMPLAN, TRAIN, STAMP, DRAM)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함.

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관련 조세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nearest neighbour method of matching without replacement)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즉, 공제혜택 수급 여부를 제외한 다른 속성들이 유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정의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출의 효과(처리효과, treatment effect)를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향점수 추정에는 생산구조(자산 대비 노동비용, 자산대비 매출액, 부가가치 대비 영업이익), 재무구조와 기업 소유(현금흐름/총자본, 부채비율, 대출이자, 계열사 여부), 기업규모(매출액 분위) 및 기업연령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이때 주요 설명변수로서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공제혜택으로 인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분(%) 변수들을 사용한다.

동 보고서는 분석에 필요한 혹은 적합한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해 일정 정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의 효과로써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정부개입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물(수입, 이윤, 시장점유율, 특히, 생산성 증가 등등)에 대한 분석으로서, 산출물 추가성(output additionality)을 측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혹은 신용제약하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세지출이 기업의 투자비용을 낮추어주는지, 혹은 높은 비용의 민간금융을 대체하는지(input additionality)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 캐나다의 조세지출 보고서 내 평가보고서 사례

캐나다의 조세지출 보고서는 1999년 이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매년 두 가지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

에는 단순한 현황 통계에 기초한 단순한 평가 혹은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평가 내용은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는 등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세지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가 될 만한 3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1) 2014년 조세지출 보고서: 기부금공제의 비용효과성 평가²⁹⁾

캐나다의 2014년 조세지출 보고서에는 기부공제(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의 가격효과성(price effectiveness)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가격효과성이라는 개념은 기부행위의 세후가격을 낮추는 것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증가에 효과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때, 소득공제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보고서에서 기부금공제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기부금에 의해 발생하는 자선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소득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둘째, 직접지출 혹은 정부의 현물제공에 비해서도 더 효과적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지출에 의한 민간 기부금의 구축효과(crowd-out)와 견인효과(crowd-in effect)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자료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소득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기부금을 수량화하는 데 그침으로써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산출하는 정도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기부금과 공제에 따른 비용(세수 손실법)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직접지출로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한 분석들은 참고할 만하다.

29) 원제는 Evaluation of the Federal Charitable Donation Tax Credit

〈표 II -18〉 기부금 공제의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비교

	A. Tax-assisted finding of charities	B.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charities	C. Difference(A-B)
Amount directly allocated to charitable activities	ΔD	ΔD	-
Administrative costs	$\alpha \cdot \Delta D$	$\alpha^* \cdot \Delta D$	$(\alpha - \alpha^*) \cdot \Delta D$
Economic cost of tax distortions-share attributed to increased funding	$\theta_1 \cdot \gamma \cdot \Delta D$	$\gamma \cdot \Delta D$	$-(1 - \theta_1) \cdot \gamma \cdot \Delta D$
Economic cost of tax distortions-share attributed to windfall gains	$(\theta_1 - \theta_0) \cdot \gamma \cdot D_0$	-	$(\theta_1 - \theta_0) \cdot \gamma \cdot D_0$
Economic cost of tax distortions-additional cost due to government crowd-out	-	$\mu \cdot \gamma \cdot \Delta D$	$-\mu \cdot \gamma \cdot \Delta D$
Fundraising costs	$\rho \cdot \Delta D$	-	$\rho \cdot \Delta D$

여기서 ΔD 는 기부금공제 비용, $\alpha \cdot \Delta D$ 는 기부금공제 관리 비용이며, $\alpha^* \cdot \Delta D$ 는 직접지출 행정 비용을 의미한다. 조세 왜곡, 즉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한다. 기부금공제 비용으로 ΔD 를 발생시키는 공제수준을 θ_1 이라고 하고, 추가적인 세수 1달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적 비용을 γ 라고 할 때, 기부금공제에 따른 세수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총비용은 $\theta_1 \cdot \gamma \cdot \Delta D$ 으로 결정된다.

한편, 기부금공제제도가 없을지라도 기부를 했을 납세자들에게 기부금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theta_1 - \theta_0) \cdot \gamma \cdot D_0$ 로 정의된다. 여기서 θ_0 는 초기 기부금 공제 수준으로서, $(\theta_1 - \theta_0)$ 는 추가적인 기부금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소득공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때, D_0 는 초기 기부금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지출에 따른 구축효과를 $\mu \cdot \gamma \cdot \Delta D$ 로, 자선단체의 기부금모집 비용 $\rho \cdot \Delta D$ 를 각각 정의하여,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의 비용 차이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2) 2014년 조세지출보고서: 지역별 법인세율의 차이³⁰⁾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법인세 외에 지역마다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과 조세경쟁으로 인해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기업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법인세율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의 탄력성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를 검토한다. 즉, 지방정부의 법인세율이 해당 지방정부 내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때 지방정부 간 조세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집단(multi-jurisdictional corporation, potential shifters)과 그렇지 못한 기업 집단(corporate groups, non-shifters)을 구분할 수 있는 미시적인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처리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5-2012년 자료를 이용한 pooled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1차 프로빗 분석을 통해 법인세율이 과세소득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0'보다 큰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2차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2012년 조세지출 보고서: 자본의 가속상각 조세지출³¹⁾

일반적으로 자본투자 비용에 대한 공제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 즉 자본의 연간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자본비용을 할당한다. 이와 관련된 캐나다의 공제제도는 Capital Cost Allowances(CCA)이며, 다만 자본분류에 따라 적용하는 법정 상각률이 다르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특별한 경우 자본의 감가상각율을 높여서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accelerated CCA). 전체적인 이득은 동일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조세이연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accelerated CCA를 활용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 부족과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비용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시험적 측정을 통해 방법론상의 어려움과 필요한 가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30) Interprovincial Tax Planning by Corporate Groups in Canada: A Review of the Evidence

31) Tax Expenditures for Accelerated Deductions of Capital Costs

한편, 조세지출 비용 측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허용되는 최대 CCA 비율 이하의 특정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CCA 분류에 속하는 자본 중에서도 accelerated CCA가 적용될 수 있는 자본과 그렇지 않은 자본이 혼재한다. 셋째, 기업들은 accelerated CCA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공제혜택을 고려하여 특정 자본의 공제혜택 수준을 결정한다. 넷째, 기업들은 서로 다른 분류의 자본들에 대한 공제혜택을 고려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한 보고서의 평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벤치마크 세제로 accelerated CCA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기업 단위의 각 자산별 accelerated CCA 공제혜택에 대한 시계열 자료(A)를 구축하고, CCA만을 적용한 벤치마크 세제에 근거한 가상적인 시계열 자료(B)를 각각 구축한다. 그리고 A와 B의 차이에 각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적용하여 순조세지출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순조세지출액을 당해 연도 투자액과 이전 기간 동안 누적투자액 비율로 할당함으로써, 현재 투자와 과거 투자에 대한 조세지출로 평가한다. 이때 분석의 한계로는 accelerated CCA 이외의 다른 공제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시계열 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조세지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 편익 측면에서 추가성(additionality)과 전위성(displacement)에 대한 측정 문제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선 조세지출이 시행되지 않은 가상적 상황 하에서의 경제활동과 조세지출이 시행된 실제 경제활동을 비교하고, 후자에서 전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혹은 처리효과 분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자는 거짓응답, 후자는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성향점수매칭 등과 같은 최근의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지출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은 최근의 계량기법 사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둘째, 조세지출 비용 측면에서 재원의 기회비용 측정 문제이다. 조세지출로 인한 직접적 비용은 현재 정부가 추계·제공하는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현재의 여건상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조세지출로 인해 감소되는 세수의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대상 조세지출과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그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상의 측정 문제들이 극복된다면, 조세지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기존의 분석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 혹은 GDP 증가임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편익에 대한 측정 범위를 고용 혹은 GDP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앞의 추가성과 대체성을 측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따른 직접효과에 근거하여, IO 혹은 CGE를 활용하여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비용/효과성 분석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비용/효과성 분석 역시 유사한 직접지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분석대상 조세지출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비용/효과성 분석의 가능 여부가 의존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조세지출 수혜집단의 특성과 수혜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현황 분석 역시 조세지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제도 설계 측면, 즉 투명성(transparency), 수혜대상(targeting) 그리고 확실성(certainty)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조세지출 목적에 합당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세지출의 경제적 평가기준인 효율성, 형평성 및 행정관리 비용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조세지출의 형

평성 분석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개인/가구의 조세 관련 행정자료 이용 가능성과 제공되는 정보 수준에 따라 분석의 질(quality)이 의존한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자료에 평가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조세지출 평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변수 선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외국의 어음제도 사례검토³²⁾

1. 미국

미국의 CP(Commercial Paper)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 등이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유통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1800년대 초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어음의 만기는 통상 30일 이내이며 최소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지만 통상 10만 달러 이상으로 발행된다. 어음의 이자지급은 주로 할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어음 상환자금은 어음 신규발행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어음 발행방법은 달러를 통한 간접발행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하는 직접발행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은 주로 간접발행이지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금융회사의 자체 판매망을 이용한 직접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어음시장 규모는 발행잔액 기준 2009년 말 1.1조달러이며 기업자금조달구조에서도 기업부채 잔액 대비 어음발행잔액 비중은 15%(2009년말 기준)이며 만기일은 1~4일인 초단기물 cp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2)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과제」(금융연구원, 2013.2)와 「기업어음시장의 개편방안에 대한 법적 소고」(허항진, 『증권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9)의 내용을 발췌·정리함

2. 일본

일본은 1987년 정부의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의 CP 취급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CP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98년에는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만기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도 CP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CP 발행잔액은 11조엔(2009년 말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달러간 CP 거래의 자금결제는 BOJ-net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대고객 CP 거래는 현금, 수표, 계좌입금 등에 의해 결제된다.

3. 유럽

유로 CP(Euro Commercial Paper)는 유럽금융센터에서 달러를 통해 일반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단기 무보증 약속어음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한편, 유럽의 단기금융시장은 대부분이 국내 위주의 개별적인 금융시장이지만 유로 CP 시장은 유로화 표시 단기금융시장으로서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하다. 유로 CP의 최소발행금액은 50만유로이며 최장만기는 364일 이내 이지만 대부분 30~90일 이내로 발행되고 있고 평균 만기는 74일 수준이다. 아울러, 유로 CP 발행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관행상 대부분 A1/P1 이상의 투자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 CP의 유통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는 주로 할인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결제는 European Clearing System을 통해 가능하다.

4. 영국

영국은 기업에 단기자금 조달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CP 시장과 유로 CP 시장으로 영국 자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물무기명증서 형태의 CP를 도입하였다. CP의 발행기관과 발행통화, 최소발행금액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런던거래소 상장기업이 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2,500만파운드 이상인 기업이거나 동 기업이 전액을 출자한 회사여야 한다. CP 발행은 주로 할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발행조건은 개별 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만기는 30일 이내의 비중이 높다. CP에 대한 신용평가나 대체유동성 공급의 설정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CP 발행기관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 추진상의 쟁점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기업과 6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결제 제도 이용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항목에 포함하여 대기업 주도적인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 조세특례제도 도입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성 분석 시 순편의 추정과 정책성 분석 시 이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조세특례는 도입 이후 현금성결제비율이 90%를 상회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말 일몰된바, 조세특례제도 재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2. 정책성 분석 관련쟁점

본 조사의 대상인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이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2013년 말에 일몰되었던 것을 유사한 형태로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세액공제의 특징은 과거 세액공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세액공제율 수준을 낮추고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급기한 상한을 축소하는 한편, 공제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은 1개를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4월부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문제는 애초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정책수단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성 분석을 수행할 때,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 처리된 세액공제를 유사한 형태로 1년여 만에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추가적인 참여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동 세액공제가 제기된 점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구매기업)과 결제 관행 개선을 통해 수혜를 받는 대상(판매기업)이 상이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세액공제의 사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무엇보다도 납세자(구매기업)의 지급기한 단축 및 어음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의 결제형태 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만큼 유인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해당 세액공제의 성패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급기한별 세액공제율 구조, 세액공제율 수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 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엄밀한 정책성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대상 가운데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결제형태 변화를 추구한 기업에 혹시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수혜율 저하와 함께 사업효과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제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즉, 정책대상인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본 조세특례 도입에 의한 효과로는 첫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어음할인수수료의 감소분, 둘째,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제도 이용으로 인한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로 판단되며 기업의 신용도 제고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금융비용의 감소가 편익이 될 것이다.³³⁾

본 조사에서는 자료구득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순편익 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기업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1차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 증가로부터 4차 하도급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으로 정의한다. 세수감소분³⁴⁾은 본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세수감소분 추정을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정책대상인 중소기업들 중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수와 이들의 현금성결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정사업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 수행 시,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 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본 조사의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바, 경제성 분석의 전제(분석기준연도 및 분석기간 등) 설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일반지침상의 내용을 준용하여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형평성 분석 관련 쟁점

조세특례는 정책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불공정성 또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

33) 구체적인 편익의 개요 및 추정방법은 편익추정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34) 본 절에서는 조세지출로 인한 효율성 손실 비용 및 행정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평가기준으로서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가능하다. 수평적 형평성은 ‘공정성(fairness)’에 가까운 개념이며 수직적 형평성은 ‘분배(justice)’와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세지출의 주요한 목적이 재정적 유인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분배’ 자체가 목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특정 조세지출정책이 세목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 간의 수직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제고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조세특례는 과거와 비교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의 실행안과 현재 개정안 간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정책성 분석



제III장 정책성 분석

본 조사의 대상인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이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2013년 말에 일몰되었던 것을 수정된 형태로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III-1>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조특법 개정안을 토대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특성을 신·구 대비로 비교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 도입되는 세액공제의 특성은 세액공제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대·중소기업 간 공제율 차별화가 없어지는 한편,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급기한 상한이 축소된 점,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 중 5개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네트워크론이 제외되고 상생결제가 추가된다는 점 등이다.³⁵⁾³⁶⁾

35)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 및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① 환어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 ② 판매대금추심외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④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⑤ 구매론: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⑥ 네트워크론: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⑦ 상생결제: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하위 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방법으로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할 수 있는 결제방법(조특법 §7-2① 및 동 조항 개정안).

36)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생결제를 현금성결제 유형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네트워크론은 제외하였음.

〈표 III-1〉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신·구 대비

	과 거(2013년 일몰)	개정안(2016년 도입)
대상 거래	- 중소기업 간 거래 (판매·구매기업 모두 중소기업) - 단, 네트워크론의 경우 판매기업이 중소기업	- 좌동 - 단, 상생결제의 경우 판매기업이 중소기업 ¹⁾
현금성결제 유형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네트워크론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상생결제
공제조건 ²⁾	- 지급기한 ³⁾ : 60일 이내 - 상환청구권 ⁴⁾ : 없음.	- 좌동 - 좌동
공제율 적용금액	- 현금성결제금액 - 어음결제 금액	- 좌동 ⁵⁾
공제율 ⁶⁾	- 지급기한 30일 이내: 중소기업 0.5%, 일반기업 0.4% - 지급기한 31~60일: 0.15%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 지급기한 16~60일: 0.1%

주: 1. 당초 개정안에서는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대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구진과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외한 현금성결제에 적용
 3.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계산(상생결제의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계산)
 4. 카드업자 혹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행사하는 상환청구권을 의미
 5. 당초 개정안에서는 현금성결제금액만을 포함하였으나, 연구진과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과거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현금성결제와 어음결제의 차액으로 변경되었음
 6. 기업별 세액공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및 동 조항 개정안

제1절 정책적 일관성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매기업의 현금성결제 유인을 제공하고자 제기된 조세지출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는데, 본 세액공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상위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들 수 있으며, 동 계획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주요 상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³⁷⁾ 관계를 공고히 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제1조) 200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제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제5조). 한편,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공표할 수 있는데(제15조)³⁸⁾, 이 지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37)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는 위탁기업·수탁기업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매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동의 활동’으로 정의됨(상생협력법§2).

38) 이 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 가능함(동법 §15).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및 적합업종의 합의로출·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0조의2).

「상생협력법」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적 요구사항들도 명시되어 있다.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이후 최대 6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급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어음결제의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제22조)³⁹⁾.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하지 말아야 하는 14개의 행위를 적시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넘기는 행위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제25조). 한편, 이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6조). 끝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7조).

[참고] 「상생협력법」 주요 조항

제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

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도 원사업자에 대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수사항)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를 발췌하여 요약함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상생협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기본계획은 어음 부도율 상승 등으로 인해 2차 이하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3차 협력사 등 영세 중소기업 대상의 동반성장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계획에는 ‘성장사다리 구축’이라는 전략을 위한 이행과제로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및 현금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 제도’ 확산이 명시되어 있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 신용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해주는 장치로서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사가 현금처럼 유통하는 시스템이다. 부도가 가능성이 없고, 저리의 현금성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다. 기본계획은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효과로 ① (협력사 경영개선) 어음의 폐단인 연쇄부도에 따른 하위 단계의 자금흐름 단절을 방지하여 2·3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 기여, ② (지하경제 양성화)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던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은행의 금융을 활용하게 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③ (세수 확대) 결제자금 할인에 따른 은행수익 증가로 세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2·3차 기업의 납품에 따른 대금지급 결제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1차 이하 협력사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성장 확산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과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계획되었으며, 이러한 애초의 계획들이 최근에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로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제4조, 제5조, 제15조, 제20조의2 등),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결제기일 상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수탁기업에 추가 이자 혹은 할인료를 보상해줄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제22조),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세액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제27조). 한편, 최근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는 2·3차 협력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원활한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이 발표되었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액공제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수단 활용의지가 제시되었다.

요약하자면,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 상위계획과의 직접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조사의 대상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정책수단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종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생결제 이외의 여타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특례의 필요성

본 조사의 대상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2000년에 신설되어 2013년 말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된 것을 수정된 형태로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이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1차 이하 협력사의 참여 확대를 유발하기 위한 세액공제 형태의 정책수단을 모색한 끝에 본 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애초의 취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대신 세액공제 재도입의 주요 근거로 여전히 낮은 중소기업 간 현금성결제 비율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은 같은 사업계획서에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일몰의 근거로 제시된 ‘정책목표 달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일몰 처리된 세액공제를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형태로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여건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또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상생결제 제도 도입·확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이 상생결제뿐만 아니라, 과거 세액공제의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현금성결제 유형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상생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어도 법 개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 결제유형을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일몰된 세액공제를 적절한 근거 없이 부활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본 세액공제가 애초의 취지대로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효율적인 추가 정책수단이 되게 하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유형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상생결제를 통한 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특례를 다시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3. 조세특례의 적시성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년부터 동반성장 확산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상생결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적 노력으로 작동된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상생결제 제도 활용도에 대한 가점 반영을 통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는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은 판매기업이다. 따라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협력사들도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판매기업에 대금 결제를 하도록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정부가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획했던 것이다.

40) 과거 세액공제하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 유형이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총 6개였는데, 「조특법 개정안」상의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 유형은 네트워크론이 상생결제로 대체되는 형태로 수정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진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협력업체가 구매자 입장에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⁴¹⁾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에 국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세액공제를 통해 적절한 유인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측면의 고려요소라는 점이다.

4. 여타 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 중복성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은 총 60여 개에 달한다. 이러한 조세지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투자촉진 및 고용촉진을 위한 20여개의 조세특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III-2>이다. 표를 살펴보면 어음결제개선 세액공제와 같이 기업 간 결제 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다른 조세지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여타 조세지출과의 중복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1)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상에 제시된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2달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1차협력사간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규모가 (14,051건, 2조7천억원)인 반면, 협력사 간 상생결제 규모는 1-2차 (899건, 738억원), 2-3차 (24건, 17억원)으로 하위단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음.

<표 III-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2014년 기준)

지원 부문	조세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특례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5.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총 7개 분야에 속한 90여 개의 각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한 것이 <표 III-3>이다. 이 중에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들을 2개 정도 추릴 수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긴급 경영안정 기금’은 재해 피해를 입거나 수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용자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본 세액공제와의 중복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 간 결제 관행과 관련된 지원제도로 특기할 만한 것이 ‘매출채권 보험’이다. 이것은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판매기업에 대해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기준으로 4개의 매출채권보험과 2개의 어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보

협료율은 0.5~5%이고, 가입한도는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30억 원, 어음보험의 경우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판매기업에 대해서만 자금회수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소극적인 재정지원이므로 구매기업의 결제행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같이 구매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결제행태를 변경함으로써 판매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조세지원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정책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2014년 기준)

지원 부문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지원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 신성장 기반 자금 • 긴급 경영안정 기금 • 사업전환 자금 • 투융자 복합금융 자금 •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신용보증 • 중소기업 기술보증 • 매출채권보험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수출 신용보증 • 단기 수출보험
	지자체 자금	• 지자체별 자금(16개 광역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 무역기금 • 수출금융
창업·재창업·사업전환 지원		•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 등 15개 사업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등 9개 사업
판로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등 7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역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등 14개 사업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2015.

제2절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본 절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업목표의 명확성은 개별 사업목표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고,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사업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개별 사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본 사업의 논리모형을 설정하도록 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단계를 거쳐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impact)—중간결과(intermediate outcome), 최종결과(end outcome)—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표 III-4>에 요약되어 있다.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목표는 운영목표(operational objective), 특정목표(specific objective) 및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로 구분된다. 운영목표는 산출로, 특정목표는 중간결과로, 그리고 일반목표는 최종결과로 묘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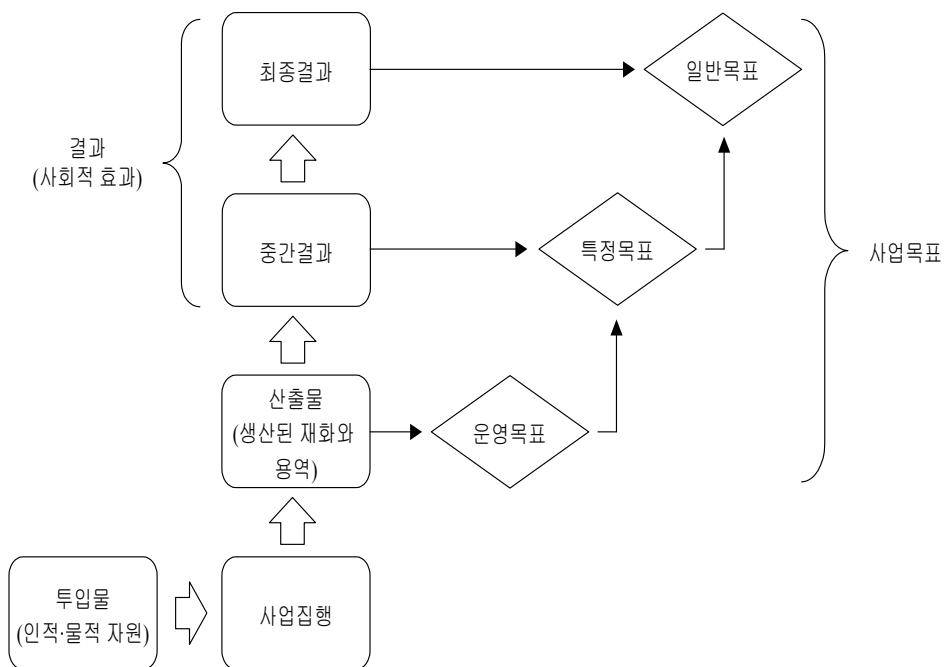
<표 III-4> 정부사업의 성과창출단계 및 사업목표

단 계	설 명	목표
투 입	예산·인력·기타의 자원	-
활 동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업무수행	-
산 출	생산된 재화 및 용역	운영목표
결 과	중간결과	정책대상에 미친 일차적 영향
	최종결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친 장기적 영향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한편, 사업의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는 [그림 III-1]에 묘사된 바와 같이 사업의 투입이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로 이어지는 고리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의 개입논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사업의 투입,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운영목표,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III-1] 사업의 개입논리



자료 : European Commission(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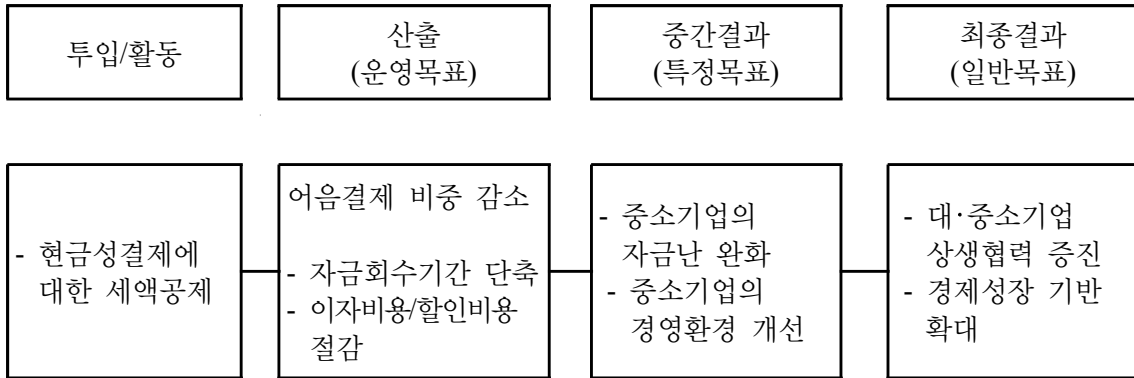
본 조세특례에 대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2013년에 정책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지만,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우려되므로⁴²⁾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해주는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현실을 세액공제의 도입목적·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의 전략목표가 ‘중소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이고 이를 위한 성과목표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 확

42) 이에 대한 근거로 하도급거래 현금성결제 비율(2014년 기준)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중소기업 간 결제비율은 7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꼽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산'이라는 것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기본 사업목표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이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전제하고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사업의 개입논리 및 기본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판단을 위한 논리모형(logic model)을 설정해보도록 하자. 논리모형은 활동 및 산출이 중간결과와 최종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논리모형을 표현하면 [그림 III-2]와 같다.]와 같다

[그림 III-2]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논리모형



논리모형에 따르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투입/활동은 현금성결제를 통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한 구매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산출(운영목표)은 기업 간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와 이로 인한 판매기업의 자금회수기간 단축 및 이자비용/할인비용 절감이다. 중간결과(특정목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최종결과(일반목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사업의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투입으로부터 일반목표까지의 전개 흐름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해 보자. 우선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투입/활동(세액공제)의 혜택은 현금성결

제를 통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한 구매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산출(운영목표) 및 중간결과(특정목표)에 해당하는 혜택(자금회수기간 단축, 이자비용/할인비용 감소, 자금난 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은 현금성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판매기업에 전적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논리모형을 살펴보면, 산출-중간결과-최종결과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는 판매기업 입장에서의 자금회수기간 단축과 이자비용 및 할인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금회수기간 단축과 이자비용 및 할인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판매 부진’ 다음으로 중요한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문항 2-1)도 이 같은 인과관계가 타당함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경영환경 개선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예측이다.

그러나 논리모형의 첫 번째 연결고리인 투입/활동-산출(운영목표)의 논리적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첫 번째 전개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 간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구매기업 입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과연 지급기한이 긴 어음결제 대신 지급기한이 짧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론이 힘들기 때문이다. 구매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가 과연 기업들의 어음결제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현금 및 현금성결제 비중은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입장에서 각각 82.7% 및 90.0%로 나타나고 있는데(문항 6 및 문항 9), 이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비중(76%)을 상당 수준 상회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현금 및 현금성결제 비중 증가의 여지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95.7%) 과거의 세액공제 혜택이 현금성결제 비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문항 13), 세액공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소수의 중소기업들이(19.3%)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문항 17). 세액공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11.3%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인한 현금성결제 비중의 추가 증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가 시행되었던 2013년과 일몰된 이후인 2014년의 결제행태를 비교해 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문항 14). 이는 세액공제로 인한 현금성결제 비중의 증가가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가 아닌 현금결제 비중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논리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첫 번째 연결고리인 투입/활동(세액공제)과 산출(어음결제 비중 감소) 간의 전개흐름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진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절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1. 정책대상의 명확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들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II-5>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조세지원 고유의 특성에 의거하여 여타 조세특례들과 마찬가지로 정책대상의 명확성을 자동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기준(2015년 기준)

업종	규모 기준 ¹⁾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제한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출액 ≤ 400~ 1,500억원³⁾ - 자산총액 < 5,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 관계기업의 경우 보다 높은 매출액 상한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발생연도 + 3년 - 유예기간 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 1. 종전에는 규모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등도 포함되었으나 2015년부터 간소화되었음
 2.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등의 소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3. 업종별로 매출액 상한이 차별화되어 있음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정책대상의 적절성

전술한 바와 같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세액공제의 사업목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책대상 설정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액공제의 혜택은 실제로 법인세(혹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할 만큼의 사정도 여의치 않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51만 8천개의 전체 법인 중에서 양(+)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법인의 수는 38만 8천개(65.5%)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중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임을 암시한다. 즉,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표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음제도개

선 세액공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지원 전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견기업 또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견기업을 정책대상의 일부로 선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10대 대기업과 6개 시중은행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탄생되었다. 정부와의 MOU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산정·발표하는 동반성장 지수에 상생결제제도 참여도를 반영하는 것 등은 이러한 자율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마련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인 셈인데, 이러한 장치가 효과를 발휘할 것 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상생결제제도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대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해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다시 외상매출채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1차 협력사의 상당 부분이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확실한 유인장치를 통해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제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상생결제의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정책대상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정책대상 가운데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개연성을 갖고 있다.

먼저 조세지원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현금성결제금액 - 어음결제금액’으로

정해진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수혜율이 낮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금성결제 비중이 어음결제 비중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기업의 경우, 현금성결제 비중을 늘리더라도 이것이 여전히 어음결제 비중보다 낮다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수혜율의 저하가 결국 사업효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1.7%에 불과하고(문항 1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이보다 낮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12). 또한 최근에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2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문항 15).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2가지 제도적 특성 이외에도 정책대상의 인식결여 때문에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유형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실제로 세제지원을 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자료조작 혹은 세무관련 서류 허위 작성·보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 절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결제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부적절한 정책대상이 공제혜택을 받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제4절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1.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특법 등 관련 세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의 명확성은 자동적으로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대상, 공제대상 현금성결제 유형, 공제요건, 공제율, 공제율 적용금액 등 각각의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표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총 6개)과 유형별 세액공제 요건(지급기한 및 상환청구권 여부)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⁴³⁾ 한편, 세액공제율 또한 지급기한별로 차등화 되어 있으며(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경우 0.2%, 16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0.1%), 세액공제율이 곱해지는 금액도 관련 조항에 의해 어음결제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성결제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⁴⁴⁾ 따라서 구성요소의 명확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성과지표가 중소기업 현금성결

43) 현금성결제 유형별 세액공제 요건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및 ② 환어음 및 결제대금추심회피로서 결제한 금액(조건 없음),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④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⑤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⑥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구매기업(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조특법 §7-2①).

44)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애초의 「조특법 개정안」에 의하면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현금성결제금액 전체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연구진과의 협의 이후 과거 유사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성결제금액에서 어음결제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변경되었음.

제 비중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설정되어 있다. 주무부처가 밝힌 현금성결제 비중의 목표치가 90%인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현금성결제 비중은 현금결제 비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유형에 현금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현금결제 비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금성결제 비중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현금결제 비중이 같은 정도로 감소한다면 어음결제 비중은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성결제가 어음결제뿐만 아니라 현금결제와도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기존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일몰종료 전후로 한(2013년 및 2014년) 기업들의 결제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문항 14), 현금성결제가 어음결제보다 오히려 현금결제와 더 강한 대체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⁴⁵⁾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사업효과는 현금성결제 비중 자체의 증가보다는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 즉 현금결제 비중과 현금성결제 비중의 합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⁴⁶⁾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제유형간 관계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부처가 설정한 성과지표는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성과지표만으로 충분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지급기한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별하고 있다. 가급적 지급기한이 짧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급기한이 짧을수록 판매기업의 자금난 완화 정도가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본 세액공제의 기본 사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현금결제 + 현금성결제) 비중뿐만 아니라, 현금성결제의 지급기한 또한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5)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시행되었던 2013년의 결제유형별 비중(현금, 현금성, 어음)이 각각 77.7%, 11.4% 및 10.1%로 나타났고, 일몰 이후인 2014년에는 각각 78.2%, 10.7% 및 10.2%로 나타났음.

46) 기업간 결제방식은 크게 현금결제, 현금성결제, 그리고 어음결제,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3.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전술한 바와 같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구매기업)과 사업효과를 통해 수혜를 받는 대상(판매기업)이 상이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액공제의 사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무엇보다도 납세자(구매기업)의 지급기한 단축 및 어음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의 결제형태 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만큼 유인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세액공제율의 구조

납세자에 대한 유인장치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세액공제율을 검토해 보자. <표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은 과거 세액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급기한도 과거에 비해 짧게 설계되어 있다. 세액공제율의 구조를 과거·신규 대비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설명한 대로 기존 세액공제에 비해 신규 세액공제하에서 구간별 지급기한 상한 차이가 늘어난 반면(30일 → 45일), 공제율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0.35%p → 0.1%p).

$$\text{세액공제율} = \begin{cases} t_1, & d \leq d_1 \\ t_2, & d_1 < d \leq d_2, \quad t_1 > t_2, \quad d_1 < d_2 \end{cases} \quad (1)$$

d : 지급기한, t_1, t_2 : 세액공제율, d_1, d_2 : 지급기한 상한.

과거 세액공제: $t_1 = 0.5\%$, $t_2 = 0.15\%$, $d_1 = 30$, $d_2 = 60$

신규 세액공제: $t_1 = 0.2\%$, $t_2 = 0.1\%$, $d_1 = 15$, $d_2 = 60$

먼저 세액공제율 구조가 내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 내부 일관성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급기한을 가급적 줄일 만큼 공제율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식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식의 좌변은 지급기한을 단축함에 따른 구매기업의 이자비용 증가를 나타내고, 우변은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구매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증가를 나타낸다.

$$\frac{(d_2 - d_1)r_b}{365} \leq t_1 - t_2, \quad r_b: \text{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자율} \quad (2)$$

→ 과거 세액공제: $r_b \leq 4.26\%$, 신규 세액공제: $r_b \leq 0.81\%$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세액공제하에서는 자금조달 연이자율이 4.26% 이하인 구매기업에 대해 지급기한 단축유인이 작동되는 반면, 신규 세액공제하에서는 자금조달 연이자율이 0.81% 이하인 구매기업에 대해서만 지급기한 단축유인이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규 세액공제하에서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매기업이 이론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신규 세액공제에서는 지급기한 상한의 차이(45일)가 세액공제율의 차이(0.1%p)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설계됨에 따라, 혹은 세액공제율 차이가 지급상한 차이에 비해 지나치게 작게 설계됨에 따라 구매기업 입장에서 지급기한을 단축할 유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공제율 수준 자체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구매기업 입장에서 지급기한이 긴 어음결제 대신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현금성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려면 식 (3)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식 (3)의 좌변은 어음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함에 따른 구매기업의 이자비용 증가를 나타내고, 우변은 결제형태 전환에 따른 구매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증가를 나타낸다. 어음결제 지급기한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평균값인 80일로 가정하자(문항 6)47).

$$\frac{(80 - 60)r_b}{365} = t_2, \quad r_b: \text{구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자율} \quad (3)$$

→ 과거 세액공제: $r_b = 2.74\%$, 신규 세액공제: $r_b = 1.83\%$

47)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음결제 기한 전체 평균값은 77일이고, 세액공제 도입시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값은 80일임.

위의 식에 나타난 바대로 과거 세액공제 하에서는 자금조달 연이자율이 2.74% 이하인 구매기업에 대해 결제형태 전환유인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규 세액공제 하에서 구매기업으로 하여금 어음결제 방식에서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하려면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자율이 1.83%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급기한 구간별 상한의 차이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고 세액공제율 수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정해진 결과, 구매기업의 자발적 지급기한 단축 및 결제형태 전환을 위한 유인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⁸⁾

2) 세액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하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현금성결제금액에서 어음결제 금액을 차감한 값에 지급기한별 세액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을 2가지 결제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한 것은 현금성결제 유인을 보다 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7억원, 어음결제 방식으로 3억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어떤 구매기업이 현금성결제금액 규모를 8억원으로 증가시키고 어음결제금액 규모를 2억원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급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자. 이때 해당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2(4)억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6)억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현금성결제금액(증가분)에만 공제율을 곱한 경우의 세액공제액 증가분보다 2배 큰 값

48) 거래당사자인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의 자발적 협상(Coase theorem)을 전제할 경우, 지급기한 단축을 위해 판매기업은 자신의 이자비용 절감분에 상응하는 대금할인을 구매기업에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판매기업의 자금조달 연이자율이 5%라면 지급기한 20일 단축을 위해 구매기업에 0.27%의 할인을 제시할 것임. 이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할인을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구매기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세액공제 혜택 전부가 구매기업이 아닌 판매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문제는 이 같은 해석 하에서는 구매기업 결제행태에 대한 유인제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임.

이다. 이와 같이 현금성결제금액 규모가 어음결제금액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2배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음결제 규모 감소를 통해 현금성결제 규모를 늘리면 현금결제 규모 감소를 통해 현금성결제 규모를 늘리는 경우보다 2배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유인설계는 어음결제 비중 감소라는 세액공제 본연의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기업, 즉 현금성결제금액 규모가 어음결제금액 규모보다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어음결제 방식으로 7억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던 기업의 경우, 어음결제 규모를 2억원 줄이는 동시에 현금성결제 규모를 2억원 늘리는 경우에도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이 0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⁴⁹⁾⁵⁰⁾ 이러한 유형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반하는 모습으로 제공될 개연성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납세자-비납세자 간의 형평성 저하라는 세액공제 본연의 한계에 더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 저하마저 초래하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3) 세액공제 총액상한

어음제도 세액공제는 기업별 세액공제 총액이 해당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소득세의 10%를 넘지 못하게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총액상한으로 인해 거래규모에 비해 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9)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식 (3)의 우변이 $2t_2$ 로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식 (3)의 우변이 0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두 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 유인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작동함.

50) 만일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이 현금성결제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2억 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값만큼 증가하게 됨.

4) 소결

이상과 같이 세액공제율 수준 및 구조를 살펴본 결과, <표 III-6>에 정리된 바와 같이 어음제도 세액공제는 납세자(구매기업)의 행태 변화에 대해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현금성결제금액과 어음결제금액의 차액으로 정의됨에 따라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이 기업별 결제 관행 특성에 따라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금성결제 비중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유인이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액공제 총액에 대한 상한이 주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약하게 작용하는 유인이 그나마 제대로 시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표 III-6>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하에서의 납세자(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

납세자의 행태변화	과거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	신규 세액공제의 특징
어음결제 → 현금성결제 ¹⁾	$r_b \leq 2.74\%$	$r_b \leq 1.83\%$	공제율 수준이 낮음
지급기한 단축 ²⁾	$r_b \leq 4.26\%$	$r_b \leq 0.81\%$	지급기한 상한 차이가 크고, 공제율 차이는 적음

주: 1) 현금성결제 규모가 어음결제 규모보다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자율 상한이 2배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연이율이 0으로 감소

2) 과거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30일, 신규 세액공제의 경우 60일 → 15일

이러한 이론적 결함과 함께 과거 세액공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업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신규 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등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면 어음제도 세액공제의 사업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제율 수준을 높이고 지급기한 상한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혹은 공제액 상한을 없앴으로써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요소 설계 변경을 통해 유인구조를 개선할 경우 사업효과 제고와 함께 사업비용 증가 또한 수반되므로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혹은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4. 조세왜곡 가능성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 6개 유형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어음결제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은 채,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조세왜곡의 가능성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존 세액공제가 일몰되기 이전인 2013년도의 결제행태와 일몰 이후인 2014년도의 결제행태에 관한 문항 14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현금결제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현금성결제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⁵¹⁾ 오직 2개 연도만에 대한 설문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구매기업의 결제유형 선택에 대한 왜곡을 초래한 결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보다는 오히려 현금결제 비중 감소를 촉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실제로 사업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불가피하게 상실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III-7>이다.

<표 III-7>기업의 행태변화 유형별 사업효과 달성 여부

세액공제 혜택여부	기업의 행태변화	사업효과 (어음결제 비중 감소)
○	어음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구현
	현금결제 비중↓, 현금성결제 비중↑	사업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	× (현금성결제 비중 < 어음결제 비중)	사업효과 상실 (제도적 요인)
	× (비납세자: 세액공제 혜택 없음)	사업효과 상실 (태생적 한계)

51) 각주 38 참조.

제5절 소결

이상에서 수행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III-8>과 같다. 먼저 정책적 일관성 분야를 살펴본 결과, 연구진은 상생결제 제도와 상관없는 여타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는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가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유인장치를 굳이 세액공제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시성 또한 크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조세지원 및 재정사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유사한 형태의 세액공제가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세액공제의 정책성 일관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 논리모형에서 투입/활동-산출(운영목표) 전개흐름의 논리적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대상의 명확성은 조세특례 고유의 특성 덕택에 충분히 확보되고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대상이 설정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 및 소득세 비납부 대상 기업이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결제형태 변화를 수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는 조세지원의 태생적 한계, 과거 유사 세액공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뿐더러 사업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수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분야를 살펴본 결과, 조세지원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요소의 명확성은 확보되고 있으나, 지급기한과 관련한 추가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공제율지급기한과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등의 주요 구성요소가 구매기업에 대한 유인제공이 상당히 부적절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효과에 부합하지 않은 결제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사업효과에 부합하는 결제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못할 개연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조세 왜곡 가능성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정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정책적 타당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8> 정책성 분석결과

분 야	세부 기준	판단 근거
정책적 일관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상생결제 제도와 상관없는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조세특례의 필요성·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조세특례의 필요성	
	조세특례의 적시성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 유사한 조세특례 혹은 재정사업 없음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
	사업목표의 적절성	- 투입/활동-산출(운용목표) 전개흐름의 논리적 연결성이 약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단, 대·중소기업 공제율 차등화 필요).
	정책대상인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 조세지원 고유의 한계, 과거 사업효과 및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
	정책대상이 아닌 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가능성	- 현금결제를 현금성결제로 대체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게 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구성요소의 명확성	- 공제대상 결제유형, 공제율/지급기한,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등,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성과지표의 적절성	- 현금성결제(현금 포함) 비중: 적절 - 지급기한 관련 성과지표 추가 필요
	유인제공의 적절성	- 공제율/지급기한, 공제율 적용대상 금액 및 공제총액 상한: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 제공이 매우 약하도록 설계된 상태
	조세왜곡 가능성	- 현금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 어음결제 비중 감소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태생적 한계: 사각지대(비납세 기업) 존재

IV . 경제성 분석



제Ⅳ장 경제성 분석

본 조세특례는 2013년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7조의 2를 수정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제출된 개정안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는 2013년 말에 일몰됨에 따라 현재는 법적 효력이 상실된 조항으로서, 중소기업들은 2014년도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는 본 조항으로 인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도의 중소기업구매대금 결제행태 비교·분석을 통해 조세특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자료 구득의 제약으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조세특례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된 하도급 단계별로 분석대상을 1차, 2차, 3차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하도급 단계별 분석대상 수는 각각 150개, 75개, 75개로 선택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추구하였다.

제1절 개요

1. 기본전제

본 조사에서는 조세특례 도입의 효과를 다음의 세 가지 편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어음할인수수료의 감소, 둘째,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제도 이용 확산으로 인한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제 증가로 인한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효과로서 기업의 신용도 제고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이를 편익으로 볼 수 있다.⁵²⁾

52) 구체적인 편익의 개요 및 추정방법은 편익추정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한편, 본 조세특례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편익의 추가성(additionality) 및 전위성(displacement)일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자료구득의 제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거짓응답에 의한 편익의 상향편의(upwar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의향을 보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 아울러, 상술된 세 가지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KDI가 보유하고 있는 KIS-DB의 기업회계자료를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⁵³⁾ 본 조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300개 설문대상 가운데 2013년 회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193개로 확인되었고, 그 중 66개 기업(34.2%)만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1차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 증가로부터 4차 하도급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2. 설문조사의 개요 및 주요결과

가. 설문조사의 개요

본 조사에서는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대상은 대기업과 연계된 하도급 단계별로 1차, 2차, 3차 기업을 각각 150개, 75개, 75개로 구분하여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아울러 자세한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의 <표 IV-1>과 같다.

53) KIS-DB는 신용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 비외감기업의 회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표 IV-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및 표본	• 조사대상: 한국신용평가 기업체 자료에서 종업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하도급 중소제조업체
	• 표본: 1차 하도급(150개), 2차 하도급(75개), 3차 하도급(75개)
조사방법 및 수행	• 조사방법: 전화조사를 통해 하도급 단계(1차, 2차, 3차)를 조사한 후 하도급 단계 할당에 맞춰 조사원이 각 기업체 재무담당자를 면대면(face to face) 조사
	• 조사진행 및 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설문조사일정	• 2015.04.20~2015.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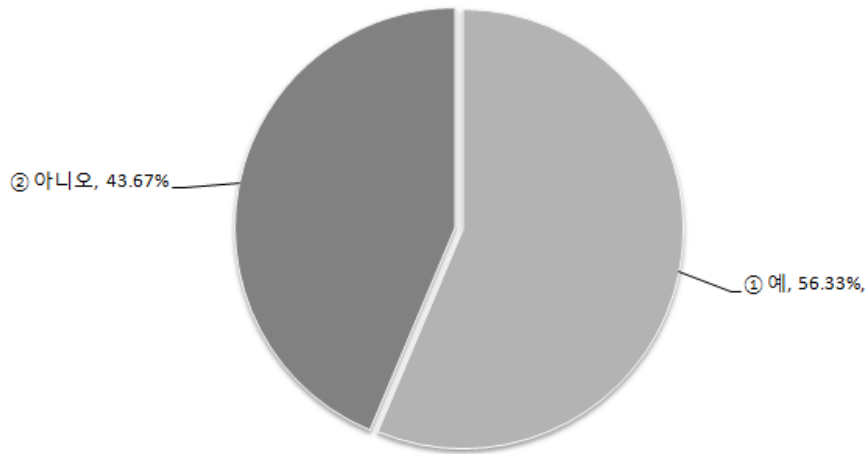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결과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업경영 및 결제수단 현황에 대한 조사와 기존 세액공제와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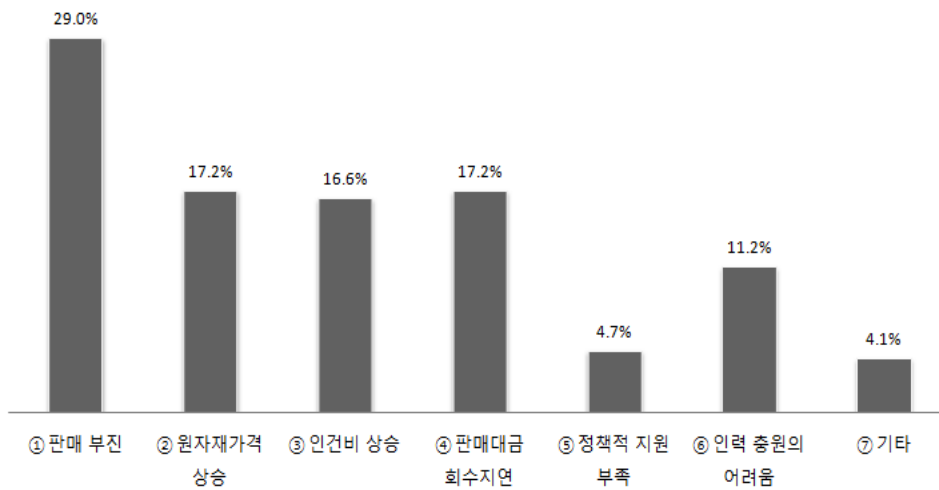
1) 기업경영 현황

기업경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6%는 경영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판매 부진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판대매금 회수지연 순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1] 경영상의 어려움 유무



[그림 IV-2] 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2) 결제수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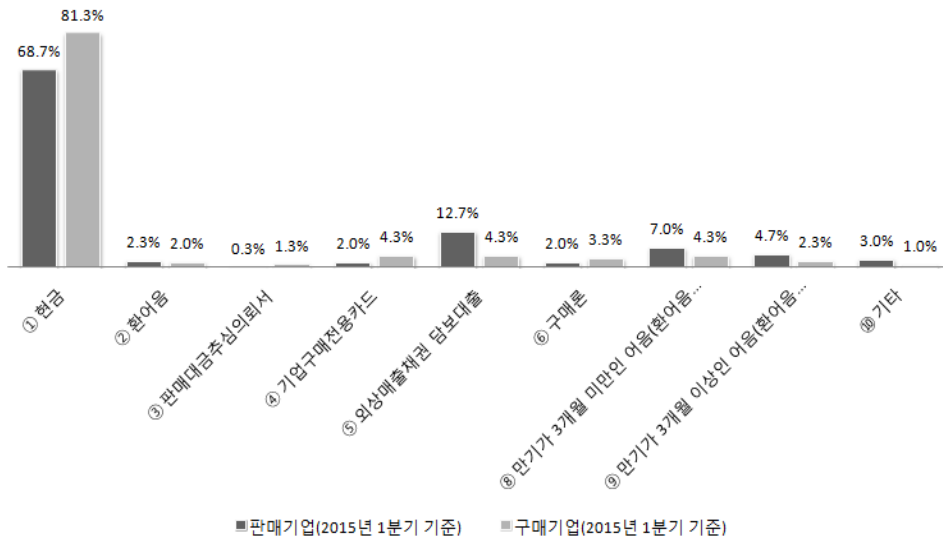
기업은 하도급 관계에 따라 구매기업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판매기업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입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결제수단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수단별 지급결제 현황에 있어서는 판매·구매 기업의 입장에 대한 구분 없이 대부분 현금 위주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매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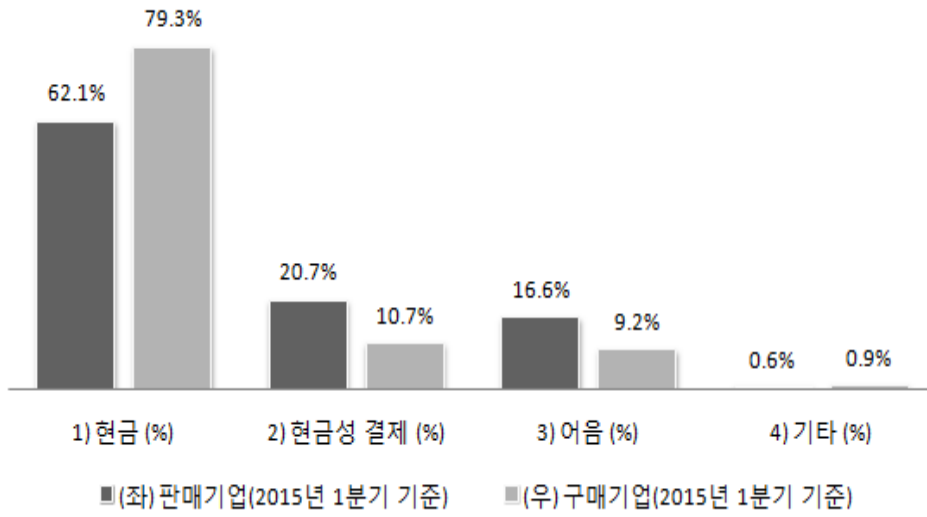
의 경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비중이 9%p 높았다. 아울러, 결제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에 있어서도 현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현금성결제와 어음 순으로 나타났다.

수취어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은행할인을 통해 어음을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만기까지 소진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성결제수단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환어음 등의 방식에 의한 현금성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음의 경우,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도 처리되어 각종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은행대출의 일종으로서 만기가 지나더라도 연체로 처리되므로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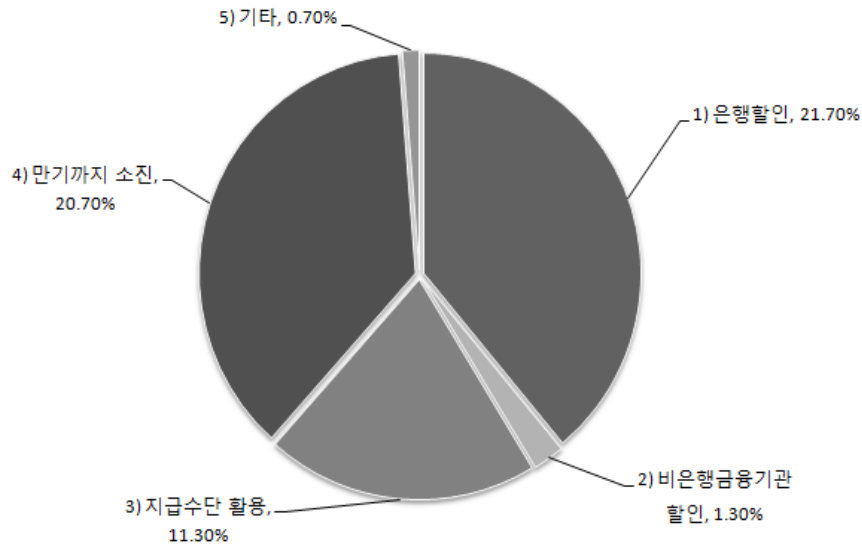
[그림 IV-3] 수단별 지급결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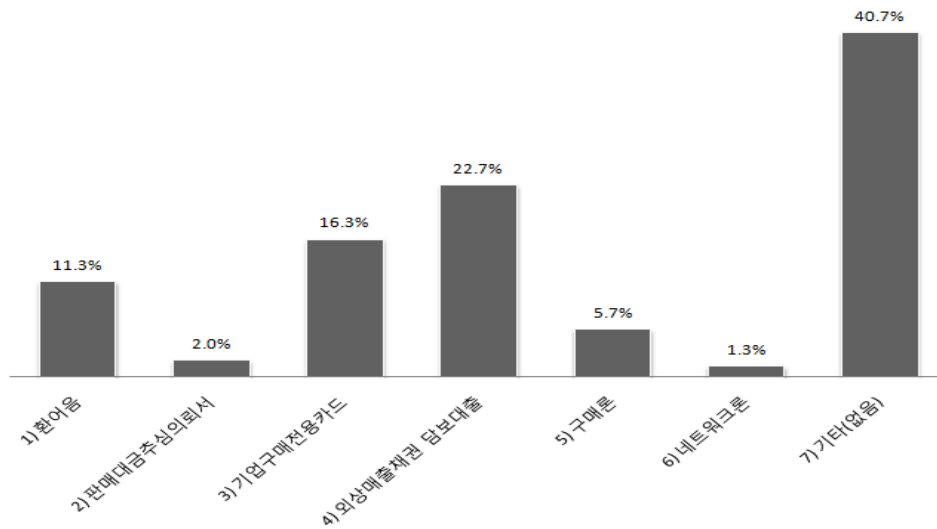
[그림 IV-4] 결제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



[그림 IV-5] 수취어음의 활용



[그림 IV-6] 구매기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현금성결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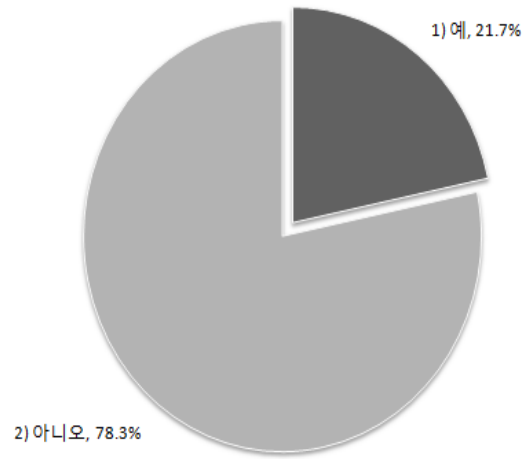


3) 기존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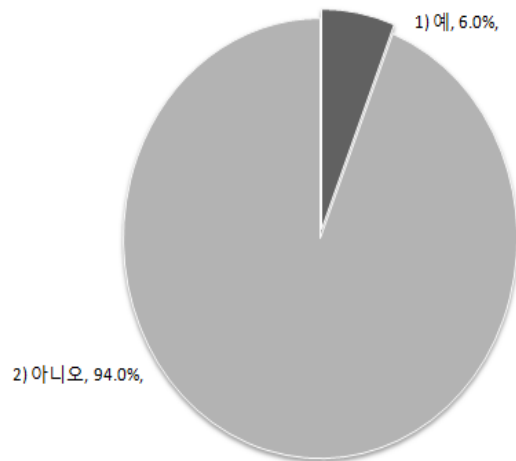
본 조세특례는 2010년에 도입되어 2013년 말에 일몰이 도래된 제도로서 기존 제도의 활용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기존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 6%의 기업만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특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던 2013년과 비교하여 일몰 이후의 구매기업으로서 판매기업에 결제한 자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성결제 비중의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현금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현금성결제수단 활용 확대에 있어 본 조세특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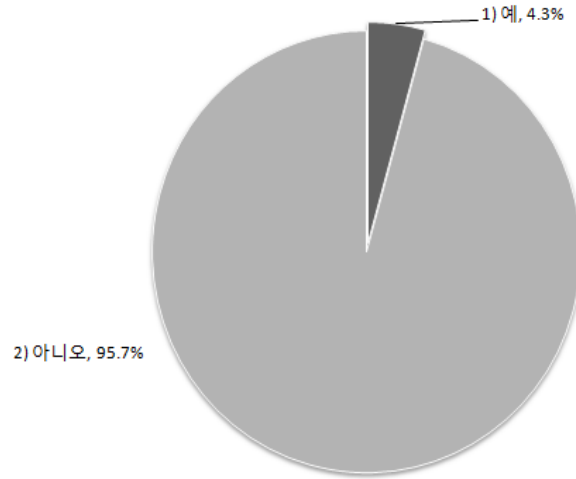
[그림 IV-7]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림 IV-8] 2013년 일몰된 조세특례 수혜 여부



[그림 IV-9] 조세특례에 따른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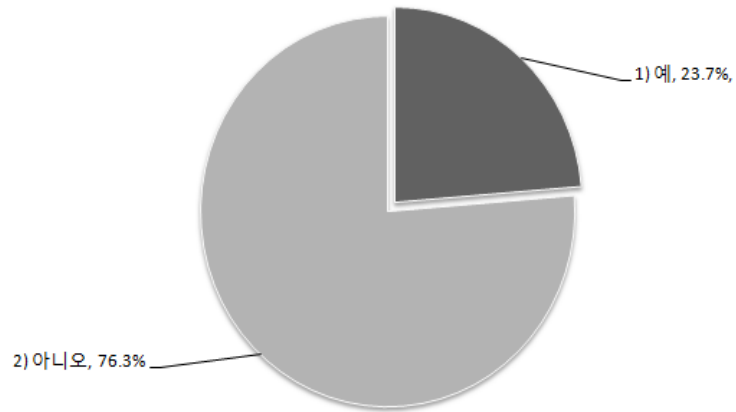
4) 새로운 세액공제제도

기존의 조세특례와 비교하여 본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사항은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던 네트워크론이 상생결제제도로 변경되어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 및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수준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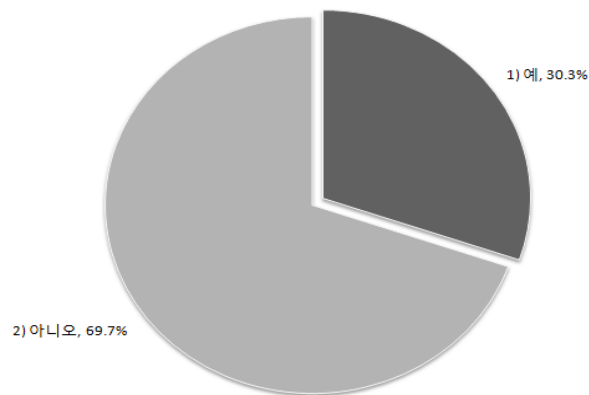
먼저, 상생결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약 24%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초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제도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지만, 향후 제도에 대한 홍보 여부에 따라 인지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응답자의 18%는 조세특례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11%만이 현금성결제 비중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세특례 도입과 무관하게 현금성결제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응답자들은 하도급업체 간의 상생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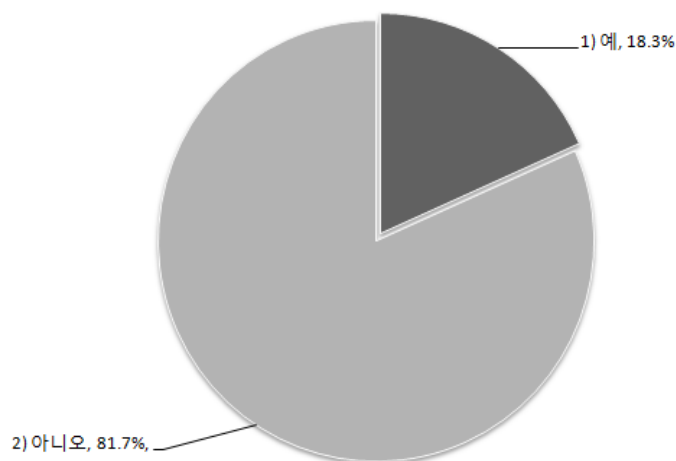
[그림 IV-10]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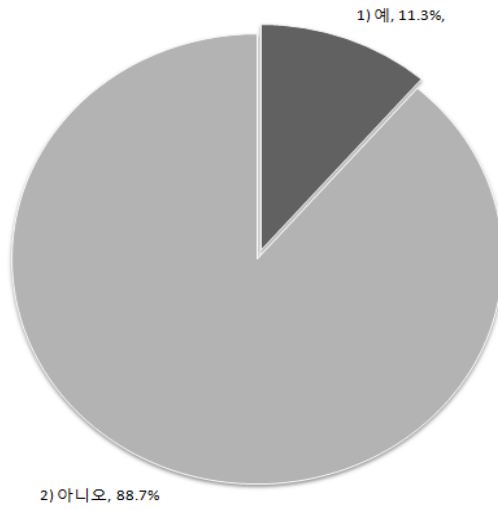
[그림 IV-11]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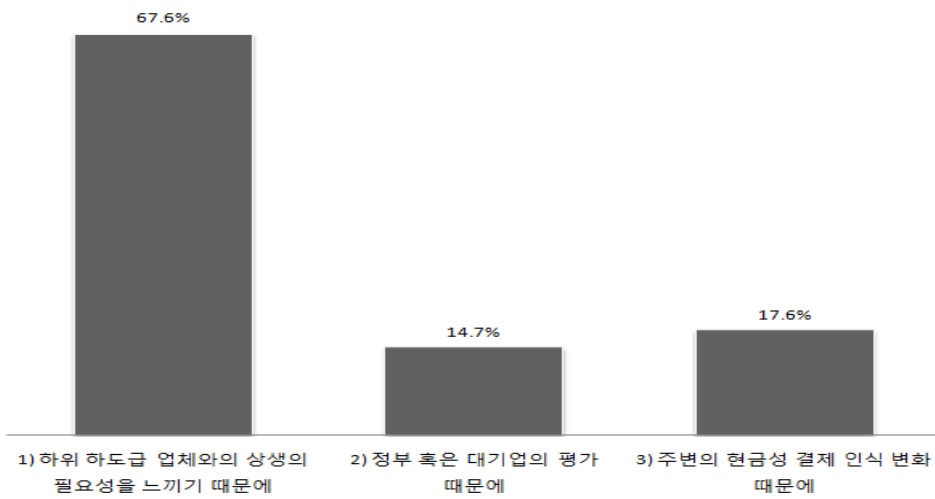
[그림 IV-12] 조세특례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그림 IV-13] 조세특례 도입과 무관하게 현금성결제 비중 확대



[그림 IV-14] 현금성결제 확대 요인



제2절 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 개요

가.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본 세액공제 제도는 2013년도까지 운영되었으나, 정책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다. 과거에는 정책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대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⁵⁴⁾ 이는 과거보다 중소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구체적 비용 추정 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시행 연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오히려 감소⁵⁵⁾하는 것으로 추정된 점을 고려하면, 주무부처의 비용 추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감면 규모는 시행 1년차에 352억 원, 2년차에 317억 원, 3년차에 281억 원으로 평균 예상 감면 규모는 317억 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 방식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는 과거 시행된 제도의 감면 규모를 활용하여 본 세액공제제도의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거 3개년 세액공제 금액은 <표 IV-2>의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일반법인(대기업)도 세제혜택 대상으로 포함되어 3개년 평균 총 감면 규모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감면 규모보다 큰 400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만을 고려하면, 3개년 평균 금액이 350억원으로 본 세액공제제도 시행 1년차 규모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예상 감면 규모가 이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과거 3개년 세액공제 규모 추이를 분석하면, 2013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세액공제 규모가 25%p 정도 감소하였다. 기존 세액공제제도가 일몰된 배경이 정책목표 달성이었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감소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54) 조세특례법 제7조의2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로 제시되어 있음.

55)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감소했던 추세를 고려한 결과로 판단. 그러나 이는 현금성결제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는 신고법인 수 감소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시행 연차에 따른 비용 감소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구분	총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예상	평균	2,639	31,700	2,639	31,700	0	0
	시행3년차	2,639	28,100	2,639	28,100	0	0
	시행2년차	2,639	31,700	2,639	31,700	0	0
	시행1년차	2,639	35,200	2,639	35,200	0	0
실적	평균	2,601	40,530	2,574	35,105	27	2,068
	2013년	2,520	30,569	2,494	29,669	26	900
	2012년	2,665	38,716	2,639	36,520	26	2,196
	2011년	2,619	42,238	2,589	39,128	30	3,110

주: 실적치는 각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참고함

나. 비용추정을 위한 전제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제도 도입 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으로 정의한다. 세수감소분⁵⁶⁾은 본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의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세수감소분 추정을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정책대상인 중소기업들 중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수와 이들의 현금성결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국내의 중소기업 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조사를 위해 확보한 국세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수가 제시되어 있고, 본 조사 수행을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에는 중소기업들 중 본 제도를 이

56) 본 절에서는 조세지출로 인한 효율성 손실 비용 및 행정비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수와 개별 기업들의 세액공제 도입 시 현금성결제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두 자료를 활용하여 수혜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을 추정한 후, 실제 신청할 기업 수를 도출하여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추정하기로 한다. 한편, 편익 추정 방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추정은 편익 추정과 동일한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즉, 설문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기업 중 2013년도 회계자료가 존재하며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향이 있는 기업만을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상생결제 제도 이용 의향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 수보다 작게 되어 비용이 과소추정될 개연성을 가진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 중 2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어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향이 있는 기업을 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설문조사 대상 기업 300개 중 2013년도 회계자료가 존재하고 상생결제 제도 이용 의향이 있는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2. 비용추정방법

세액공제 비용은 전체 중소기업 중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수와 이들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을 통해 산출된다. 전체 중소기업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거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 수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제도 신청이 가능한 기업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중 세액공제 인지 여부와 과거 혜택 비율을 고려함으로써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는 과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비율과 새로운 세액공제제도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신청 기업들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본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세액공제율은 구매대금 지급 기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비용 추정을 위한 적용 세액공제율은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현금성결제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현금성결제 비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현금성결제 규모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와 이들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서는 두 변수 추정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한다. 국세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가 본 비용을 추정을 위해 활용되었다.

가.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은 “①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모집단) 도출 → ②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 ③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도출”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기업 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모집단이 되는 전체 중소기업의 수를 추정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3개년(2011~2013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수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설문조사 자료에는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수와 이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중소기업 수를 추정한다.

②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를 추정한다. 이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본 제도를 인지해야만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설문조사 자료에는 본 제도의 인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 구한 전체 중소기업의 수와 본 제도의 인지 비율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③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될 기업 수를 추정한다. 전 단계까지는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즉, 인지와 신청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인지한 기업들 중 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

는 기업들의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비용 추정은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기에 이들의 비율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도출된 비율과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고려하여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추정한다. 단계별 접근에 따른 비용 추정 산식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① 1단계: 세액공제 대상 기업수

- 기존 세액공제제도 수혜기업 비율: x (%)
-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y(\text{개}) = \frac{\text{기존 세액공제 혜택 기업 수}}{x} \times 100$$

② 2단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 수:

$$z(\text{개}) = y \times \text{새로운 세액공제제도 인지 기업 수 비율}$$

③ 3단계: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기업비율:

$$t(\%) = \frac{\text{기존 세액공제 혜택기업 수}}{\text{기존 세액공제제도 인지 기업 수}} \times 100$$

-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alpha(\text{개}) = z \times \frac{t}{100}$$

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조특법」 제7조의2 2호>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 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1천분의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 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위와 같이, 본 제도는 지급기일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전체 현금성결제 비중에서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개별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개별기업의 세액공제율 = $0.2\% \times (15\text{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text{현금성결제 비중})$
+ $0.1\% \times (15\text{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text{현금성결제 비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현금성결제금액에 국한된다. 현금성결제금액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설문조사 자료에는 개별기업의 구매대금과 구매대금 결제유형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즉, 구매대금과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 = 개별 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중 \times 2014년 구매대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앞서 도출한 세액공제율과 현금성결제금액의 곱으로 도출된다.

- 개별기업 세액공제 비용 =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 \times 세액공제율

3. 비용추정 결과

가.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문 12).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 기업 300개 중 18개 기업이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설문대상 기업 중 6%(x%)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과거 제도의 이용 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수는 국세청 자료 조사 결과, 2,574개(y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는 42,900개(=2,574/0.06)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할 지라도, 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조세특례 인지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를 도출하기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도출 단계에서는 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설문조사에는 상생결제제도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문 15)⁵⁷⁾. 설문조사 결과, 상생결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300개 중 71개 기업으로 23.7%로 조사되었다. 즉, 새로운 세액공제를 인지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기업 수는 10,167개로 추정되었다. 이들 중 실제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수는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하고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아본 기업 수의 비율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2013년 회계자료가 존재하고 기존의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51개 기업)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16개 기업)의 비율은 31.4%이다. 즉,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수 중 31.4%(16/51)만이 본 제도 도입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3,192개(=10,167 x 0.314) 기업이 본 제도 도입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57) 전술한 바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 인지 여부를 본 제도의 인지 여부로 해석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IV-3>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추정

추정 단계	추정 값
1단계	기존 세액공제제도 혜택 비율: 6% 세액공제 대상 기업 수: $42,900(\text{개}) = \frac{2574}{0.6\%} \times 100$
2단계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인지한 기업 수: $10,167(\text{개}) = 42,900 \times 0.237$
3단계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 $3,192(\text{개}) = 10,167 \times 0.314 \left(= \frac{16}{51} \right)$

나.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 규모는 세액공제율과 현금성결제 규모로 구성된다. 먼저, 평균 세액공제율을 추정하기 위한 산식은 앞서 제시되어 있고, 설문조사에 따른 기업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기업별 세액공제율 = $0.2\% \times (15\text{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text{현금성결제 비중}) + 0.1\% \times (15\text{일 초과 현금성결제 비중}/\text{현금성결제 비중})$

다음으로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금성결제금액은 판매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과 현금성결제 비중을 통해 도출된다. 설문조사에는 2013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의 구매대금과 구매대금 결제의 유형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문17-1).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현금성결제 규모를 산출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2015년도 2분기에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구매대금은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서 도출된 기업별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 현금성결제금액을 고려하여 구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기업별 세액공제율 × 기업별 현금성결제비중 × 기업별 2014년 구매대금

<표 IV-4>을 보면, 평균 세액공제율은 하위 하도급 단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적인 세액공제대상 결제금액을 보면 1차 하도급업체의 금액이 약 101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추정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평균 세액공제율(%)	0.117	0.116	0.115
평균 세액공제 대상금액(억원)	101.10	40.77	68.86

주: 표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항목별 단순평균으로 두 항목을 곱하여 세액공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다. 세액공제 비용 추정

지금까지 추정된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기반으로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세액공제 비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66개 기업의 세수감소분은 7억 2,215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300개 기업 중 2013년도 회계 자료가 존재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토대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 해당하는 비용 산출을 위해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즉, 3,192개 기업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분(비용)은 349억 2,600만원 (=722.15백만원 × 3,192/66)으로 추정된다. 비록 사업계획서상에는 구체적인 예상 세수감소분 추정을 위한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본 조사에서 이루어진 비용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V-5>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비용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1차	2차	3차	합계
66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백만원)	538.27	69.90	103.89	712.06
3,192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억원)	260.33	33.81	50.25	344.38

주: 상기결과는 1개년도 기준의 비용추정금액임

제3절 편익추정

1. 편익추정의 개요

조세지출의 편익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세지출의 순편익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조세지출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기업의 행태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조세지출이 시행되었을 때의 행태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편익추정의 핵심일 것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기업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ی겠다고 응답한 기업 수는 66개 기업 중 14개 기업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세액공제 도입 시와 미 도입 시 모두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 중 세액공제 도입 시의 현금성결제 비중이 미도입시 현금성결제 비중보다 높은 기업을 확인한 결과, 모두 현금결제 비중을 줄여서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인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도입 시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 설문응답도 확인한 결과, 모두 현금결제 비중을 낮춰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의 편익추정 전제는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면서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기업의 행태를 통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편익항목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조사의 편익항목 중 첫 번째 편익항목은 어음수수료 편익으로서 세액공제에 따른 구매기업의 현금성결제 증가에 따라 결제기일의 단축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어음수수료를 인하시키는 효과이다. 예를 들면, 구매기업(A)이 판매기업(B)에 만기 90일 어음 대신 60일 어음을 발행한다면 판매기업(B)은 얼마를 어음할인을 받든 30일(33.3%)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도입 시에도 60일 이상 어음이 현금성결제로 전환된다면 자금유통의 만기가 감소함에 따라 어음수수료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 경제적 효과를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수수료 절감효과로 판단하였다.

나.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기존 조례특례조항에서 개정된 조항은 세액공제를 받는 현금성결제 중 네트워크론을 삭제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현금성결제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하여 2·3차 기업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으로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가 어음을 할인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율보다 낮은 어음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 경제적 효과를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할인율 감소효과로 판단하였다.

다. 신용도 제고편익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편익으로 판단한 것은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로 인한 기업차입금의 금융비용에 대한 효과이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편익은 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편익이라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편익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편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기업(A)이 판매기업(B)에 만기 90일 어음대신 단기의 현금성결제를 했다면 구매기업(A)의 매입채무(어음 및 외상)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구매기업(A)의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일정 부분 제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금성결제를 받는 B판매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은 현금성자산보다 부채의 크기, 특히 매출액 대비 매입채무의 비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Nam[2013]).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이 경제적 효과를 세액공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효과로 판단하였다.

라. 기타

사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도입 시와 미도입 시 간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익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면 비용편익분석의 정확성도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조사에서는 편익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재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상생결재를 통해 현금성결재가 증가하는 만큼 감소된 어음의 할인수수료도 존재하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서로 상쇄될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재 증가로 인한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금성결재의 증가는 자금유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기업의 투자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제적 편익으로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한다.

2. 편익추정 방법

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추정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해당 기업의 현금성결재 비중의 순증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결재 비중의 감소는 본 조사의 목적인 어음제도의 개선이 아닌 역진적인 기업의 행태로서 세액공제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감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재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현금결재 비중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현금성결재 비중의 순증가분을 계산한다.

①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성결재의 순증가액은 ‘현금성결재 순증가액 = (2014년 대비 현금성결재 비중 증가분 - 현금결재 비중 감소분) × 2014년 구매대금’ 으로 계산하였다.

②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하도급 단계별로 어음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에 따라 할인율 적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이에 2차, 3차 하도급 기업에 대해서는 예금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5.46%와 비예금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8.62%의 중간값을 적용하였고, 4차 하도급기업에 대해서는 비예금은행의 평균어음할인율인 8.62%를 어음할인율로 가정하였다.

<표 IV-6>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
2차	7.04%
3차	7.04%
4차	8.62%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을 이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③ 현금성결제에 따른 평균 결제기일은 46.7일이며 이는 15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60일 이내 현금성결제 비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어음결제기일은 79.8일이므로 현금성결제기일의 평균 감소일은 ‘평균 결제 감소일= 79.8일 (평균 어음결제기일) - 46.7일 (평균 현금성결제 기일) = 33.1일’ 로 계산되었다.

④ 마지막으로 상위 하도급업체의 현금성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하도급 단계별 매출채권 대비 매입채무 (매입채무/매출채권)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2차 하도급 업체는 평균 0.43이고, 3차 하도급업체는 평균 0.36로서 이는 2차 기업이 1원의 매출채권을 상환 받으면 0.43원의 매입채무를 3차 기업에 상환하고, 3차 기업은 1원의 매출채권을 상환받으면 0.36원의 매입채무를 4차 기업에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하도급 단계의 기업에서 시작된 현금성결제의 승수는 1차 기업의 1원 결제는 2차

기업에게 1원의 효과를 가지고, 3차 기업은 0.43원, 4차 기업은 0.43×0.36원의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2차 기업의 1원 결제는 3차 기업에 1원의 효과를 미치고, 4차 기업에는 0.36원의 효과, 마지막으로 3차 기업의 1원 효과는 4차 기업에 1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7> 하도급 단계별 현금성결제의 승수

하도급 단계	승수
1차	1+0.43+0.43x0.36
2차	1+0.36
3차	1

주: 하도급단계별 평균 매입채무/매출채권을 이용
자료: KIS-DB

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별 현금성결제 증가에 따른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 현금성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 승수 × 33.1일 / 365일’과 같이 계산된다.

나.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을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현금성결제 비중의 순증가분 중 상생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현금성결제 비중의 순증가분을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으로 계산한다. 즉, 세액공제에 따른 현금결제 비중의 감소는 본 조사의 목적인 어음제도의 개선이 아닌 역진적인 기업행태로 경제적 효과를 감쇄시키는 것이다.

①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의 순증가액은 ‘상생결제 순증가액 = 현금성결제 순증가비중 × (상생결제 비중 / 현금성결제 비중) × 2014년 구매대금’ 으로 계산하였다.

② 어음할인율의 감소분은 <표 IV-6>의 어음할인율에서 대기업에 적용될 어음

할인율을 차감하였다. 여기서 대기업에 적용될 어음할인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예금은행의 월평균 어음할인율을 (대기업 평균대출금리/ 전체 평균대출금리)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평균 어음할인율은 ‘대기업의 평균 어음할인율 = 5.46% × (4.18% / 4.47%) = 5.10%’ 이다. 따라서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은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하도급 단계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하도급 단계	어음할인율의 감소분
2차	7.04% - 5.10% = 1.93%
3차	7.04% - 5.10% = 1.93%
4차	8.62% - 5.10% = 3.51%

주: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예금은행 및 비예금은행의 어음할인율과 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③ 세액공제에 따른 상생결제 증가로 인한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을 적용받을 평균 결제기일은 45.4일로 15일 이내 상생결제 비중과 15일 초과 60일 이내 상생결제 비중의 가중치로 계산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는 상위 하도급업체의 상생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에 사용하였던 <표 IV-7>을 준용한다.

⑤ 따라서 최종적인 기업별 상생결제 증가에 따른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은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 상생결제 순증가액 × 어음할인율 감소분 × 승수 × 45.4일/365일’과 같이 계산된다.

다. 신용도 제고편익

세액공제에 따른 기업의 신용도 제고를 통한 신용도 제고편익에서 중요한 전제는 구매기업의 신용도 제고를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에는 세액공제 도입

시에만 현금성결제를 증가시키겠다고 한 기업 중 매출액 대비 매입채무의 감소에 따른 신용도 제고가 금융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중요한 전제는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로 인한 부도확률의 감소는 이자비용에 선형적으로(linear)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① 매입채무/매출액의 실질 감소분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먼저 어음결제 감소 비중은 ‘어음결제 감소비중 = 2014년 어음결제 비중 - 2015년 예상 어음결제 비중’을 통해 추정하고, 2013년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구매대금(구매대금/매출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분을 계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된다.

-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 어음결제 감소비중(Δ 어음/구매대금) \times 구매대금/매출액

② 신용도 제고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대비 매입채무의 감소비중이 부도확률에 미치는 계수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Nam(2013)의 계수 0.0003(t-value: 3.1)을 사용한다. 따라서 부도확률의 감소분은 다음과 같다.

- 부도확률 감소분 = 0.0003 \times 매입채무/매출액 감소비중

③ 최종적으로 부도확률의 감소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Nam(2013)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BBB, BB, B 부도확률을 하도급 1차, 2차 및 3차의 부도확률로 사용하는데, 각각 0.27%, 0.91% 그리고 6.59%의 값을 가진다.

④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는 상위 하도급업체의 상생결제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승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에 사용하였던 <표 IV-7>을 준용한다..

⑤ 세액공제로 인한 신용도 제고에 따른 신용도 제고편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신용도 제고편익 = (부도확률 감소분 / 하도급 단계별 평균 부도확률) \times (2013년 이자비용⁵⁸) \times 2014년 명목GDP총성장률(103.89%) \times 승수

<표 IV-9>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신용등급	S&P 부도확률	경험적 부도확률	하도급 단계	하도급 단계별 부도확률
BBB+	0.16	0.16	1	0.27%
BBB	0.27	0.34		
BBB-	0.32	0.32		
BB+	0.66	0.58	2	0.91%
BB	0.89	0.84		
BB-	1.50	1.31		
B+	2.55	2.54	3	6.59%
B	7.37	7.01		
B-	10.23	10.23		
CCC/C	23.61	17.42		

자료: Nam(2013)의 <Table 5>를 인용

3. 편익추정 결과

가. 설문결과에 기반한 편익추정결과

<표 IV-10>은 설문대상기업 중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66개 기업을 기준으로 하도급 단계별 편익을 추정한 결과이다.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은 총 160.16백만원/년이 추정되었고, 어음할인을 감소편익은 37.04백만원/년, 마지막으로 신용도 제고 편익은 29.73백만원/년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66개 기업에 대한 총 편익은 22,693백만 원/년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0> 설문기업 중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단위: 백만원/년)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어음할인을 감소편익	신용도 제고편익	합계
1차	64.02	15.41	28.41	107.85
2차	62.35	2.23	0.74	65.32
3차	33.78	19.40	0.58	53.76
합계	160.16	37.04	29.73	226.93

58) KIS-DB에서 비외감 기업회계자료의 경우 자료갱신이 늦어져 자료가 완벽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이자비용을 이용하고, 2014년 명목GDP성장률을 적용하였다.

나. 전체산업에 대한 편익추정결과

<표 IV-11>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기업 3,192개 기업의 하도급 단계별 편익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하는 방식은 앞서 세액공제 비용추정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을 준용하여 ‘3,192개 기업의 편익 = 설문대상기업 중 편익 × 3,192/66’을 사용하였다.

이에 추정된 편익은 항목별로 첫째,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은 총 7,746백만원/년이 추정되었고 둘째, 어음할인을 감소편익은 1,791백만원/년, 마지막으로 신용도 제고편익은 1,438백만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3,192개 기업에 대한 총 편익은 10,97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IV-11> 전체 하도급 단계별 편익추정결과

(단위: 백만원/년)

하도급 단계 (공제대상기준)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어음할인을 감소편익	신용도 제고편익	합계
1차	3,096	745	1,374	5,215
2차	3,016	108	36	3,160
3차	1,634	938	28	2,600
합계	7,746	1,791	1,438	10,975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분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평가 기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표를 산정한다.

1) 편익/비용 비율(B/C)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편익/비용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Benefit Cost Ratio; B/C), 즉 장래에 발행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ext{편익} \cdot \text{비용비율}(B/C)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여기서, B_t : 편익의 현재가치
 C_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text{순현재가치}(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여기서, B_t : 편익의 현재가치
 C_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text{내부수익률(IRR):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 여기서, B_t : 편익의 현재가치
 C_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표 IV-12> 경제성 분석기법별 장단점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 비율(B/C)	$B/C \geq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용이 • 사업규모 고려가능 •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 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순현재가치 (NPV)	$NPV \geq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 발생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내부 수익률 (IRR)	$IRR \geq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 비율을 산출하였다.

나. 주요 전제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 비율을 산출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 수행 시,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연 말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본 사업은 2015년 초에 착수한 과제로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간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였다. 또한 비용과 편익 발생은 3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B/C Ratio(편익/비용 비율)는 0.32로 산출되어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경제성 분석결과

구분	결과
총 할인비용(백만원)	98,021
총 할인편익(백만원)	31,239
B/C	0.32
NPV(백만원)	-66,782

<표 IV-14> 비용-편익 흐름표

(단위: 백만원)

차수	연도	편익				비용	현재가치	
		어음 수수료 감소	어음 할인율 감소	금융 비용 감소	합계		총편익	총비용
1	2015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975	34,438
2	2016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402	32,642
3	2017	7,746	1,791	1,438	10,975	34,438	9,860	30,940
합계		23,238	5,373	4,314	32,925	103,314	31,239	98,021

제5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개요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조세지출액이나 할인율, 편익 등에 대하여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 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가.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조사의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할인율은 5.5%이지만 할인율은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할인율 3.50~7.50%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비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사업 시행 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실질 설계의 경우보다 과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산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을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다.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편익을 -20%~+20%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2. 민감도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 B/C Ratio가 1보다 작아 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민감도 분석 결과

구분	변화	비용	편익	B/C Ratio
할인율	3.50%	998.60	318.25	0.32
	4.50%	989.29	315.28	0.32
	5.50%	980.21	312.39	0.32
	6.50%	971.37	309.57	0.32
	7.50%	962.74	306.82	0.32
편익	-20%	980.21	249.91	0.26
	-10%	980.21	281.15	0.29
	0%	980.21	312.39	0.32
	10%	980.21	343.63	0.35
	20%	980.21	374.87	0.38
비용	-20%	784.17	312.39	0.40
	-10%	882.19	312.39	0.35
	0%	980.21	312.39	0.32
	10%	1078.24	312.39	0.29
	20%	1176.26	312.39	0.27

V. 형평성 분석



제V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1. 정책목표 평가기준과 형평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관련 조세지출 정책은 특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기업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정책의 평가기준으로서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한다. 우선,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개인 혹은 기업은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공정성(fairness)’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지출 개념에서 보면, 동일한 이익능력을 갖춘 기업에 동일한 규모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반면,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상황에 놓인 개인 혹은 기업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분배(justice)’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기업의 조세지출 개념에서 보면, 상이한 이익능력을 갖춘 기업에 적절한 누진적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세지출의 주요한 목적이 재정적 유인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분배’ 자체가 목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특정 조세지출 정책이 세목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형평성 기준 중 주로 수직적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의 대상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개정안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 개선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첫째,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1~0.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

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단,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도(대기업 제외) 현금성결제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 이는 중소기업에 조세지출의 실질적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이 제고 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제도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현금성결제를 시행한 경우든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를 시행한 경우든지(15일 이내의 결제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0.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실행안에서 (30일 이내의 결제인 경우), 중소기업에는 1000분의 5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는 1000분의 4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기업의 규모(혹은 성격)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했던 것과 크게 대별된다. 이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의 실행안과 현재 개정안 간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형평성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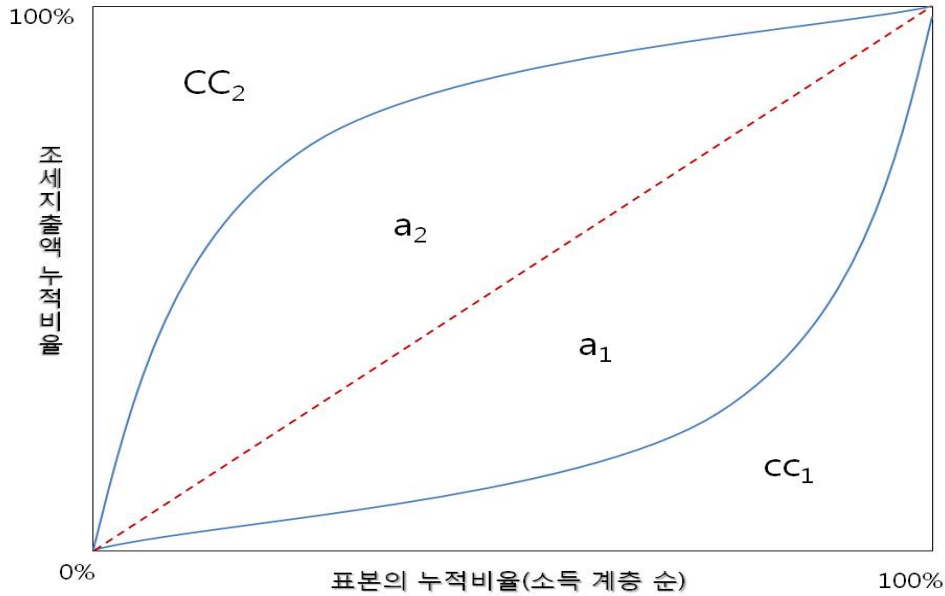
가. 형평성 측정 지수

형평성 분석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념을 이용한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 CC)⁵⁹⁾을 활용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V-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중곡선의 가로축은 기업의 이익 등을 기업 규모에 따라 서열화하여 누적비율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려는 변수, 즉 세액공제액에 해당되는 조세지출 규모를 나타내되 가로축의 변수에 따라 누적하여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누적비율을 표시한다.

59) Wagstaff, Paci, van Doorslacer(1991)

[그림 V-1] 집중곡선



집중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라고 한다. 만약, 세로축의 값이 소득이면 집중지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니계수에 해당한다.

기업의 이익규모에 따라 세로축에 제시되는 변수 값에 차이가 없으면 즉, 기업의 이익규모와 상관없이 조세지출액이 동등하다면 CC 곡선은 대각선 자체가 되고 집중지수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이익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값을 지니면 곡선 CC가 대각선 위에 위치하여 집중지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 큰 값을 지니면 곡선 CC가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여 집중지수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집중지수를 계산하는 경우, 집중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CC_1 은 수익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지출 수혜액이 더 많은 경우, 즉, 집중지수가 0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고, CC_2 는 반대로 수익이 낮은 기업들의 조세지출 수혜액이 더 많은 경우, 즉 집중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이다. 소득계층별 집단을 n 개로 구분할 경우 집중지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이 식은 일반적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의 추정에 사용되는 식으로서, 세로축을 일반적인 소득액 대신 조세지출액으로 놓고 계산

한 식이다.

$$CI = 1 - \frac{1}{n} \sum_{i=1}^n (T_i + T_{i-1})$$

여기서 T_i 는 조세지출액 누적비율을 나타내며, T_0 는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n 은 이익규모별 계층의 전체 개수를 나타낸다.

나. 추정을 위한 전제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집중지수(CI)를 계산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2013년, 2014년, 2015년의 3개 연도에 대한 응답자료를 고려한다.

2013년도는 기존의 어음결제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던 시기이므로 우선 현금성결제금액 규모를 도출하고, 기존 세액공제율⁶⁰⁾을 반영하여 실제 각 기업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설문조사에서 향후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현금성결제(상생결제와 상생결제 외 모두)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2013년도에도 실제로 세액공제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각 기업별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한다(단, 설문응답 자료의 제약 상, 현금성결제의 결제기한을 15일 이내와 15일 초과로 나누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되 이를 30일 이내와 30일 초과로 나누어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3년도의 세액공제액 추정에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공제제도에 따른 다른 연도의 형평성 개선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2014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개정요구안⁶¹⁾을 적용해서 조세지출규모를 구하고, 이를 통해 집중지수를 계산하여 형평성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2014년의 경우는 기존 제도의 세액공제율과 개정요구안의 세액공제율을 모두 적용해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의 세액공제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어느 쪽이 보다 바람직한지를 평가한다.

60) 30일 이내 발행인 경우 세액공제는 현금성결제금액의 5/1,000, 30일 초과 60일 이내 세액공제는 15/10,000이 적용되었다.

61) 15일 이내 세액공제는 현금성결제금액의 2/1,000, 15일 초과는 현금성결제금액의 1/1,000이 계획되었다.

다. 분석자료

형평성 분석에서 검토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둘째, 중소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기존의 세액공제의 혜택과 새롭게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형평성 검토를 위해 사용되는 집중곡선을 살펴보면, 집중곡선의 X축에는 표본의 누적비율이 사용되는데 본 검토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사용하기로 한다. Y축에는 세액공제혜택, 즉, 조세지출 규모의 누적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될 자료로 기업별 당기순이익과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가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 각각의 본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본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세액공제 자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기업 집단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국세청 법인세 관련 자료를 대신 활용하고자 한다. 본 자료에는 총 2,344개 중소기업과 10대 대기업들의 수입(매출액)규모와 세액공제규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이때, 주어진 법인세 자료를 토대로 수입규모별 계층을 총 10단계로 구분하고, 상위 10%부터 백분율로 누적하여 X축에 표시될 누적비율을 계산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규모도 누적비율로 계산한다.

둘째, 중소기업 집단 내의 형평성 검토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자료⁶²⁾ 중 기업별 당기순이익과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이때, 당기순이익의 계층을 총 6단계로 나누고 총 300개 설문대상 기업 중 응답을 하지 않은 1개 기업을 제외한 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 당기순이익 계층별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한다. 조세지출 규모의 구체적인 추정방법과 사용될 자료의 가공방법은 다음의 형평성 분석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2) 형평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과 신규의 세액공제 혜택 규모추정이 필요한데, 국세청 자료로는 이러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당 규모들을 추정하기로 한다.

제2절 증견·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⁶³⁾

1. 집중지수(CI)와 형평성

첫 번째 형평성 분석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들(예를 들면, 증견기업) 간의 수직적 형평성이 제고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의 형평성 추정치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형평성 추정치를 비교해서 수직적 형평성의 개선 여부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법인세 자료만으로는 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하거나 혹은 일정한 가정 하에 그 규모를 임의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만을 활용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세액공제 제도하에서의 집중곡선을 도출하고, 집중지수를 계산한다.

<표 V-1>의 10개 수입계층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지출 규모가 크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혜택 규모 누적 수준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10% 계층은 1개 기업당 평균 약 5,52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하위 10%가 약 7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이다. 조세지출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10% 수입계층이 전체 세액공제 혜택 중 약 50%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63)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형평성 분석의 대상연도는 2013년을 포함하는 직전 3개년도만 가능하다. 해당 연도의 자료에는 대기업 분류에 해당되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규모를 보이는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분석 상 필요한 명칭 분류의 편의를 위해 증견기업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표 V-1>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혜택(2013년도): 전체 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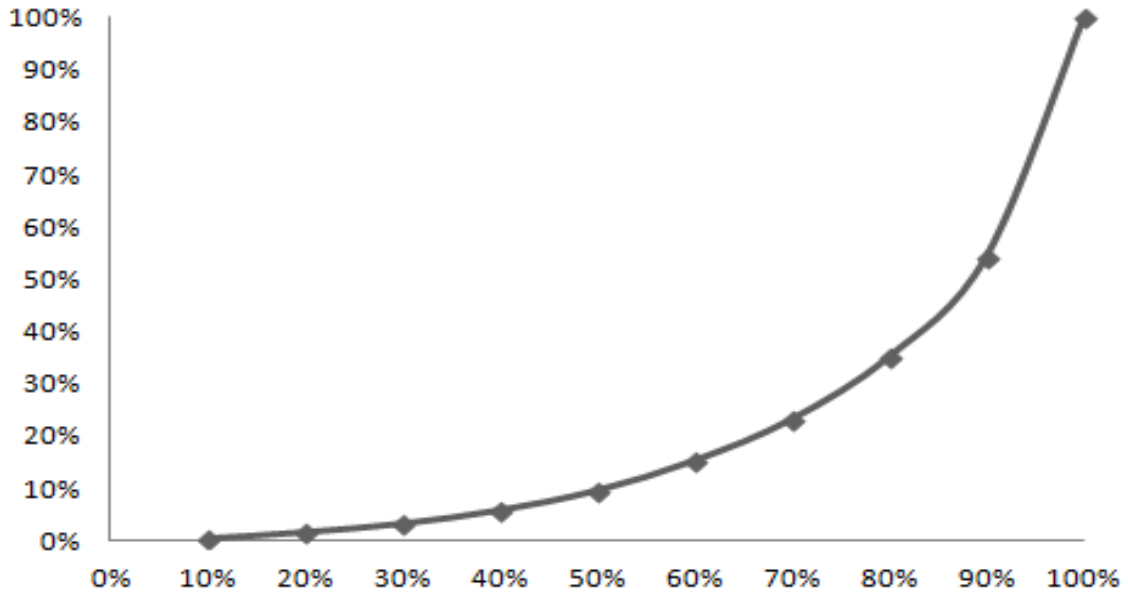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수입누적비율	수입기준	세액공제혜택 (평균)	조세지출대상 백분위	조세지출대상 누적비율
상위 10%	58,815,186 이상	55,258.9	45.7	100.0
10~20%	58,815,186	23,136.4	19.0	54.3
20~30%	35,330,772	14,481.1	11.9	35.3
30~40%	23,406,730	9,561.5	7.9	23.4
40~50%	16,362,449	6,911.7	5.7	15.5
50~60%	12,082,902	4,571.5	3.8	9.8
60~70%	9,063,278	3,095.8	2.6	6.0
70~80%	6,606,558	1,976.4	1.6	3.4
80~90%	4,721,704	1,442.1	1.2	1.8
90~100%	3,110,550	759.4	0.6	0.6
집중지수(CI)		0.5999	-	

[그림 V-2]는 <표 V-1>을 바탕으로 도출한 집중곡선을 나타내고, 수입 분위가 높아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앞에서 살펴본 집중지수 수식에 따른 집중지수(CI)를 구하면 0.5999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어음결제 제도가 중소기업과 그 이상 규모의 기업들 간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상 이상의 결과를 현금성결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직적 형평성 수준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제도의 도입이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당 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본 제도가 당기순이익이 큰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가져다줌으로써 조세 측면에서의 수직적 형평성을 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V-2]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3년도)



2. 중견·중소기업 간 차등적 조세특례의 적절성

다음으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규모 300억원⁶⁴⁾ 이하의 중소기업들에만 한정하여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지수를 구하기로 한다. 전체 자료 중 매출액 규모 300억원 이하의 기업들 총 1,777개를 기준으로 집중지수를 재추정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을 포함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경우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2> 참조). 이 결과와 앞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V-3>에 각각의 집중곡선을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점선으로 표시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곡선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곡선보다 대각선에 더 가깝다. 즉, 중소기업만 고려했을 경우, 조세지출상의 형평성이 보다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중지수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집중지수 CI의 값은 0.4227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I 값인 0.5999보다 더 작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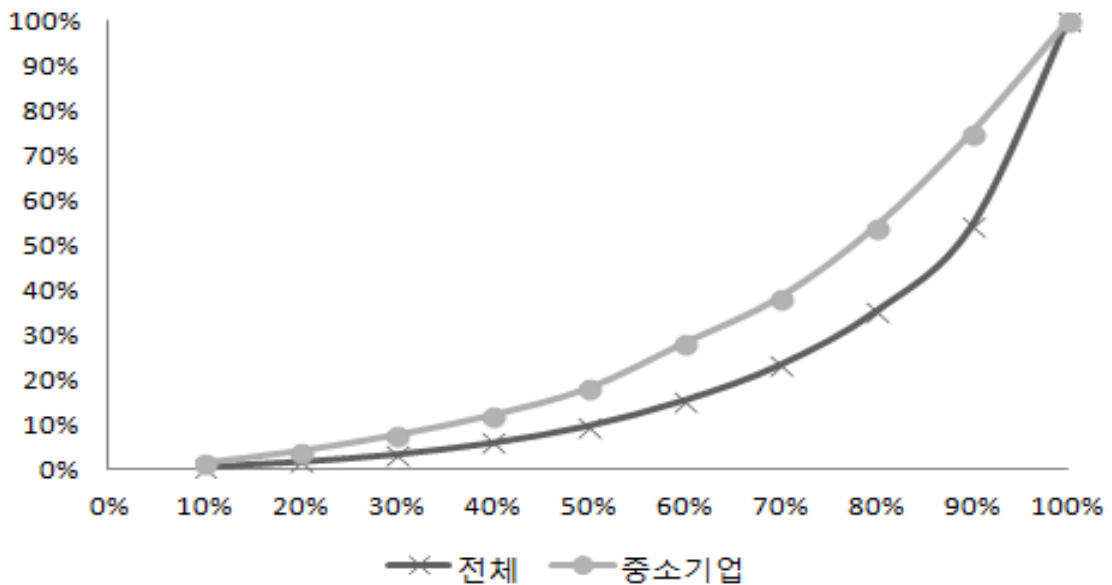
64) 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해당 업종에 따라 다양하나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 300억 원이 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를 살펴본다.

<표 V-2>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혜택(2013년도): 중소기업만 고려

(단위: 천원, %)

수입누적비율	수입기준	세액공제금액 (평균)	조세지출대상 백분위	조세지출대상 누적비율
상위 10%	21,605,331이상	11,557.0	24.9	100.0
10~20%	21,605,331	9,727.7	20.9	75.1
20~30%	16,675,583	7,371.1	15.9	54.1
30~40%	13,189,838	4,775.3	10.3	38.3
40~50%	10,536,572	4,683.3	10.1	28.0
50~60%	8,558,970	2,785.9	6.0	18.0
60~70%	6,662,470	2,043.9	4.4	12.0
70~80%	5,165,022	1,648.9	3.5	7.6
80~90%	3,943,995	1,237.8	2.7	4.0
90~100%	2,631,394	635.7	1.4	1.4
집중지수(CI)		0.4227	-	

[그림 V-3]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 비교: 기업전체 v.s. 중소기업(2013년도)



기존의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예를 들어,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네트워크 론 제도 등)를 함으로써 상당한 세제 혜택을 가져갔다. 이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CI를 추정할 경우 0.5999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집중 지수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기존 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내국인이 (30일 이내 결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경우 1000분의 5가 아닌 1000분의 4의 혜택만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적 적용을 구현하고 있었다. 이는 본 제도가 지닌 수직적 형평성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액공제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개정안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현금성결제금액의 1000분의 2의 혜택만을 누리도록 설정하고 있다. 과거 차등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직적 형평성 훼손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과거 실행안과 같이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1000분의 2로 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10000분의 15정도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의 상생결제 참여 의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 차등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1. 추정방법

본 절에서는 이익규모별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토한다. 특히, 기존의 세액공제의 혜택과 신규로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를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청 법인세 자료는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의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규모를 추정하고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평가한다.

형평성을 나타내는 집중지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도 이익규모별 현금성결제 규모, 구매 대금 및 세액공제 비중 등이다. 단,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익규모별 결제기한에 따른 현금성결제 비중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세액공제 규모를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향후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승시키겠다고 한 기업들이 제시한 비중을 대신 활용하여 실제 세액공제규모를 추계한다. 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결제(상생결제와 상생결제 외 모두)의 기한을 15일 이내와 15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현금성결제 비중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응답한 기업들이 실제로 이 비중에 입각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설문 응답을 통해 현금성결제 기한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를 현시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매년 실제로 집행한 현금성결제도 이상의 선호도에 따라 결제했다고 볼 수 있다.⁶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 300개 중 무응답 1개를 제외한 299개 기업 중 현금성결제를 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66개 기업이다. 여기서,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5개 기업이고, 새로운 세액공제 미도입 시에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4개 기업이다. 이처럼 상당수의 기업이 두 경우 모두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하였다.

집중지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현금성결제 비중을 제시한 기업들만을 고려하고 구매대금에 이 현금성결제 비중을 곱하여 현금성결제 규모를 계산한 후, 기업의 이익 규모별 누적비율을 토대로 집중지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결제기한 별로 기존 세액공제 혜택 방식과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현금결제 비중을 고려한 세액공제 혜택 규모의 집중지수를 도출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현금성결제 기한에 따라 기존의 세액공제 형태는 결제대금의 기

65) 단, 이익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 실제로는 현금성결제를 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기업들이 향후 이 제도를 이용할 계획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응답결과를 사용할 경우 이익이 낮은 기업들의 세액공제 규모가 기존 실제 현황보다 높게 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이 30일 이내인 경우 0.5%, 30일 초과인 경우 0.15%를 적용하나 신규 세액공제의 혜택은 현금성결제의 기한이 15일 이내인 경우 0.2%, 15일 초과인 경우 0.1%로 적용해서 계산한다. 단, 설문조사에는 30일 이내인지 30일 초과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아 자료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응답자들이 신규 세액공제에 따라 15일 이내 결제기한으로 할지 15일 초과 결제기한으로 할지에 대한 응답을 결제기한을 짧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른 응답으로 간주하고,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그리고, 15일 초과를 30일 초과로 간주하여 각각 0.5%와 0.1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규모를 계산한다. 즉, 모든 이익 구간의 평균 현금성결제에 대해 기존과 새로운 세액공제혜택의 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기존 세액공제혜택

$$30\text{일 이내 현금성지출 규모} \times 0.5\% + 30\text{일 초과 현금성지출 규모} \times 0.15\%$$

- 신규 세액공제혜택

$$15\text{일 이내 현금성지출 규모} \times 0.2\% + 15\text{일 초과 현금성지출 규모} \times 0.1\%$$

2. 소극적 추정

설문조사에서 현금성결제 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결제기한 별 현금성결제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문제는 관련 설문 문항이 이 제도의 도입 시 현금성결제 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상향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현금성결제를 할 의사를 가진 기업들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설문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는 목적은 세액공제 혜택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세액공제 혜택 규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정해 볼 것인지의 의지 유무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실제 현금성결제 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추정하는 ‘소극적 추정’과 상향 의사가 없더라도 현금성결제를 할 의사를 가진 기업들 까지도 모두 추정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적 추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하고자 한다.⁶⁶⁾

또한, 2013년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이익규모별 법인세 누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일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인세비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다. 세액공제제도 도입 시의 법인세 누진율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상)의 법인세 누진율은 설문조사 자료에서 제시된 법인세 비용에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지출 혜택 규모를 다시 더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추정이 가능하다. 단, 세액공제 혜택(조세지출 규모)은 제4절의 추정방법에서 설명한 조세지출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계산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표 V-3>에 제시된 것처럼,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경우와 도입되지 않은 경우(가상)의 법인세 비용 규모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2013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한 기업 평균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세액공제제도 도입 유무에 따라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제도 도입 시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는 0.3515로 법인세를 적용하기 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 0.4032에 비해 법인세가 일부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종류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의 집중지수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본 분석 대상인 현금성결제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 개선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차감 후 영업이익의 집중지수인 0.3515와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조세 부과체계의 누진성을 일부 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앞 절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크게 누린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나 해당 분석의 수치상으로 보면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66)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성결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들 중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약 6%(약 18개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의사는 없더라도 실제 현금성결제를 할 기업들이 추정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액공제제도 도입의 영향은 결국 조세지출 혜택을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 가능하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한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지수는 0.1964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이익의 집중지수인 0.403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본 세액공제 제도가 영업이익에 따른 기업 간 격차에 비해서는 기업 간 불균등을 크게 심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V-3> 세액공제 유무에 따른 조세지출 혜택: 2013년도 기준

(단위: 천원,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세액공제제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제도 도입하는 경우			조세지출 누적비율
		법인세액	법인세 누적비율	과세후 영업이익	법인세액	법인세 누적비율	과세후 영업이익	
10억이상	62,998,570.0	703,190.1	100.00	2,295,380.0	703,182.9	100.00	2295,387.0	100.00
5억~10억원 미만	803,964.3	172,558.1	29.40	631,406.1	172,555.0	29.40	631,409.3	60.88
2억~5억원 미만	389,697.2	39,629.8	12.07	350,067.4	39,628.6	12.07	350,068.5	43.93
1억~2억원 미만	380,527.2	36,963.7	8.09	343,563.5	36,961.2	8.09	343,566.0	37.88
5천만~1억원 미만	603,450.5	7,891.0	4.38	595,559.5	7,890.7	4.38	595,559.8	24.84
5천만원 미만	415,297.4	35,764.7	3.59	379,532.7	35,760.3	3.59	379,537.1	23.54
집중지수	0.4032	0.6415	-	0.3516	0.6415	-	0.3515	0.1964

<표 V-4>에 의하면, 2014년도 기업들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현금성결제 규모의 집중지수는 0.5093으로 나타났고 현금성결제 규모만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조세지출의 집중지수는 0.2061이고, 새로운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우 집중지수가 0.1840으로, 예전의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에 기반을 둔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은 기존의 제도와 개선안이 각각 적용되는 경우 [그림 V-4]와 같이 나타난다. 집중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형평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중지수의 수치는 낮게 나타난다. 그림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익이 큰 구간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이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3년 세액공제 혜택을 기준으로 구한 집중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0.1964이다. 2014년도의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집중지수가 0.1840으로 2013년도에 비해 형평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형평성 자체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은 [그림 V-5]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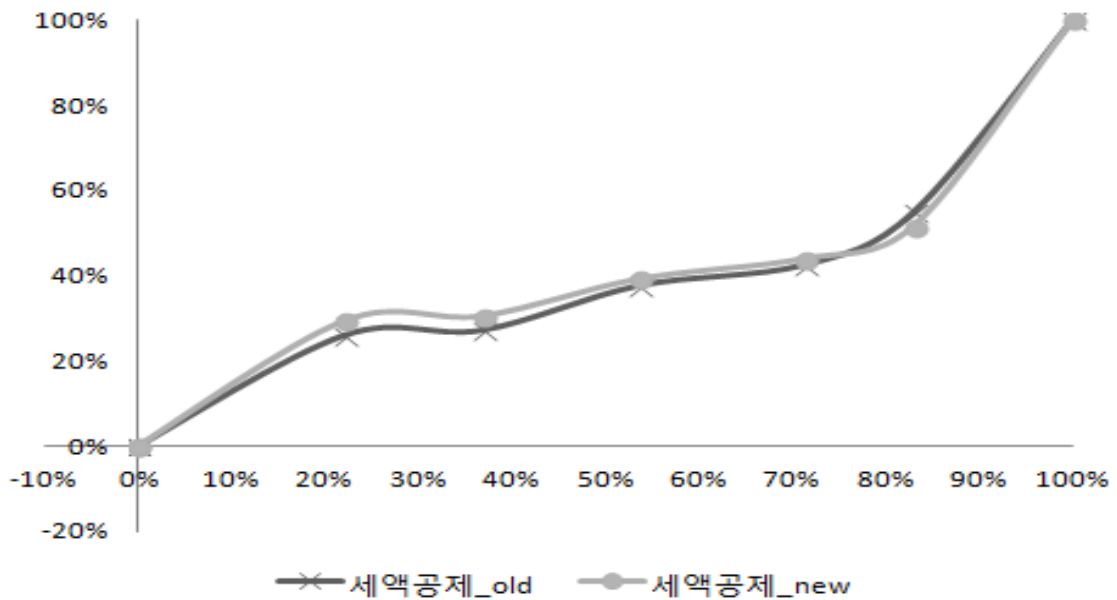
(단위:개, 천원, %)

당기순이익	기업수	현금성결제 규모(평균)	조세지출 누적비율_ Old ¹⁾	조세지출 누적비율_ New ²⁾
10억이상	51	4,363	100.00	100.00
5억~10억원 미만	35	1,053	54.85	51.65
2억~5억원 미만	53	534	42.51	44.00
1억~2억원 미만	50	540	37.62	39.21
5천만~1억원 미만	44	117	27.18	30.55
5천만원 미만	66	549	26.00	29.40
집중지수(CI)		0.5093	0.2061	0.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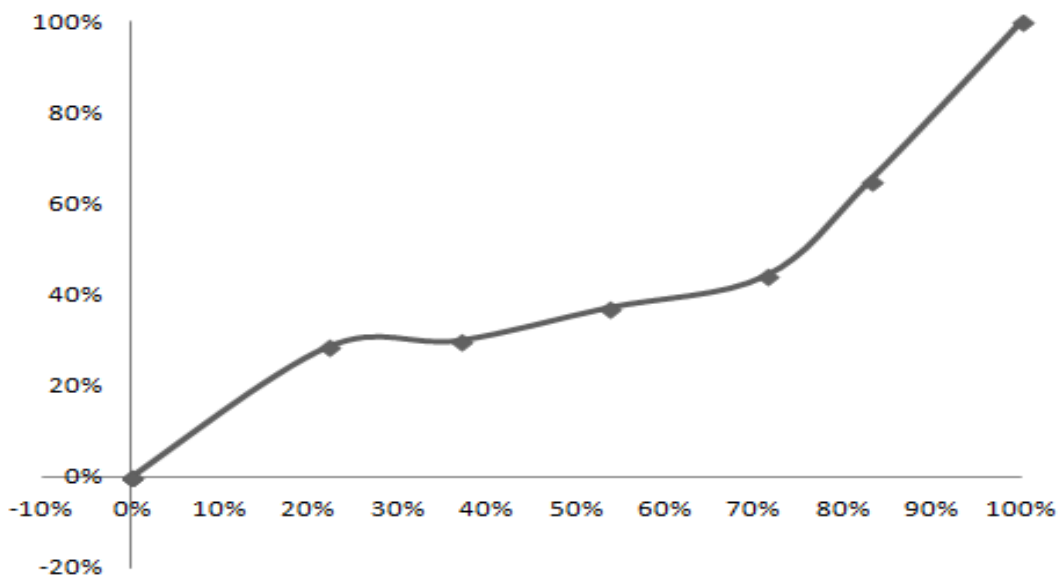
주: 1. 기존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그림 V-4]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2014년도)



[그림 V-5]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규모의 집중곡선(2013년도)



<표 V-5>의 2015년 경우를 살펴보면, 현금성결제 규모의 집중지수는 0.5083으로 2014년도의 0.5093에 비해 형평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져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전히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현금성결제에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집중지수는 0.2040으로 이는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적

용한 경우의 집중지수인 0.213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신규 안의 집중지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세액공제 효과의 형평성보다는 신규 세액공제 효과로 인한 형평성이 다소 악화된 것을 시사하나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은 아니다.

<표 V-5>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 분석(2015년도)

(단위: 개,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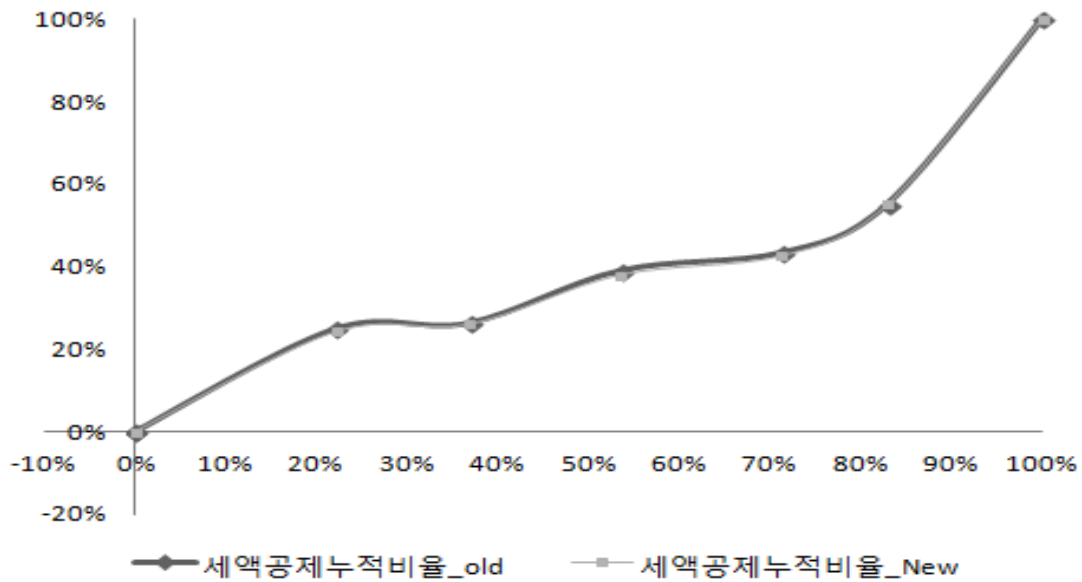
당기순이익	기업수	현금성결제 규모(평균)	조세지출 누적비율_ Old ¹⁾	조세지출 누적비율_ New ²⁾
10억이상	51	1,518.87	100.00	100.00
5억~10억원 미만	35	627.62	47.36	63.13
2억~5억원 미만	53	162.10	34.51	44.67
1억~2억원 미만	50	252.98	30.26	38.67
5천만~1억원 미만	44	13.52	23.04	29.19
5천만원 미만	66	415.30	22.04	27.65
집중지수(CI)		0.5083	0.2040	0.2139

- 주: 1. 기존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기존 및 신규 조세지출 혜택에 기반을 둔 2015년도 집중곡선은 [그림 V-6]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의 경우 단 수개월의 지출 내역만을 기반으로 집중지수를 추정한 것이므로, 추정치 자체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⁶⁷⁾ 그림에도 불구하고, 0.2139이라는 집중지수 추정치 자체는 불평등도가 높지 않은 수치로, 신규 세액공제 혜택이 2015년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더라도 형평성을 크게 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도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신규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형평성도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제도가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67) 설문지의 실측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성 요인 등에 따른 통계적 왜곡(distortion)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V-6]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표 V-6>은 연도별 집중지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3년도 집중지수는 기존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된 경우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 적용 시의 값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과 신규의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적용하여 집중지수를 구하고 형평성이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해보면, 2014년도의 개선 정도는 크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형평성 개선은 나타났다. 반면, 2015년도는 오히려 집중지수가 아주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 간의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업어음결제제도 개선 요구안이 조세지출 혜택에 있어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V-6>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연도	현금성결제규모	세액공제규모_old ¹⁾	세액공제규모_new ²⁾
2013	0.4661	0.1964	-
2014	0.5093	0.2061	0.1840
2015	0.5083	0.2040	0.2139

주: 1. 기존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3. 적극적 추정

앞의 소극적 추정에서는 향후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승시키겠다고 대답한 기업들만을 토대로 집중지수를 추정하였다. 이에 더해, 신규 조세특례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ی겠다고 답한 34개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 34개 기업들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의 도입 시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키겠다고 답한 기업들이므로, 결국 새로운 제도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성결제 비중을 높ی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추정에서는 앞의 추정방법을 따르되, 신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승 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결제 기한별 현금성결제 비중도 함께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세액공제 비중을 추정하여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⁶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6>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업들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현금성결제규모의 집중지수는 0.48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극적 추정치로 제시된 0.5093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여전히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전 현금성결제 규모는 불평등도가 높은 편이다. 여기서 기존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의 집중지수는 0.1979로 추정된다.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어음결제 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우 집중지수가 0.1714로, 예전의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이 더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소극적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적극적 추정 시 형평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에 기반을 둔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곡선은 기존의 제도와 개선안이 각각 적용되는 경우 [그림 V-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소극적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68) 단, 신규 제도 도입 시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승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동시에 신규 제도 미도입시에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상승시키겠다고 응답하면서, 다른 현금성결제 비중을 제시한 경우가 드물게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제시된 결제 기한별 현금성결제 비중의 평균 비중을 토대로 집중지수를 구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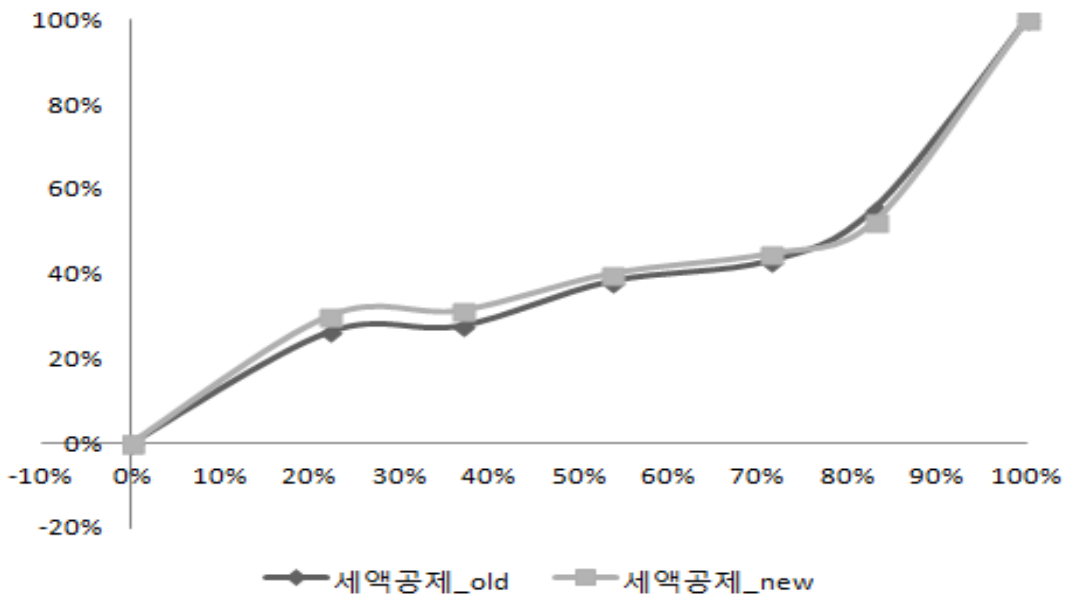
<표 V-7>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4년도): 적극적 추정

(단위: 개, 천원, %)

당기순이익	기업수	현금성결제 규모(평균)	조세지출 누적비율_ Old ¹⁾	조세지출 누적비율_ New ²⁾
10억이상	51	9,312.2	100.00	100.00
5억~10억원 미만	35	953.3	55.40	52.37
2억~5억원 미만	53	414.6	43.06	44.76
1억~2억원 미만	50	671.7	38.23	40.06
5천만~1억원 미만	44	164.5	27.70	31.37
5천만원 미만	66	1,936.6	26.24	30.04
집중지수(CI)		0.4830	0.1979	0.1714

주: 1. 기존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그림 V-7]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4년도): 적극적 추정



<표 V-8>에는 2015년도의 조세지출 형평성에 대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2015년의 현금성결제 규모의 집중지수는 0.3961로 소극적 추정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이며, 이는 2014년과 비교 시에도 다소 개선된 수치가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익규모가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혹은 이와 상관없이 현금성결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지수를 살펴보면, 기존 및 신규 세액공제 비중 적용 시 각각 0.1947과 0.1510으로 신규 세액공제제도가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앞에서 살펴본, 소극적 추정 시보다도 형평성이 더 개선된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2015년도의 기존 및 신규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곡선은 [그림 V-8]에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적극적 추정의 연도별 결과는 <표 V-9>에 정리되어 있다.

<표 V-8> 이익규모별 기업 평균 조세지출 형평성(2015년도): 적극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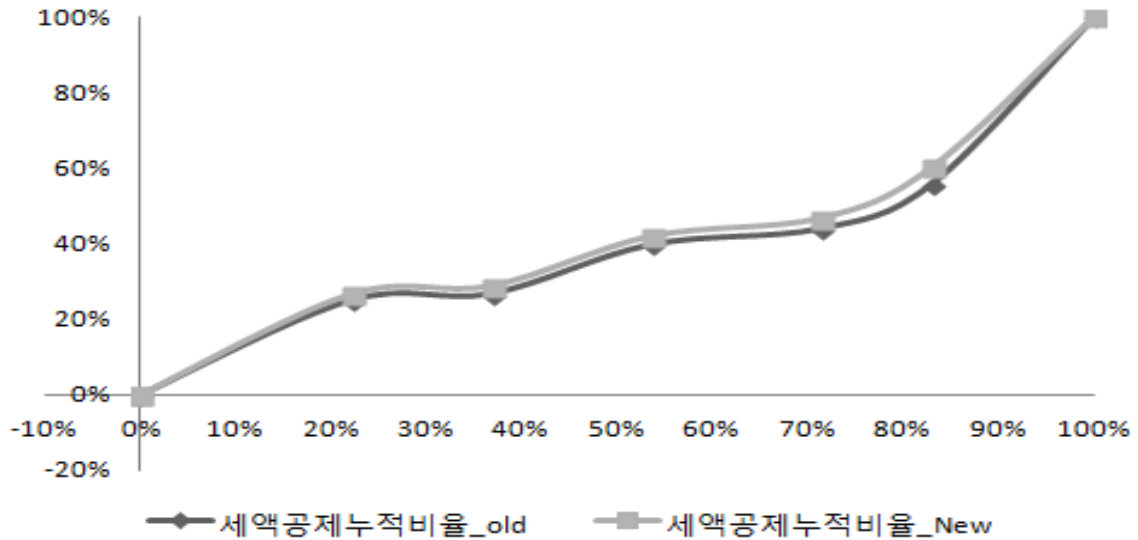
(단위: 개, 천원, %)

당기순이익	기업수	현금성결제 규모(평균)	조세지출 누적비율_ Old ¹⁾	조세지출 누적비율_ New ²⁾
10억이상	51	1,524	100.00	100.00
5억~10억원 미만	35	236	55.80	60.22
2억~5억원 미만	53	83	44.03	46.81
1억~2억원 미만	50	207	39.81	42.04
5천만~1억원 미만	44	45	26.85	28.92
5천만원 미만	66	419	25.11	26.71
집중지수(CI)		0.3961	0.1947	0.1510

주: 1. 기존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를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그림 V-8] 이익규모별 조세지출 혜택의 집중곡선(2015년도)



<표 V-9> 연도별 집중지수(CI) 비교 : 적극적 추정

연도	현금성결제 규모	조세지출 누적비율_old ¹⁾	조세지출 누적비율_new ²⁾
2013	0.5340	0.1964	-
2014	0.3968	0.1979	0.1714
2015	0.3516	0.1947	0.1510

주: 1. 기존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평성을 재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새로운 어음결제 제도 개선 요구안이 일몰 이전의 기존 실행안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분석은 어디까지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이다. 만약 보다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 실행안이 30일 이후 결제한 경우 0.5%에서 0.15%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0일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30% 수준으로 크게 삭감했던 것과 달리,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15일 이후 결제한 경우라도 0.2%에서 0.1%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서 50% 수준은 보장을 해 주고 있다. 물론 절대적 세액공제를 자체가 낮아서 현금성결제로 대체할 유인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인 경우 결제일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결제일이 늦어지더라도 50% 수준을 보장해 주는 현재의 개정안이 기존의 실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제4절 소결

우리나라 기업 관련 조세지출 정책은 특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업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특정 조세지출정책이 세목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목표 관련 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첫째, 형평성 분석 대상이 되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1~0.2%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들 간 수직적 형평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본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의 혜택이 이익 규모가 상이한 중소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기존의 세액공제의 혜택과 새롭게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를 분석한다.

형평성의 측정은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념을 이용한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 CC)을 활용한다. 집중곡선의 대각선 아래 면적을 활용하여 불평등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라고 한다. 집중

곡선의 가로축은 기업의 이익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서열화하여 누적하고, 세로축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려는 변수, 즉 세액공제혜택에 해당되는 조세지출규모를 가로축의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나타낸다. 또한, 집중지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한다.

$$CI=1-\frac{1}{n}\sum_{i=1}^n(T_i+T_{i-1})$$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내용의 형평성 검토 중 첫 번째 형평성 검토를 위해서는 2013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는 총 2,344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 이상 기업들의 수입(매출액)규모와 세액공제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평성 검토를 위해서는 기존과 신규의 세액공제 혜택 규모 추정이 필요한데, 앞의 국세청 자료로는 이러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당 규모들을 추정하기로 한다. 설문조사 자료 중 기업별 당기순이익과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당기순이익을 총 6단계로 나누고 응답을 하지 않은 1개 기업을 제외하고 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계산한다.

수입계층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지출 규모가 높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혜택 규모 증가 수준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지출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10% 수입계층이 전체 세액공제 혜택 중 약 50%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의 집중지수는 0.5999로 이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어음결제제도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들 간의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만 고려했을 경우의 집중지수를 계산하면, CI의 값은 0.4227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I인 0.5999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의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예를 들어,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네트워크 론 제도 혹은 상생결제 활용)를 함으로써 상당한 세제혜택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본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액공제의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형평성 분석은 이익규모별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기존의 세액공제의 혜택과 신규로 도입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를 검토한다. 설문조사 자료 상 제시되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 추정 시 실제 현금성결제 비중 상향 의사가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추정’과 상향 의사가 없더라도 현금성결제를 할 의사를 가진 기업들까지도 모두 추정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적 추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한다.

‘소극적 추정’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세액공제혜택을 기준으로 구한 집중지수는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0.1964이다. 2014년도의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 적용 시 집중지수가 0.1840으로 2013년도에 비해 형평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형평성 자체도 높은 편이다. 201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집중지수는 0.2040으로 이는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경우의 집중지수인 0.2139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도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신규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형평성도 크게 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업어음결제제도 개선 요구안이 조세지출 혜택 측면에서의 기업들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적극적 추정’에 따른 형평성 검토 결과도 앞서와 유사하다. 2014년도 관련 자료에 기존 「조세특례법」의 공제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규모의 집중지수는 0.1979이고, 새로운 어음결제제도 도입을 적용한 경우 집중지수가 0.1714로, 즉, 예전의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이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소극적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적극적 추정 시 형평성이 약간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의 경우도 기존 및 신규 세액공제 비중 적용 시 집중지수가 각각 0.1947과 0.1510으로 신규 세액공제제도가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극적 추정 시보다도 형평성이 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분석은 어디까지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설문조사에 기반한 결과이다. 만약 보다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 실행안이 30일 이후 결제한 경우 0.5%에서 0.15%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0일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30% 수준으로 크게 삭감했던 것과 달리,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15일 이후 결제한 경우라도 0.2%에서 0.1%로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서 50% 수준은 보장을 해 주고 있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인 경우 결제일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결제일이 늦어지더라도 50% 수준을 보장해 주는 현재의 개정안이 기존의 실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에는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표 V-10> 연도별 집중지수 비교

연도	소극적 추정		적극적 추정	
	세액공제 혜택_old ¹⁾	세액공제 혜택_new ²⁾	세액공제 혜택_old ¹⁾	세액공제 혜택_new ²⁾
2013	0.1964	-	0.1964	-
2014	0.2061	0.1840	0.1979	0.1714
2015	0.2040	0.2139	0.1947	0.1510

주: 1. 기존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과거 실행안)
 2. 신규 세액공제율 반영 시 추정치 (향후 개정안)

V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분석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정량적 제시가 가능한 반면, 정책적 일관성, 사업목표, 정책대상 및 사업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성 분석과 계층 간의 형평성 검토를 수행하는 형평성 분석 등은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정량적 결과와 정성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한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 매력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가운데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경제성 분석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성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 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 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균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 ①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 ④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 ⑤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 ⑥ 환류과정(feedback)
-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AHP 분석의 주안점은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의 판단에 있다. 이에 평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음의 <표 VI-1>에 제시된 평가안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VI-1> 「중소기업 어음결제 제도개선 세액공제」조사결과 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지원방식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 구매대금의 0.2%, 지급기한 16~60일 → 구매대금의 0.1%	
운영기간	2015~2017년	
정책성 분석	정책적 일관성	상생결제제도의 보조 정책수단임을 전제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이 확보되며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음.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가 불분명하며, 투입/활동-산출(운용 목표)간 논리적 연관성 불명확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은 명확하나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책대상에 대한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존재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현금성결제 전환의 유인 제공이 낮고,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 초래 및 비납세 기업에 의한 조세 왜곡 가능성 존재
경제성 분석	B/C	0.32
형평성분석	과거 제도에 비해 형평성은 다소 개선되나, 그 효과는 미미함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최종 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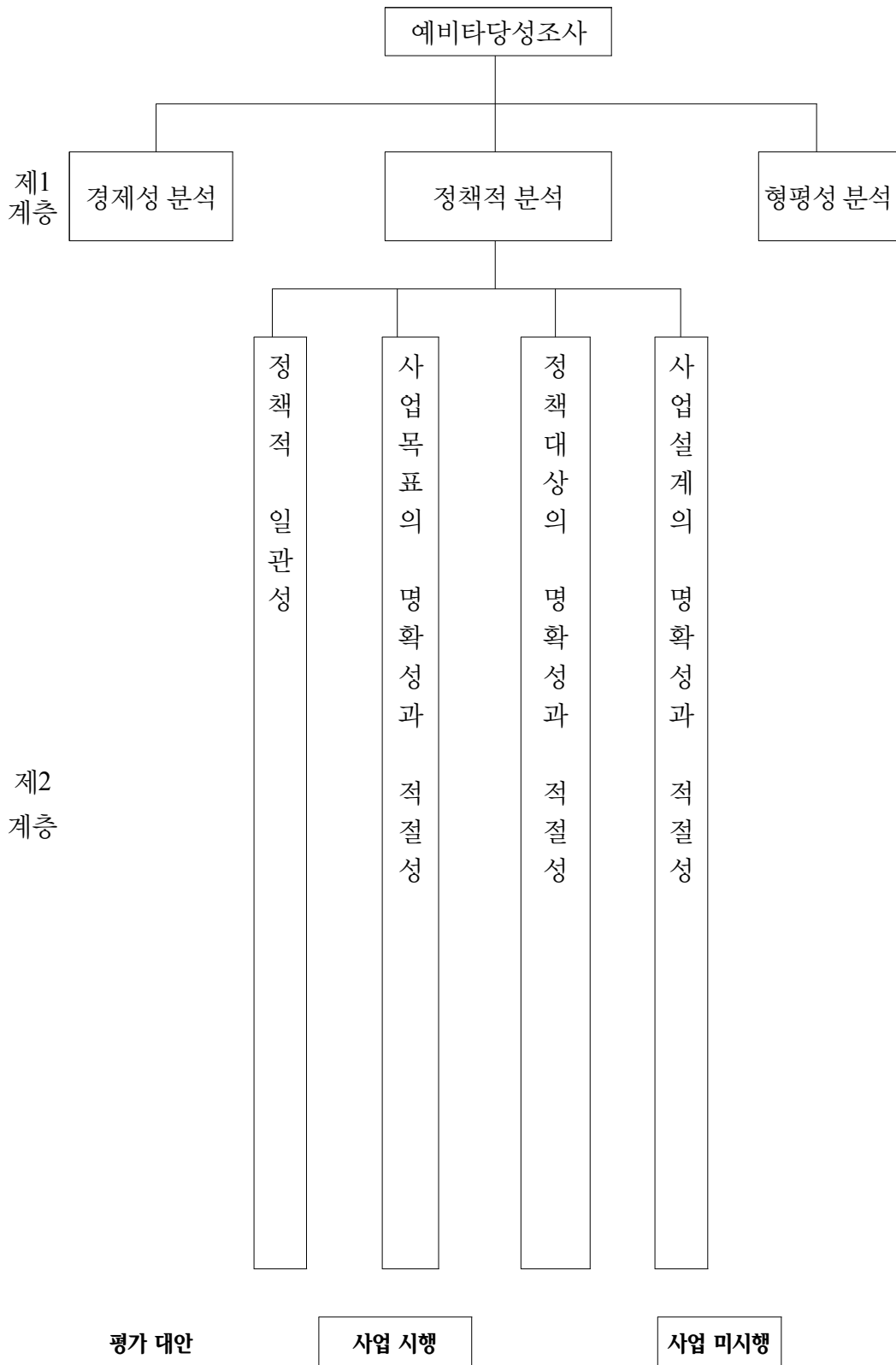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국한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PM, 경제성 분석 1인, 정책성 분석 1인, 형평성분석 1인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7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를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정책성,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되며, 정책적 분석과 형평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정책성 분석 항목은 정책적 일관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으로 구분된다.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VI-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표 VI-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정책적 분석		
정책적 일관성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 조세특례의 필요성 · 조세특례의 적시성 ·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의 공제혜택 비수혜 가능성 · 비정책대상의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구성요소의 명확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유인제공의 적절성 · 조세왜곡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형평성 분석	· 형평성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된 지수 등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형평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VI-3>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형평성 분석
30 ~ 50	30 ~ 40	20 ~ 30

평점의 경우도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시행 및 미시행 대안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계량화되어 나온 결과인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낙후도지수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응답결과와 상관없이 표준점수 전환식을 통하여 일관된 결과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평점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B/C비율을 표준점수화 하여 반영한다.

$$\text{B/C비율에 대한 표준점수} = 5.11532 \times \ln(\text{B/C비율}) + i$$

(단, B/C비율 $\geq 1 \rightarrow i = 1$, B/C비율 $< 1 \rightarrow i = -1$)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32 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는 -6.84 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가중치 산정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의 중요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경제성 분석이 여타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종합한 결과, 연구진들은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의 가중치를 39.9 : 37.2 : 22.9 로 판단하였다. 개별 항목으로는 정책성 분석에서 사업목표의 명확성 항목이 18.2 %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다음으로 사업설계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정책적 일관성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의 <표 VI-4>와 같다.

<표 VI-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종합
<input type="checkbox"/> 경제성 분석	0.400	0.500	0.400	0.300	0.400	0.399
<input type="checkbox"/> 정책적 분석	0.400	0.300	0.400	0.400	0.350	0.372
○ 정책적 일관성	0.038	0.029	0.022	0.044	0.033	0.033
○ 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0.87	0.140	0.226	0.178	0.164	0.182
○ 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0.064	0.083	0.047	0.089	0.097	0.076
○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0.111	0.048	0.105	0.089	0.056	0.080
<input type="checkbox"/> 형평성 분석	0.200	0.200	0.200	0.300	0.250	0.229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 각 평가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시 점수가 0.250으로 분석되어 사업 미시행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5> AHP 평가 결과

평가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합	0.250	0.750
평가자1	0.249	0.751
평가자2	0.186	0.814
평가자3	0.217	0.783
평가자4	0.383	0.617
평가자5	0.244	0.756

AHP기법의 마지막 단계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친 후에 도출된 종합평점을 근거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

담당자에게 제시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AHP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산출물은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각각에 대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계산한 대안별 종합평점(weighted sum)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평점 (0.5를 초과하는 점수)을 얻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계적인 결론 도출 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적인 결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또는 배분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적 의사결정(binary decision)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AHP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약이 따른다. 첫째, 평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평가자간 3:3으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AHP 종합평점 결과가 사업 시행 또는 사업 미시행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양자택일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평가자별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평가자 간 차이 발생의 원인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종합평점 결과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다. AHP 종합점수를 근거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양자택일적 판단을 내릴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에서 양자택일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은 AHP 분석방법이 가진 제약을 고려할 때 AHP 분석 결과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 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색영역을 설정하였다.

$$0.5 - 0.05 < AHP \text{ 종합평점} < 0.5 + 0.05,$$

$$\text{즉, } 0.45 < AHP \text{ 종합평점} < 0.55$$

회색영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회색영역을 평가자 의견의 일치정도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평가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때는 평가자의 모집단의 평균도 표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때는 평가자 모집단의 평균은 종합평점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평가자 간의 의견일치도가 낮을수록 회색영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회색영역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첫째, 6명의 평가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AHP 평점이 0.5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평가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을 도출한다.

둘째, 5:1 또는 4:2로 갈린 경우, 84%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표본평균이 0.55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점수가 0.45보다 작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AHP 점수가 0.45보다 크거나 같고, 0.55보다 작은 경우에는 회색영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3:3으로 갈리는 경우에는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AHP 점수가 0.58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AHP 점수가 0.42보다 작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톤을 완화하고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다만, 사업 시행 : 사업 미시행 평가자 수가 5:1 또는 4:2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대안의 AHP 점수가 0.45보다 작거나, 역으로 그 비율이 2:4 또는 1:5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대안의 AHP 점수가 0.55보다 큰 경우는 1~2명의 평가자 판단

이 다른 4~5명의 평가자 판단을 압도하는 상황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자가 집단역학 관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feedback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feedback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론에 신중을 기한다.

<표 VI-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시행:미시행	종합평점			
	AHP < 0.45	0.45 ≤ AHP < 0.5	0.5 ≤ AHP < 0.55	0.55 ≤ AHP
6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5 : 1	Feedback	아주신중	약간신중	타당성 있음
4 : 2	Feedback	아주신중	약간신중	타당성 있음
3 : 3	AHP ≥ 0.42 약간신중	신중	신중	AHP ≥ 0.58 타당성 있음
	AHP < 0.42 타당성 없음			AHP < 0.58 약간신중
2 : 4	타당성 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1 : 5	타당성 없음	약간신중	아주신중	Feedback
0 : 6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의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의 평가자 수의 비율(6인 기준)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결국 평가자 간 의견의 일치 정도와 종합평점이 회색영역 안과 밖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회색 영역 밖에 위치한다면 해당 사업의 시행·미시행 여부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종합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구진들은 회색영역에 속함을 분명히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 톤(tone)을 완화하거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이 갈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업의 경우, 평가자 모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나타남에 따라 <표 VI-6>의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는 기업의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00년부터 도입·운영된 후, 2013년 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제도 일몰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과거에 비해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현금성결제 유형 중 5개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네트워크론을 제외하고 상생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조세특례의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으로, 중소기업 간(중견기업 포함) 거래시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지급기한 즉, 15일 이내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는 구매대금의 0.2%, 16일~60일 이내의 현금성결제에 대해서는 구매대금의 0.1%를 차등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본 조세특례 예상 수혜 기업 수는 2,665개, 이들 기업의 총 세액공제 예상 금액은 연간 317억원으로 제시되었고, 본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현금성결제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활력 회복 및 건전한 대금 결제방식의 조기 정착을 통한 경제순환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책성,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적 일관성, 사업목표, 정책대상 및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적 일관성 분석 결과, 상생결제 이외의 여타 현금성결제 유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조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분석 결과, 본 조세특례의 사업목표는 불분명하고, 특히 투입/활동-산출(운용 목표) 간 전개흐름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분석 결과, 정책대상은 명확하나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책대상의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분석 결과, 본 조세특례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유인 제공력이 매우 낮고, 현금결제에 대한 세액지원정책이 부재하며, 비납세 기업에 의한 조세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진은 본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본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본 제도의 정책 수혜대상은 3,192개 업체, 정부의 직접적 세수감소분은 344.38억원/년으로 나타났다. 편익추정은 ① 어음수수료 감소편익, ② 어음할인율 감소편익, ③ 신용도 제고편익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편익추정 결과 어음수수료 감소편익은 77.46억원/년, 어음할인율 감소편익은 17.91억원/년 그리고 신용도 제고편익은 14.38억원/년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0.32로 제시되어, 본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분석은 중견·중소기업 간과 중소기업 간의 조세지출 수혜 혜택 누적비율을 활용하는 집중지수를 도출한 후, 계층 간 형평성을 비교하였다. 중견·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결과, 기존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액공제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차등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훼손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과거 실행안과 같이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적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중소기업 간 형평성 분석 결과, 본 조세특례 제도 도입으로 조세지출 혜택 측면에서 중소기업들 간 형평성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과거 제도에 비해 형평성이 다소 개선은 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정책성,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기준 분석방법론의 하

나인 AHP를 적용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은 0.250으로 나타나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연구진은 사업 미시행을 더 나은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정책성, 경제성,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내용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제도 도입 시 주무부처의 주요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대금 결제 시 주로 이용하였던 어음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간편성을 지니는 반면, 연쇄 부도로 인한 위험도 상존하기에,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한 기업 간 결제 관행의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자료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간 대금 결제 시 결제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규모는 전체 거래의 80%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본 조세특례가 운영되었던 2013년과 본 조세특례가 일몰된 직후인 2014년의 현금성결제 및 어음결제 비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제 비중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추가적인 정책적 한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결제 관행이 개선되었거나, 조세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주무부처는 본 조세특례 도입 시에 기업 간 결제행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는 2015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의 신용을 이용하여 하위업체들의 자금조달의 원활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무부처는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현금성결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경제활력 회복의 목적보다는 상생결제 제도의 확산을 독려하는데 본 조세특례 도입의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명확한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인해 단순히 기존의 제도에서 네트워크론을 제외하고 상생결제제도로 세액공제 대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현금성결제 수단별 정책효과에 대한 판단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제도 도입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되었어야 했음을 알리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 건설, 용역분야 하도급거래실태조사」, 2014.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2014.
- 국세청, 「국세통계」, 2014.
- 국세청, 「국세통계」, 각년도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방법과 사례: 수입편』, 2012
-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5
-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11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명호·김우철·전병힐,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2008
-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4.12.
- 중소기업청, 「2014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4.03
- 중소기업청, 「예비타당성평가 조사요구서」, 2014.12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2015.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제5판), 2008.
-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09.
- Nam, C.(2013), “Dynamic Credit Risk Model for SME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26, pp.485~526.
- Caiumi, Antonella.(2011),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ax Expenditures - A Novel Approach,”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5.
- Charney, Alberta H. and Marshall J. Vest(2003), “Modeling Practices and Their Ability to Assess Tax/Expenditure Economic Impacts,” The AUBER Conference

Chen, Duanjie.(2015), “The Framework for Assessing Tax Incentives: A Cost-Benefit Analysis Approach,” Paper for Workshop on Tax Incentives and Base Protection New York, 23-24 April 2015, (<http://www.un.org/esa/ffd/events/cd-2015-tibp-workshop.html>)

Department of Finance(2014), Incorporating Department of Finance Guidelines for Tax *Expenditure Evaluation*

European Commission(1997).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2), Tax Expenditures: Background and Evaluation *Criteria and Questions*

Joint Committee on Taxation(2008), A Reconsideration Of Tax Expenditure Analysis, JCX-37-08.

Minnesota(2011), Department of Revenue. Tax Expenditure Review Report: Bringing Tax Expenditures into the Budget Process

OECD, (2010b),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Tax Administration Research Centre(2014),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ax Expenditures and Tax Reliefs

Thöne, M.(2012), “18 Billion At One Blow. Evaluating Germany’s Twenty Biggest Tax Expenditures” FiFo Discussion Paper 12-4, Köln.

Wagstaff, A., P. Paci, and E. van Doorslacer (1991),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ies in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3, pp.545-557

KIS-DB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win-win.or.kr/web/index.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부 록

1. 「조세특례제한법」 신·구 조문 비교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연혁
3. AHP 설문지
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의견조사



<부록 1>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u>2013년 12월 31일까지</u>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u>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u>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외의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6. 판매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p>	<p>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 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 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p>	<p>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 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③ -----.</p>
<p>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p>	<p>1. ~ 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삭 제></p>
<p><신 설></p>	<p>9.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하위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방법으로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p>

현행	개정안
	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부록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연혁

연번	개정일	내용
1	2000.10.21 <신설>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p> <p>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2	2001.08.14 <개정>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p>

연번	개정일	내용
		<p>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p> <p>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p> <p>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3	2001.12.29 <개정>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p>

연번	개정일	내용
		<p>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29></p> <p>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p> <p>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p>

연번	개정일	내용
		<p>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4	2002.04.20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연번	개정일	내용
		<p>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5	2002.12.11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2.12.11></p> <p>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p> <p>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p>

연번	개정일	내용
		<p>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금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6	2003.12.30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연번	개정일	내용
		<p><개정 2001.12.29, 200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번	개정일	내용
		<p>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7	2004.12.31 <타법개정>	<p>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p>

연번	개정일	내용
		<p>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8	2005.12.31	<p>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p>

연번	개정일	내용
		<p>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

연번	개정일	내용
		<p>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 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p>⑤ 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p> <p>[본조신설 2000.10.21]</p>
9	2007.6.1	<p>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p>

연번	개정일	내용
		<p>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

연번	개정일	내용
		<p>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p>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p> <p>[본조신설 2000.10.21]</p>
10	2007.12.31	<p>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p>

연번	개정일	내용
		<p>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 2005.12.31, 2007.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

연번	개정일	내용
		<p>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 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 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 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 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 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 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 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 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 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 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 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 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p>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05.12.31></p>
11	2008.9.26	<p>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 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 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연번	개정일	내용
		<p>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4.12.31, 2005.12.31, 2008.9.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5.12.31, 2007.6.1, 2008.9.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 2005.12.31, 2007.12.31></p>

연번	개정일	내용
		<p>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p>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p>
12	2008.12.26	<p>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p>

연번	개정일	내용
		<p>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4.12.31, 2005.12.31, 2008.9.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2007.6.1, 2008.9.26, 2008.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

연번	개정일	내용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4.12.31, 2005.12.31, 2007.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p> <p>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p> <p>[본조신설 2000.10.21]</p>

연번	개정일	내용
13	2010.1.1	<p>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연번	개정일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p>
14	2010.10.27	<p>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p>

연번	개정일	내용
		<p>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뢰서(販賣代金推尋依頼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로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연번	개정일	내용
		<p>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p> <p>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p> <p>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p> <p>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p> <p>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p> <p>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p>

<부록 3> AHP 설문지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 (서 명)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연락처 : ☎ _____ E-mail: _____

AHP(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 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 3 ~ 8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결과 요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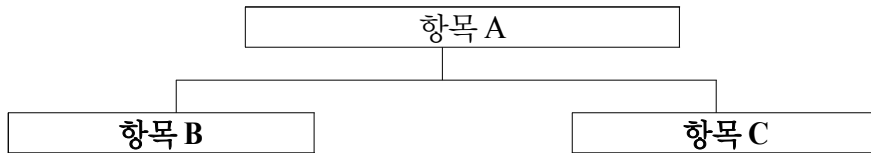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항목								
항목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목 C

[그림] 평가 예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 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예)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응답할 경우
 ※ A > B, B > C → A > C라고 응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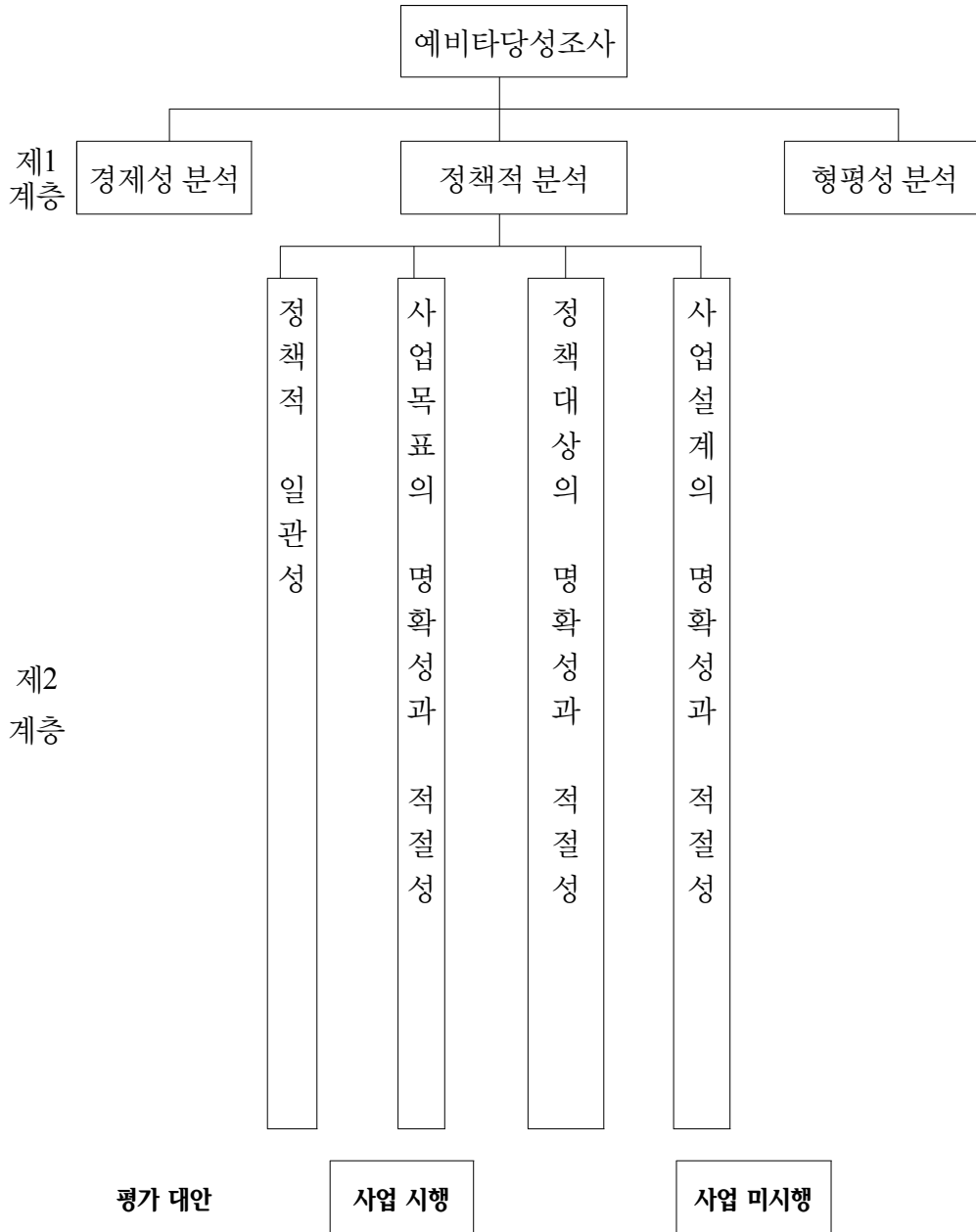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예)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B가 C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 상대적 중요도 평가 설문에서 **평가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특히 응답일관도에 유념하여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표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경제성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정책적 분석		
정책적 일관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조세특례의 필요성 · 조세특례의 적시성 ·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 · 정책대상의 적절성 · 정책대상의 공제혜택 비수혜 가능성 · 비정책대상의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구성요소의 명확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유인제공의 적절성 · 조세왜곡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형평성 분석	· 형평성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리고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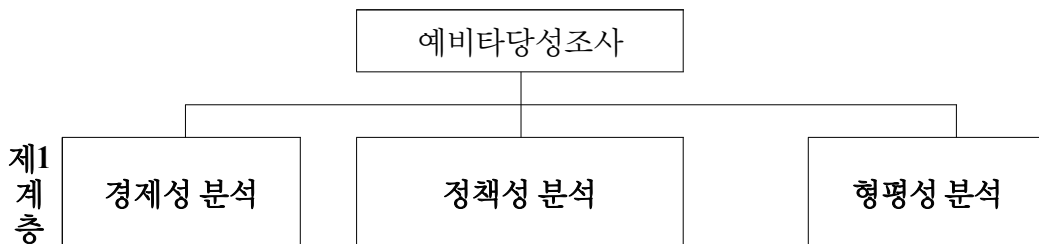
경제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형평성 분석 = _____ : _____ : _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형평성 분석
30 ~ 50	30 ~ 40	20 ~ 30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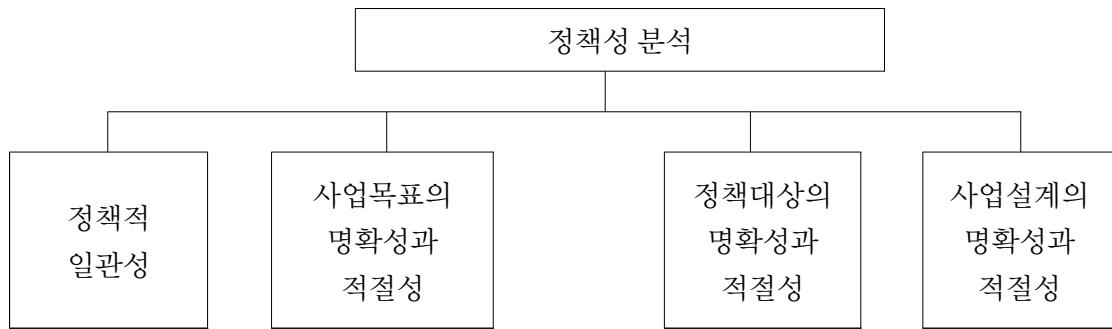


□ 설문 II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II.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성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항목								
정책적 일관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적 일관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적 일관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 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 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대안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	대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절	약간적절	같다	약간적절	적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안								
경제성 분석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정책적 일관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형평성 분석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형평성 포함)에서 사업 시행 대안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 시행 : 사업 미시행 = _____ : _____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부록 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의견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의견조사

EIEC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중소기업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내용 및 결과는 정책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귀하의 견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바쁘시더라도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일이오니 귀하의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연구책임: 한성민 (KDI 부연구위원)

조사책임: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전 화: 044-550-4655, 4183

팩 스: 044-550-4941

▶ 응답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

1. 응답은 반드시 재무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관리자 및 경영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십시오.
3. 설문지에 기록하실 때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보기 번호 중에서 한 개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전 문항의 답변에 따라 이후 문항을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문항 앞에 제시된 설명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명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대기업과 연계된 하도급 단계*	① 1차 협력업체	② 2차 협력업체	③ 3차 협력업체	

* 여러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거래금액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6. 귀사가 2015년(1분기)에 제품의 판매기업으로서 전체 판매금액은 얼마이며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 받은 자금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2015년(1분기)
(1) 전체 판매금액		백만원
(2) 결제	1) 현금	%
	2) 현금성결제*	%
유형별	3) 어음(환어음 제외)	%
비중	4) 기타(대물변제 등)	%
	총합	100%

* 현금성결제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의미하며 '어음 및 대물변제'는 제외함.

3) 어음 > 0% 인 경우 ☞ **문 6-1로**
 어음 = 0% 인 경우 ☞ **문 7로**

문6-1. 귀사가 2015년(1분기)에 제품의 판매기업으로서 구매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어음수취기일과 어음결제기일은 평균적으로 며칠입니까?

구분	기간
어음수취기일	일
어음결제기일(만기일)	일

* 어음수취기일: 제품 판매 후 어음을 받은 날까지 소요된 기간
 어음결제기일: 어음을 받은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소요된 기간

문6-2.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활용방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은행 할인
- ② 비은행금융기관 할인
- ③ 지급수단 활용
- ④ 만기까지 소진
- ⑤ 기타 ()

※ 구매기업의 입장에서 설문에 답해 주십시오.

문7. 귀사가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으로서 상대하는 판매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 ① 대기업
- ② 중견기업
- ③ 중소기업
- ④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소비자

문8. 귀사가 2015년(1분기)에 제품의 구매기업으로서 판매기업에게 지급한 주된 결제수단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현금
- ② 환어음
- ③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④ 기업구매전용카드
- 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⑥ 구매론
- ⑦ 네트워크론
- ⑧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어음(환어음 제외)
- ⑨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어음(환어음 제외)
- ⑩ 기타 ()

문9. 귀사가 2015년(1분기)에 제품의 구매기업으로서 판매기업에게 지급한 구매금액은 얼마이며 결제한 자금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2015년(1분기)
(1) 전체 구매금액		백만원
(2) 결제	1) 현금	%
	2) 현금성결제*	%
유형별	3) 어음(환어음 제외)	%
비중	4) 기타(대물변제 등)	%
	총합	100%

* 현금성결제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의미하며 '어음 및 대물변제'는 제외함.

문10. 귀사가 구매기업으로서 현금성결제 수단 중 가장 선호하는 구매결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환어음
- ②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 ④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⑤ 구매론
- ⑥ 네트워크론
- ⑦ 기타 ()

기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중소기업에게 구매한 대금 중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금액에서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 세액공제율은 지급기한에 따라 0.5% 혹은 0.15%

문11. 귀사는 2013년 말 일몰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2. 귀사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했던 2013년에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귀사의 현금성결제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 14 로
- ② 아니오 ☞ 문 13-1로

문13-1.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업자금 융통의 어려움 때문에
- ② 세액공제율이 낮아서
- ③ 행정비용이 높아서
- ④ 기타 ()

문14. 귀사가 세액공제가 존재했던 2013년과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진 2014년에 제품의 구매기업으로서 판매 기업에 지급한 구매금액은 얼마이며 결제한 자금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2013년	2014년
(1) 전체 구매금액		백만원	백만원
(2) 결제	1) 현금	%	%
	2) 현금성결제*	%	%
유형별 비중	3) 어음(환어음 제외)	%	%
	4) 기타(대물변제 등)	%	%
총합		100%	100%

* 현금성결제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의미하며 ‘어음 및 대물변제’는 제외함.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일부 개정 계획

- 2013년 일몰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된 형태로 재도입할 계획
- 중소기업에게 구매한 대금 중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금액에서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및 상생결제
- 세액공제율은 지급기한에 따라 0.2% 혹은 0.1%
 - 0.2%: 환어음 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 0.1%: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경우

※ 상생결제제도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 제3차 동반성장기본계획 발표(‘14.11.17)
 - 상생결제제도 출범(‘15.03.26)
 - 10대 대기업, 8대 은행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가동

문15. 귀하는 상생결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6. 귀하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7. 귀사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제도입된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현금성결제(현금결제 제외)로 구매대금을 결제하시겠습니까?

- ① 예 ☞ 문 17-1로
- ② 아니오 ☞ 문 17-2로

문17-1. 구매대금결제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구분			비중
(1) 현금성 결제	1) 상생결제	15일 이내 결제	%
		15일 초과 결제	%
	2) 상생결제 외 현금성결제	15일 이내 결제	%
		15일 초과 결제	%
(2) 현금			%
(3) 어음 (환어음 제외)			%
(4) 기타 (대물변제 등)			%
총합			100%

* 현금성결제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상생결제’를 의미하며 ‘어음 및 대물변제’는 제외함.

☞ **문 18 로**

문17-2. 귀사가 현금성결제비중을 높이 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업자금 유동의 어려움 때문에
- ② 세액공제율이 낮아서
- ③ 행정비용이 높아서
- ④ 기타 ()

문18. 귀사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의 현금성결제(현금결제 제외) 비중을 높여서 구매대금을 결제하시겠습니까?

* 상생결제제도는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운영될 예정

- ① 예 ☞ 문 18-1로
- ② 아니오 ☞ 기업일반현황으로

문18-1. 귀사가 현금성결제비중을 높이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위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 ② 정부 혹은 대기업의 평가 때문에
- ③ 주변의 현금성결제 인식 변화 때문에
- ④ 기타 ()

문18-2. 구매대금결제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구분			비중
(1) 현금성 결제	1) 상생결제	15일 이내 결제	%
		15일 초과 결제	%
	2) 상생결제 외 현금성결제	15일 이내 결제	%
		15일 초과 결제	%
(2) 현금			%
(3) 어음 (환어음 제외)			%
(4) 기타 (대물변제 등)			%
총합			100%

* 현금성결제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상생결제’를 의미하며 ‘어음 및 대물변제’는 제외함.

기업일반현황

※ 2014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항목	
외감대상 여부	① 대상	② 비대상
상시 근로자수	① 1~9명 ③ 50~99명 ⑤ 200~300명	② 10~49명 ④ 100~199명 ⑥ 300명 초과
연매출액	① 1억원 미만 ③ 5억~10억원 미만 ⑤ 30억~50억원 미만 ⑦ 100억~300억원 미만 ⑨ 1,000억원 이상	② 1억~5억원 미만 ④ 10억~30억원 미만 ⑥ 50억~100억원 미만 ⑧ 300억~1,000억원 미만
당기순이익	① 5천만원 미만 ③ 1억~2억원 미만 ⑤ 5억~10억원 미만 ⑦ 20억~50억원 미만 ⑨ 100억~200억원 미만 ⑪ 500억~1,000억원 미만	② 5천만~1억원 미만 ④ 2억~5억원 미만 ⑥ 10억~20억원 미만 ⑧ 50억~100억원 미만 ⑩ 200억~500억원 미만 ⑫ 1,000억원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후기록

응답자 소속부서			
응답자 성명			
응답자 직위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E-mail			
기업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구)		
조사일시	__월 __일 __시 __부터 _____분까지 ()분간		
협조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자 성명		ID	